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100016-10



2025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www.nts.go.kr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5. 1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머리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국세행정에 협력해주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를 미제공하여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연말정산 종합안내서로 매년 수정·보완하여 발간해 오고 있으며, 많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사항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의 작성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등을 분야별로 수록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 외에도 연말정산 주요정보, 동영상 자료, 각 분야별 Q&A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천징수 의무이행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법인납세국장 *심국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내 용	접근 경로
공통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www.hometax.go.kr → 법령정보)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근로자	소득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 126-내선1-5번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현금영수증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안내] ☎ 126-내선1-1번
	공제신고서 작성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 126-내선1-5번
	간편제출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 126-내선1-5번
	신고결과 조회	과거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조회 * '20년~'25년 및 '26년 중 제출한 '26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은 조회 가능 * '26.8월 수시오픈 이후부터는 '20년 귀속 확인 불가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안내] ☎ 126-내선1-3번
	안내책자 및 영상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프로그램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 등)	전자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환급신청 원천세 전자신고 설명서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사용자 설명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연말정산 홈택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www.hometax.go.kr) [안내] ☎ 126-내선1-3번
	안내책자 및 영상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및 동영상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프로그램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55P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한도 없음)
-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한도: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

총급여액 →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 94P

총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 2% + 1,275만원

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벤처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 95P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5.12.31.이전)	20세 이하 (*05.01.0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55.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103P

(-) 특별소득공제 → ● 보험료

105P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2.1.1. 이후 차입분에 한해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그 밖의 소득 공제

120P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납입한도: 300만원)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추가공제

-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육단련장 사용분(문화체육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

※ 수영장·체육단련장은 '25.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x) 기본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48P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20만원 한도)
- ✓ 혼인세액공제 :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인별 기준, 생애 1회)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 공제
1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 76조)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2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1)×100% (연간 2,0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 지역 30%)	
3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1-2)×100%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10년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1-2-3)×30%			-
5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1-2-3-4)×10% +(근로소득금액-1-2-3-4)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10년
6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1-2-3-4)×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 제 요 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거 요건		
				주민등록등거	일시퇴거 허용	
기 본 공 제	본 인	×	×	×		
	배 우 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5.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2005.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65.12.31. 이전 2005.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			
추 가 공 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5.12.31.이전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 부 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 및 배우자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2017.12.31. 이전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 료 비	×	×	○		
	교 육 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간소화 서비스 추가개편」 주요 내용



1 주요 개선 내용

-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①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다운로드 기능 미제공^②
 - 근로소득: '25년 1월~6월 발생 소득분,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25년1월~10월 제출 소득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2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5.1월~'25.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 '25.1월~'25.10월까지 제출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 합산

※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 근로소득=총급여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 기타소득=지급액-(지급액×의제필요경비율)
-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 퇴직소득=과세대상 퇴직급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26.1.10.



1 회사 신청

회사 → 국세청

일괄제공 명단 등록

~'25.12.1. ~ '26.1.15.



2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26.1.17(20). ~ 3.10.



3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6.1.10.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5.12.1.부터 '26.1.15.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 기준시가 기준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새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1 ~ 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1

1부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I.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26

- 01 주요 개선 내용 26
- 02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 방법 26
- 03 주의사항 26

II.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27

- 0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28
- 02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32

III.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36

-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36
- 0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38
- 0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39
- 04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46



2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

I. 근로소득 50

01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50
02 비과세 근로소득 등	55
0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76
0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78
0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79

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80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80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82
03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84
04 연말정산 시기	87
05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89
06 외국인의 연말정산(조특법 §18의2)	92

III.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94

01 근로소득공제(소법 §47)	94
02 인적공제	95
03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	103

IV. 특별소득공제(소법 §52) 105

01 특별소득공제 개요	106
02 보험료공제(소법 §52 ①)	107
03 주택자금공제(소법 §52 ④, ⑤)	107

V.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120

0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 조특법 §86 : 2013.1.1. 삭제) ·	120
0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	121
0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 ②)	122
0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	124
0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132
0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139
0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3) ·	140
0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143
0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20) ·	145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	147

VI.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48

0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소법 §59의5)	148
02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148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50
04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162
05 혼인세액공제(조특법 §92)	163
06 자녀세액공제(소법 §59의2)	164
07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 §59의3)	164



08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소법 §59의4) ..	169
09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202
10 납세조합 공제(소법 §150)	204
1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205
12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207
13 농어촌특별세	209

3부 |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I.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212

01 소득·세액공제금액 계산	212
0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220
03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227
04 기부금명세서 작성	229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232

II.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 233

I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248

IV.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과다공제) 254

01 홈택스에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255

V. 근로소득 경정청구 사례 264

VI.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68

0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268

0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291

0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297

VII. ICL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310

01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310

02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318

03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322



4부 |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I. 사업소득 연말정산 324

0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소법 §144의2)	324
02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325
03 연말정산 시기	325
0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325
0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326
06 납부할 세액 계산	327
0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328
08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328
0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329

II. 연금소득 연말정산 331

01 연금소득의 범위(소법 §20의3)	331
02 비과세 연금소득	334
03 수입시기	334
04 연금소득금액 계산	334
05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335
0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335
0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338
08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39
0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340

5부 |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I. 종교인소득이란?	344
01 개념	344
02 분류	344
II. 종교관련종사자	347
01 개념	347
02 구분	347
III. 종교단체	348
01 개념	348
IV.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349
0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349
0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350
0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351
04 연말정산 시기	351
05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351
06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352
07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352
08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353



부록

1.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358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375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84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389
5.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390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394

0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개정취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 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유형〉 ①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②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③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④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탐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①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②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③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양육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공제금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적용시기〉 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개정취지〉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종 전	개 정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좌 동)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 → 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근로자 공제율 축소 :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0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적용시기〉

- (사업자 교부금 폐지·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종 전	개 정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 (좌 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개정취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동)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❶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❷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좌 동) ❸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table> <tr> <th>구 분</th><th>내 용</th></tr> <tr> <td>대상자</td><td>▶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td></tr> <tr> <td>대상 부동산</td><td>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td></tr> <tr> <td>납입한도</td><td>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td></tr> <tr> <td>납입기간</td><td>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td></tr> <tr> <td>사후관리</td><td>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td></tr> </table> ※ ❷·❸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❶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❷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건물)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7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개정취지〉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추 가〉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좌 동)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개정취지〉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장애인의 범위 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❷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 가〉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좌 동) ❹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한함

〈적용시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개정취지〉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종 전	개 정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❶·❷·❸ 모두 충족 ❶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시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❷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추 가〉 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좌 등)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❸ (좌 등)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적용시기〉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

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개정취지〉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종 전	개 정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600~2,000만원 <table><tr><th colspan="2">상환기간 15년 이상</th><th rowspan="2">상환기간 10년 이상</th></tr><tr><th>고정금리 O</th><th>고정금리 X</th></tr><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600만원</td></tr></table> ○ (거치기간) 없음 ○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70% 상환기간 연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	고정금리 X	2,0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좌 동) ○ 1년 이내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12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	고정금리 X								
2,0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11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	☐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적용시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 $A \times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 $A \times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13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 (예외)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추 가〉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좌 동) ☐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 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회수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

1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7.12.31.

15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❶,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❶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❷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 추 가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❶, ❷, 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 동) 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우수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

1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개정취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❶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024.12.31. ❷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024.12.31.	□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027.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027.12.31.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개정취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종 전	개 정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신 설〉 ○ (감면율) - (청 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 5년 이상 → 3년 이상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좌 동) ○ 20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시기〉 20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취지〉 감면 대상 업종 정비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농어업등 23개 업종)	☐ 대상 업종 정비
☐ 운수 및 창고업 〈제 외〉	☐ (좌 동) - 「관세사법」 따른 통관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제 외〉	☐ (좌 동)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 외〉	☐ (좌 동) - 수의업
☐ 부동산업 〈제 외〉	☐ (좌 동) - 부동산 임대업

〈적용시기〉 20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

19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종 전	개 정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 15% ○ (기부·공제한도) 500만원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 (좌 동) - (10만원 초과) (기부금 - 10만원) × 15%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 500만원 → 2,000만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개정취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❷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table> <tr> <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 <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 <td>4천만원~1억원</td><td>300만원</td></tr> <tr> <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 (좌 동) ○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❶ (좌 동) ❷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소득공제 한도 상향 <table> <tr> <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 <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 <td>4천만원~6천만원</td><td>500만원</td></tr> <tr> <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 <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취지〉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기한 확대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 적용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좌 동)

〈적용시기〉

- (소득공제) 20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 과 세) 20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2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11항, 제13항)

〈개정취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

종 전	개 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해지 6개월 이내) 〈추 가〉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좌 동)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제외사유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계좌 해지 시 추징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해지 6개월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 〈추 가〉	☐ 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 ○ (좌 동)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 ○ 주택 당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	☐ 중도해지 사유 추가 ○ (좌 동)

종 전	개 정
〈추 가〉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저축자의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해지 6개월 이내)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적용시기〉 2024.11.12.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종 전	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20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연장 ○ 2025.12.31.까지 가입분

24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개정취지〉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이자상당액) 50만원 × ❶ × ❷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❷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신 설〉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❶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❷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5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table> <tr> <th>구 분</th><th>공제율</th></tr> <tr> <td>① 신용카드</td><td>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able>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추가공제) - (공제율) <table> <tr> <th>항 목</th><th>공제율</th></tr> <tr> <td>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 가〉</td><td>30%</td></tr> </table>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적용기한) 2025.12.31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 가〉	30%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table> <tr> <th>항 목</th><th>공제율</th></tr> <tr> <td>①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r> <td>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td><td>30%</td></tr> </table>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 ○ (좌 동)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추 가〉	30%																		
항 목	공제율																		
①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적용시기〉 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

26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 ○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계산기준)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적용시기〉 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24.12.31. 이전 사망한 경우와 '25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배제하여 제공하고,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 제공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기간 운영

'26.1.15.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26.1.15. ~'26.1.17.(예정)까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

③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국세청홈택스(www. 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산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와 맞벌이 근로자 절세가이드, 세액계산 프로그램 등 제공



I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01 주요 개선 내용

-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을(총급여 500만원) 초과^①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다운로드 기능 미제공^②
 - '25년 6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과, '25년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 자료 기준
 -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공
- 부양가족 중 소득기준 초과자(Y)를 간소화자료로 제공(Y만 표시, N은 미표시)

☎ 소득초과 부양가족 정보 제공 간소화자료(예시)

2025년 귀속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

(근로 : '25년 1월~6월, 발생소득 사업·기타·퇴직·양도 : '25년 1월~10월 신고서 제출분)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이세정	820505-2*****	Y
부	김국세	551012-1*****	Y

- 홈택스에서 기본공제자 체크 시 소득기준 초과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팝업 추가

02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산출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5.1월~'25.6월까지 발생한 총급여
-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 '25.1월~'25.10월 신고분까지의 소득금액 합산

※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기])
- ③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 ④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 ⑤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03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명단 제공
-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간소화자료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기준초과 부양가족들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II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 분	항 목	일 정	세 부 내 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5. 12. 1.~'26. 1. 15.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6. 1.17.(1.20.)~3. 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6.1.20.~2. 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6. 2. 1.~2. 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5.12. 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26. 1. 10.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6. 1. 20.~2. 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6.3. 10.	• '26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01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가. 연말정산 업무 준비('25.12월~'26.1월 중순)

○ 국세청 홈페이지의 개정세법 해설 등 확인('25.12월)

※ 일반적으로 세법개정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되나 12월 중에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2월 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유형 선택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25.12월)

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완료[‘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인식(영수증금액 추출)프로그램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문서 제출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방법이 달라짐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26.1월)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26.1월 초)

회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26.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

※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선택한 경우)을 정확히 설명하여야 함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안내, 환급일정 포함)
- 세법개정 내용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26.1월 말까지)

-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등·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기부금 내역 등 정리
-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

참고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재취업자 또는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26.2월 중순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국세청에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함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1.15.~1.17., 의료기관의 자료 재제출기한 : 1.18.)
- 자료제출기관은 1.18.까지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기관이 수정·추가 제출한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필요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

다.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6.2월 말)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요건이 적정한지 확인(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요청)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참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26.3.10.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6.2월 지급분과'25년 연말정산을 포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파일을 3월 10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작성·제출
 -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오류 점검 실시 및 오류 보완

주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⑪총급여액과 ⑫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⑬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의 5쪽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음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 + 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단, 환급신청 시 3월 10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 시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함. 다만,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참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환급신청액란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규칙 §9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www.hometax.go.kr)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 기납부세액 명세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조정환급의 경우 위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마. 분납

-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음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

02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령 §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제3부 II편 참조

1) 제출의무자(소법 §164)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제출기한(소법 §164)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로서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한다.

참고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만을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전산매체(CD 등)를 이용한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입력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고, 본점 및 지점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전산매체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에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
(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의!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지급금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서면 작성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편철단위마다
(각 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여 제출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 수)가 10명 이하인 자

4)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소법 §81의11, 법법 §75의7, 국기법 §49 ①)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기재한 경우

다만,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소법 §81의11)	법인(법법 §75의7)
사유			
	미제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1	
	지연제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0.5	

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포함)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2026년 3월 10일까지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대상자

○ 의료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을 전산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산파일 제출방법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CD 등에 저장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 전산파일을 CD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의 의료비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조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 생성

III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로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아래의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① '25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소법 §135
	②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소득세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일반급여자로 보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소령 §20
	③ 인정상여(예시)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법령 §88 소령 §98
	④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비과세 소득 제외)	소령 §38
	⑤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령 §12 소기통 12-12...1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관련 근거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⑥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나, 이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업무 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 - 인사발령내역,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하여 국외 장기출장 중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소령 §16
	⑦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현물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대(20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소기통 12-0...3
	⑧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 학생이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함(장학금은 입사 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소령 §11 소령 §38①2
	⑨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령 §12
이중 근무자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였는지 확인	소법 §137의2
전출·합병· 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관계회사 또는 지점 간 전출·입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는지,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종(전) 근무자와 주(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였는지 확인	소기통 137-0...2,3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단일세율(19%) 또는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조특법 §18 조특법 §18의2

0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음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인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인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분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분 5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인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 여부 확인 - 근로자 본인 명의 가입 여부 확인(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도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 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본인 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구분	중점 확인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및 일정 요건의 외국인 포함)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받음 요건 삭제

0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선택)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공제 주요 Q&A)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 (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 2024.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배우자는 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취득 4억원, 2019.1.1.~2023.12.31. 취득 5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25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25.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아.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자.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과다공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 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근로자가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카.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 적용대상 아님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 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기부금 표본조사

-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1%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기부금 세액공제 불성실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변조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공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04 잘못된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 (1.과 2.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 \cdot \text{무납부세액} \times 22/10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2019.2.12.부터 20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 이행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1)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text{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text{초과신고한 환급세액}) \times 10\%$$

2)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text{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text{초과신고한 환급세액}) \times 40\% (\text{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60\%})$$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기부금 부당공제(허위·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정과소신고 등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한 방법’이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참고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①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frac{22}{100,000}$
- ②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frac{22}{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19.2.12.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19.2.12.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3/10,000, '19.2.12.부터 '22.2.14.까지 기간은 25/100,000 적용

다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47의4 ④)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I

근로소득

01 근로소득의 범위(소법 §20)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 군인 제대 전 전직지원 교육기간 중 기업체와 고용(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받는 유급의 급여(군 지원금은 없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예규

-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 종업원 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1444, 2023.6.8.)
-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국조-0122, 2023.10.18.)

-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임원등이 얻는 이익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참고

○ 시가의 범위

-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규

-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25-법규소득-0512, 2025.08.18.)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①)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참고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정근수당·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예규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 해당 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 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참고

- 회사에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비연고지 부임지에서 연고지(거주지)로 이동할 때 편의를 위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출퇴근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예규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고, 국외에서 지출한 동 건강보험료, 의료비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원천세과-707, 2011.11.2.)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참고

- 2012년까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예규

- 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였고 해당 법인이 행사이익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금전이 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2021.08.05.)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2021.09.16.)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제외)
-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①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조특법 §29의6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소법 §2 ④)

예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2020.10.0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자립성과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 2020.12.30.)
-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2022.05.24.)
-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3-법규소득-0723, 2024.03.14.)
-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의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소득-0111, 2024.04.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사전-2024-법규소득-0013, 2024.05.30.)

02 비과세 근로소득 등

가-1.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3)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의2에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4)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5)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6)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4)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7)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9) 경조금(소칙 §10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7.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벤처기업 임직원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지분 10% 초과보유자,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및 그 초과보유자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금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일 것

예규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2021.03.08.)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례 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2021.04.29.)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05.11.)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2021.08.31.)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소득-0481, 2023.09.21.)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사전-2023-법규소득-0254, 2023.10.19.)

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참고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 가능

세법집행기준

※ 소득세 집행기준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이 경우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1. 조건

-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를 포함)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 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 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받은 경우, 위와 같이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2020.12.14.)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서면-2025-원천-1987, 2025.8.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예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 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원천세과-542, 2013.11.13.)

○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참고

「벽지」의 범위(소칙 §7)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예규

「재해구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02, 2020.09.10.)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관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다. 국외근로소득(소법 §12 3호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참고

- 외교부-고시 제2025-6(2025.10.20)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문체부 훈령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직원

세법집행기준

* 소득세 집행기준 12-12-1【외향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 ①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외향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5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4-1【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 ①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6-1【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 ① 국외근로소득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 ②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나,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을 적용한다.

〈원양어업선박 등에 근로 제공 시 비과세 적용〉

- ①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② 승무원은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 시 비과세 적용〉

-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근로자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 설계 업무 수행자에 한하므로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 ②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예규

- 해당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함(서면1팀-489, 2007.04.16.)
-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2020.07.23.)
-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항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5-법규소득-0623, 2025.08.18.)

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소법 §12 3호 더목)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음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
- 작업반장·작업조장 또는 직공반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통제 하의 생산 관련 다른 종사자와 함께 직접 그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연번	대분류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4211
		미용 관련 서비스직	422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4321
		숙박시설 서비스직	432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2
		통신 관련 판매직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타 기능 관련직	79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
5	단순노무 종사자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5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9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참고

공장·광산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이발사, 세탁공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 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 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월정액급여 계산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이때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3) 총급여액 계산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 제외)
-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 차감하지 않도록 주의
-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
-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4)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금액 한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례

【문】 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 | | |
|-------------------|--------------------------|
| ① 기본급 140만원 |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
|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6만원 |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
| ③ 상여 100만원 |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23만원 |
|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 |

답 비과세 금액 : 식대 20만원, 야간근로수당 10만원, 휴일근로수당 5만원, 연장근로수당 10만원

월정액급여 : 159만원

〈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94만원 - 100만원(상여) = 194만원
※ 식대(23만원)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 25만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94만원 - 25만원 = 169만원

⇒ 월정액급여가 16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됨

참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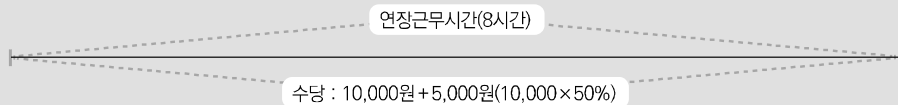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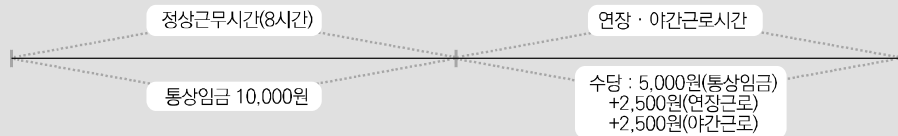
⇒ 연장근로수당 : 5,000원 + 2,500원 = 7,500원

○ 휴일근로(8시간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야간(22 : 00~06 : 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연장근로시간 수당 : 5,000원 + 2,500원 + 2,500원 = 10,000원

마. 비과세 식사대 등(소법 §12 3호 러목)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현물 식사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현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2)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 소득에 해당된다.

참고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2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예규

-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원천세과-281, 2011.05.17.)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해당함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바. 출산·보육수당(소법 §12 3호 머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현행 유지)
 - 출산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
 - 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
 - ① '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② '24.1.1.~'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일이 '21.1.1.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
 -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예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08.12.)

사.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소법 §12 3호 처목)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참고

※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MAX(①, ②)

- ①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 ② 연간 24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 : 2년
-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 2년
- ③ 그 외 재화 : 1년

사례 할인금액 적용 사례

- (사례1) A자동차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4,000만원)의 25% 할인, 종업원 甲은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함
→ 甲의 할인금액(1,00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800만원
→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200만원 근로소득 과세
- (사례2) B전자제품 회사는 종업원에게 판매가격(300만원)의 30% 할인, 종업원 乙은 30% 할인받아 210만원에 구매함
→ 乙의 할인금액(90만원), 비과세 한도 = MAX[시가의 20%, 240만원] : 240만원
→ 할인금액이 비과세 한도(240만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비과세

아. 그 밖의 비과세 소득(소법 §12 3호)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함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籍)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포함)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 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하는 것임(소령 §10의2)

예규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사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5, 2021.05.13.)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요양급여·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장애 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 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재해부조금·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포함)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

○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 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예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03.09.)

0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소령 §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 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 급여 지급액	
	(-) 비과세소득
일용근로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 세율 (6%)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결정세액	

-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법 §164, 소령 §213④)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0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성과급 상여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예규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0333, 2022.05.26.)
-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8.)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2704, 2025.05.15.)

0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소령 §51 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소칙 §16 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한다.
- 이 경우 급여를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참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www.smbs.biz>)의 메뉴 중 [환율조회]에서 조회

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01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가. 원천징수의무자(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다. 원천징수 세율(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를 선택하여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신청한 비율을 적용한다.(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변경한 비율을 적용)

반기별 납부자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시 6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종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예) 공무원 등이 파견된 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등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소령 §196)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식과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오류검증 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원천세 신고 접수일정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수정, 기한 후 전자신고 : 정기분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가능
- 이용시간 : 신고기간 중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2) 원천세 세금신고 유의사항

- 동일 귀속, 지급연월의 정기분 원천세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인정
 - 신고 당일에 기한 후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으로 전송한 1건만 인정
 - 기한 후 신고서를 전송한 다음 날에 기한 후 신고서를 다시 전송 불가능(수정신고로 전송)

-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를 삭제하려면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
- 휴·폐업한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귀속, 지급연월은 신고서를 구분하는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요청한 후 정확한 귀속, 지급연월로 작성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홈택스(www.hometax.go.kr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시간 : 365일 07:00 ~ 23:30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 *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 서울시(이텍스 : <http://etax.seoul.go.kr>), 서울시 외(위텍스 : <http://www.wetax.go.kr>)

〈홈택스 세금납부방법〉

구 분		내 용
조회납부	신고분납부	홈택스에서 신고한 세금신고분 납부
	고지분납부	고지한 내역을 조회하여 납부
자진납부		신고하거나 고지받은 세금에 대하여 자진납부
타인세금납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

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라.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마.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03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가.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소법 §137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소법 §138)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였다가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

홈택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가능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제출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이직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

다. 납세조합에 의한 연말정산(소법 §150)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직한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52-0...1【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외국기관, 우리나라 주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라.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법인46013-2484, 1998.09.03.)
-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게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 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한다.(원천세과-970, 2009.11.26.)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2【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 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다.(법규소득2014-273, 2014.8.19.)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3【기업형태 변경 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마.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한다.

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소칙 §9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04 연말정산 시기

가. 계속 근로자의 경우(소법 §134)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나.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한다.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4【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④)

05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소법 §1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령 §2)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거주기간의 계산(소령 §4)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 §2의2)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소령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6)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소법 §3)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법 §119, 소령 §179)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연말정산 방법(소법 §12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 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국일46017-92, 1997.02.06.)

06 외국인의 연말정산(조특법 §18의2)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참고

※ 외국인근로자 특례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의2)

종 전	개 정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근로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사례 해외취업 근로자(월 100만원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계산

【문】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 ①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② 비과세 소득 5,500만원

답 결정세액 : 3,325만원

〈결정세액 계산〉

-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2,000만원 + 5,500만원 = 17,500만원
- 결정세액 = 총급여 × 19% = 17,500만원 × 19% = 3,325만원
⇒ 단일세율 특례 신청 시 비과세,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III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01 근로소득공제(소법 §4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가.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나.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신청이나 증빙 불필요)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사례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 근로자 김○○씨가 (주)○○○○에 '25년 3월 입사하여 '25.12.31.까지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월급여 200만원(기본급 1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원, 현물 식사 제공
이 경우 김○○씨의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은?

【답】 근로소득공제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 2,348만원
(1) 총급여액 계산 (비과세소득 제외)
 $(200\text{만원} \times 10\text{월}) + (100\text{만원} \times 800\%) + 500\text{만원} + 80\text{만원} = 3,380\text{만원}$
(2) 근로소득공제 계산
 $750\text{만원} + (3,380\text{만원} - 1,500\text{만원}) \times 15\% = 1,032\text{만원}$
(3) 근로소득금액 계산
 $3,380\text{만원} - 1,032\text{만원} = 2,348\text{만원}$

02 인적공제

구 분	공제금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가.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1) 기본공제(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20세 이하 ○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18~20세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참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84, 2010.02.10.)

사례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답 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원]
 - 공제대상가족수 :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해당 과세기간 중에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

2) 추가공제(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 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참고

장애인공제 시 증명서류 제출(소령 §107 ②)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을 받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사례

【문】 근로자의 자녀(23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금액은?

답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이유〉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나. 인적공제 판정

1) 판정시기(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함(법제처 22-0472, 2022.9.14.)

예규

-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2021.10.15.)
- 사망일·치유일 전날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가능

사례

【문1】 근로자가 2025.12.27.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답 1.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문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25.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답 2. 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이유〉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소령 §106)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 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하며,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③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2025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25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03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51 ③에 따른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득세법」 §51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소득세법」 §52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서이46013-10340, 2003.2.17.)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10.15.)
-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 2016.2.26.)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IV

특별소득공제(소법 §52)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30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4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 600만원~2,000만원 [①+②+③]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23년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벤처 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법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40% ※ '25.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수영장·체육 단련장 이용료를 추가공제에 반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 - 문화체육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공제대상 금액은 각 항목의 합계금액을 대한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25.7.1.이후 지출분부터 수영장, 체육단련장 이용료를 추가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연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해당 과세기간에는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 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01 특별소득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02 보험료공제(소법 §52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4-118의4-1)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 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03 주택자금공제(소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1,000분의 31('24.3.22.~'25.3.21.까지는 1,000분의 35, '23.3.20.~'24.3.21.까지는 1,000분의 29, '21.3.16.~'23.3.19.까지는 1,000분의 12, '20.3.13.~'21.3.15.까지는 1,000분의 18, '19.3.20.~'20.3.12.까지는 1,000분의 21, '18.3.21.~'19.3.19.까지는 1,000분의 18, '17.3.10.~'18.3.20.까지는 1,000분의 16, '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3)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527, 2011.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2014-112, 2014.06.0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하여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2019.04.26.)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참고

-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6억원으로 상향 조정(2023.12.31.개정)
-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2018.12.31.개정)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 조정: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 ※ 기준시가 개정규정은 2014.1.1.~2018.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분에 적용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참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는 주택

* 신축주택 취득기간 :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참고

이전(3회 이상 이전 가능)

-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이전하는 방식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④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⑤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¹⁾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 2023.12.31.이전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2024.1.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적용)

6) 공제한도

- 202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 2023.12.31.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1) 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2024.1.1.이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경우 :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2,000만원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기타	8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6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12
*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이 2012.1.1. 이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15년(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2,000만원 ㉠이 2012.1.1.이전 차입·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미만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 29년 :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 2,0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공제한도 :
Min(㉠, ㉡)
① : ㉡+㉢
② : 400만원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 부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정부소득46073-12, 2001.1.16.)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
- 사업용·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登記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요 예규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604, 2006.09.25.)
-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53, 2009.05.27.)

-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68, 2009.05.2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원천-488, 2009.06.04.)
-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680, 2009.08.11.)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759, 2010.09.29.)
- 거주자와 주민등록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실제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768, 2010.10.01.)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원천-537, 2011. 08.30.)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에게로 소유권을 이전등기(공동소유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2020.04.06.)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사전-2022-법규소득-0434, 2022.04.2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4-법규소득-0032, 2024.06.26.)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0456, 2024.06.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소득-0206, 2024.07.09.)
-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800만원임(서면-2025-원천-0344, 2025.02.24.)

V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0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 조특법 §86 : 2013.1.1. 삭제)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20세 이상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탁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
(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나.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 2003.06.13.)

0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6천만원	6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0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등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및 배우자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 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같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p.114의 공제한도를 적용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되며,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저축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음

○ 중도해지 세액추징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85㎡ 이하) 당첨
-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해지 6개월 이내 발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폐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

마.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9.1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210, 2010.3.11.)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자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던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1077, 2023.01.26.)

0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
-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가.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①과 ②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아래 ①-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
 - ①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①-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 ①-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 ②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견기업에 ①-1 및 ①-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위 3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투자 비율을 매월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 ②에 투자하는 비율) 및 100분의 15(투자신탁 재산 총액 중 3의 ①-1에 투자하는 비율,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①-1의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봄)이상

※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평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계산

$$\text{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금액} \times \frac{\text{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text{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text{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 직접투자란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창업·벤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6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3 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당시에는 공제 가능한 벤처기업 등 「조특법」 제16조 제①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 적용
 - ※ '18년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text{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구 분	공제율	한도금액
'23년 이후 투자분	10%(100%,70%,30%)	종합소득금액의 50%(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 ①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②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등에 확인서 발급 신청

사례

【문】 근로자(근로소득금액 5,000만원)가 2023.6.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 시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25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은?

답 2,500만원

- ① 공제대상금액 : 3,000만원 + (3,500만원 - 3,000만원) × 70% = 3,350만원
- ② 공제한도액 : 5,000만원(근로소득금액) × 50% = 2,500만원
- ③ 소득공제금액 : 2,500만원(①과 ② 중 적은 금액)

라. 소득공제 추징

○ 소득공제 추징사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참고

○ 추징 예외사유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회수

○ 추징방법(조특령 §14 ⑧, ⑨)

-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하고
-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

참고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조특령 §14 ⑪)

추징사유 발생 시 조특령 §14 ⑧, ⑨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3.5%를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마. 주요 예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 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서일46011-11158, 2003.8.2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 2018.04.18.)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2018-법령해석 소득-0154)
-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2019.09.11.)
-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39, 2020.12.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021.11.24.)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사전-2022-법규소득-1255, 2023.05.10.)

-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제4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3683, 2023.09.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588, 2024.04.05.)
-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3-법규소득-0893, 2024.7.29.)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거주자가 당초 소득공제 받은 과세연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8.2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5-법규소득-0650, 2025.9.15.)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0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 문화체육 사용분

- 2025.7.1.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공제대상금액에 추가(공제율 : 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시설이용료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로 계산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

$$\text{최저사용금액} \times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5\%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 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text{신용카드사용분} \times 15\% + (\text{현금영수증} + \text{직불} \cdot \text{선불카드} + \text{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times 30\% + (\text{최저사용금액} - \text{신용카드사용분} - \text{현금영수증} - \text{직불} \cdot \text{선불카드} - \text{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times 40\%$$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문화체육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는 제외한다.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 포함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를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²⁾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2)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공과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특례·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제1부 2025년 국세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국
문

마.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통지³⁾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 등”)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급·통지한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제공

사. 소득공제 적용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다.

3)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아. 유의사항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는 해당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참고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홈택스(www.hometax.go.kr)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

사례

[사례1]

총급여 68백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올해('25년) 4,300만 원(전통시장 3백만원, 대중교통 2백만원, 문화체육 1백만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30만원임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2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8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300만원 (문화체육 사용분 100만원 포함)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백만 원 × 25% = 1,700만 원(신용카드 사용금액 4,300만원이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금액 : MIN(1,2) = 530만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635만원

① 신용카드 사용분 = (3,200만원-200만원) × 15% = 450만원

② 현금영수증 등 = [(800만원-300만원) × 30%] + [(300만원-100만원) × 30%] = 210만원

③ 문화체육 사용분 = 100만원 × 30% = 30만원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만원 × 40% = 120만원

⑤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40% = 8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2. 총 공제한도 : 53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 추가공제[min(335만원*, (30만원+120만원+80만원), 300만원)

* 공제가능금액(635만원) - 공제한도액(300만원) = 335만원

자. 주요예규

○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 사용자를 근로자로 한정하여 발급되는 복지카드(신용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원천세과-769, 2010.10.01.)

- 법인이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사용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05.22.)

-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예규

- 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 2021.06.29.)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함(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서면-2024-법규소득-0341, 2024.09.25.)
- 임직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0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위탁하는 때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위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위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해당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해당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는 경우로서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6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2493, 2025.07.23.)
-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023-원천-2539, 2024.11.21.)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04.)
-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한 무상출연분에 대한 우리사주가 중도퇴사자로 인하여 회수되어 재배정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배정 회차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취득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서면-2024-원천-2486, 2024.10.07.)

0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할 수 있음.

$$(\text{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text{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times 50\%$$

* 위기지역 내 「조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 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함

가.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 임금총액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근로시간 합계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② 고용 유지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임금 감소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 연간 임금총액 계산

-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②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frac{\text{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text{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가. 공제 요건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저축가입대상에서 제외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할 것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한다.

다. 공제배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중도해지 시 추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한다.

0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20)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가. 공제 요건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것
 - *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129①)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나. 공제금액 및 한도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24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한다.

다. 공제배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전환가입)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 전환가입 요건

- ①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
- ②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라.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중도해지 시 추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와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 기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

※ 추징제외 전환가입 요건

- ①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
- ②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 ③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10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VI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0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소법 §59의5)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 : 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원어민 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을 ‘㉔ 조세조약란’에 기재(19% 단일세율 적용 또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100% 세액감면)
-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어민 교사가 아일랜드 거주자(대학에서만 강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소법 §156의2, 소령 §207의2, 소칙 §100)

원어민 교사 등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서(소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거주자증명서
-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 기타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유의사항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19%) 적용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참조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경력단절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조특령 §26의8 ⑫)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 진단, 퇴직일 당시 임신,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 돌봄, 퇴직일 당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장애인을 동거봉양

- 해당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참고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한도

감면 요건	소득발생 시점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23.1.1.~'26.12.31.	90%	200만원
	'18.1.1.~'22.12.31.	90%	150만원
	'16.1.1.~'17.12.31.	70%	150만원
60세이상자, 장애인	'23.1.1.~'26.12.31.	70%	200만원
	'16.1.1.~'22.12.31.	70%	15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	'25.3.14.~'26.12.31.	70%	200만원

※ '25.3.13.이전 요건을 갖춘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근로자로 대상자 확대)

사례

【문】2022.4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24.4월 퇴사하고 1년간 휴직 후 2025.4월 B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감면 대상기간은?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답 취업일로부터 5년간(2022.4월~2027.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문】2024.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5.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답 재취업일로부터 5년간(2025.2월~2030.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구분	업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⑦ 부동산업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수의업은 제외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참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감면 신청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할 수 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조특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 계산 등

①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frac{\text{종합소득 산출세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②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으로 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times (1 - \text{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참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홈택스(나의 홈택스) 조회 서비스 추가
 - 근로자 : '20. 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원천징수의무자 : '20.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주요 예규

-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2015.07.17.)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 할 사항임(사전-2019-

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12.23.)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특법 제30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021-법규소득-5836, 2022.11.09.)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2020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감면적용 기간은 2023.12.31.까지임(서면-2024-원천-0150, 2024.02.2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원천-0618, 2024.05.0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4-원천-1456, 2024.05.09.)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임(서면-2025-원천-0376, 2025.08.07.)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쟁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참고

※ 외국인기술자 특례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종 전	개 정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외국인 기술자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근로기간 중 외국인 기술자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46조의3제2항 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2)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text{부품등은 최초 3년 70\%})$$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left[\left(\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right) - \tex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right] \times \frac{\text{경영성과급}}{\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50\%$$

4) 제출서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29의6)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90%	50%
그 외(핵심인력)	50%	30%

1) 감면대상자(「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2)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2)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② ①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3) 감면세액 계산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begin{matrix} \text{청년 90\%(50\%)*} \\ \text{그 외 핵심인력 50\%(30\%)*} \end{matrix}$$

* 괄호 안의 숫자는 중견기업의 경우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참고

※ 내국인우수인력 특례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의3)

종 전	개 정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근로기간 중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 배제함
-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04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가.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천 300만원 이하	⇒	74만원
• 3천 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사례

【문】 근로소득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 ① 90만원(총급여액 3천만원) ② 200만원(총급여액 6천만원)

답 ① 49만 5천원 ② 66만원

〈계산〉

-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총급여액 3천만원)인 경우
(90만원 × 55%) = 49만 5천원(공제한도 74만원 내)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총급여액 6천만원) 경우
(130만원 × 55%) + {(200만원 - 130만원) × 30%} = 92만 5천원이나
⇒ 공제한도가 66만원*이므로 66만원이 세액공제금액임
* Max[66만원,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05 혼인세액공제(조특법 §92)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5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 22/100,000

1) 공제 요건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 분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 '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2024년 귀속부터 적용)

2)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절차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절차
 -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사례

【사례1】 30살 A(초혼)와 28살 B(초혼)가 '24년 3월 혼인신고

⇒ '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사례2】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40살 C씨(재혼), 35살 D(초혼)가 '26년 3월 혼인신고

⇒ '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원 세액공제 적용

【사례3】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E(재혼)와 F(재혼)가 '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06 자녀세액공제(소법 §59의2)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	연 25만원
2명	⇨	연 55만원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 3명 : 95만원, 4명 : 135만원, 5명 : 175만원

나.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09.18.)

07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 §59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연금저축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 이후)

〈총급여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2022.4.14.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소득령 §118의3)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한다.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사례

【문】 근로자 A는 2024년도 초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도 중 6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원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았음. 2025년도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연금저축에 납입하지 못해 2025.10.20. 저축취급기관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에 대해 최대로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근로자 A의 총급여액은 54백만원임)

답 공제한도 초과납입금 200만원(6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2025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00만원 × 15% = 300,000원

다.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소법 §59의3, 소령 §40의2, §118의2 ③)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추가 한도를 적용한다.

사례

【문】 근로자 B는 2024년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300만원,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 전환금액 4,000만원이 있음
2025년에는 개인연금·퇴직연금 납입액과 ISA 전환금 없음
2024년과 2025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 답 1. 2024년 : 연금저축 6백만원+퇴직연금 3백만원+추가한도 3백만원*=1,200만원
* Min(4,000만원×10%, 300만원)
2. 2025년 : 전년도 ISA 전환금 잔액 3,700만원 중 600만원(연금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예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3940, 2024.04.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대상임(서면-2024-법규소득-1973, 2024.09.25.)

-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축소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한함)
 -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연금부동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로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를 통보 받은 경우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봄
-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08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법 §59의4)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액공제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료비	㉠ 본인, 장애인, 65세 이 상자, 6세 이하자,미 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 한도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15%(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난임시술비 : 30%)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 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교육비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15%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2,0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0%)* *특별재난지역
	특례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가. 특별세액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 (보장정보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가능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서류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장정보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 표준세액공제(소법 §59의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나. 보험료 세액공제(소법 §59의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정보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181, 2010.03.03.)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3)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사례

【문】 김국세씨(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김국세)의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1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답 12만원

- (1)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만원(한도 100만원)
- (2)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원 × 12% = 12만원

다. 의료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6세 이하자,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공제 한도 없음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 ㉠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 자, 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 3% > ㉡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 ㉢)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 만원	라.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참고

-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 :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②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 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깁개 포함)·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주요 문의사항

- 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②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③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 ④ 의인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 ⑤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⑥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3) 의료비 공제 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23년 기준 : 소득 수준별(10분위) 87만원 ~ 78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참고

-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신고서 작성 Tip)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사례

-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을 지급, 배우자 산후조리원비용 250만원 지급
- 【문】 의료비 550만원은 65세 이상인 아버지에게 대한 의료비 300만원,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 150만원(난임시술비 100만원 포함)이며, 의약품구입비는 배우자를,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용은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 답 1,335천원 [= (“가”+“나”) × 15% + “다” × 30%]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가 + 나) + 다 = 240만원 + 450만원 + 100만원 = 790만원
 - 가. “나”, “다”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240만원
 - = {(5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200만원} - 90만원*
 - *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 × 3% = 90만원
 - 나.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50만원
 - 다. 난임시술비 = 100만원

 예규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의료비공제(재소득-649, 2006.10.2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 (다른 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급여를 부담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382, 2013.04.03.)
-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사전-2021-법규소득-1872, 2022.01.18.)

라.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로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 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참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② 「①」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단, 해당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의 범위

-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900만원

※ 국외에서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자 및 제출서류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자(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에 한함)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

-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업장 사본 등)
 -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통 제출 서류 :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소령 §118의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16.12.20.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1조, 제1항)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4)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법인 46013-335, 2001.02.10.)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서이46013-10624, 2001.11.28.)
-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현재 3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현재 9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현재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317, 2004.03.02.)
-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1팀-782, 2004.06.09.)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유아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원천-148, 2009.01.14.)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공제대상 교육비임 (원천-361, 2009.04.24.)

- 비과세대상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원천-211, 2010.03.10.)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원천-451, 2010.06.01.)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임(서면법규-933, 2013.08.29.)
-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박사 학위논문 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1267, 2013.11.19.)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법규-282, 2014.03.26.) - 수업료·입학금·그 밖의 공납금이 아님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과-1210, 2018. 05.03.)
-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아니함(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2020.11.2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업료는 「소득세법」 제59의4 제3항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소득-5326, 2021.04.2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의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5472, 2023.06.2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제주국제학교(KIS JEJU 및 NLCS JEJU)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
-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환율 적용방법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5) 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④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⑤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이를 차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2) 확인방법
 -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고객센터→기관찾기→훈련기관 검색)
 -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사례

【문】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구 분	내 용	금 액
본인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자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1명)	보육료 120만원
	초등학생(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1명)	중학교 수업료 300만원
형제자매 (3명)	대학원생(처남, 26세)	1,000만원
	대학생(처남, 22세)	900만원
	대학생(동생, 25세)	750만원

답 4,305,000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 + ② + ③) = 800만원 + 420만원 + 1,650만원 = 2,870만원

① 본인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420만원(120만원+300만원)

*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120만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650만원

* 대학생 처남 900만원(공제한도), 동생 750만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인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액 = 2,870만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15% = 4,305,000원

참고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법59조의4③ 제2호 라목).

1.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영 §118의6 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후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영 §118의6 ⑩)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3. 공제 대상자 범위(법 §59의4 ③ 제1호)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거주자는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음
-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시에는 공제 안됨)

4.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

마. 기부금 세액공제(소법 §59의4 ④, 조특법 §58, §76, §88의4 ⑬)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 30%)를 공제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0만원 이하 : 고향사랑기부금 × 100/110
2.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30%)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하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연간 한도 2,000만원)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30%)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⑥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3) 기부금 유형

가)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76)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출서류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나) 고향사랑기부금(조특법 §58)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특별재난지역은 30%).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10만원 \times 100/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times 15\%(30\%)$

○ 접수 및 상한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참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례기부금(소법 §34 ②)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4)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 법령 §38 ①)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4)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포함)이 기부금 확인서(소칙 별지 제36호의 2 서식)를 발행하여 확인

참고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8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금전 이외의 기부금 평가 : 제공당시의 시가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 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기재부 고시로 지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없을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지정기간 '17.1.1.~'22.12.31.)

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특법 §88의4 ⑬)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⁵⁾

마) 일반기부금(소법 §34 ③)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납부한 조합비의 세액공제 요건

○ (요건) 다음 ①, ②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할 것 (다만, 해당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24.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경우 공시 불필요)

② 조합원이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할 것 (다만, 상급단체가 '24.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
또는 '24.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산하조직인 경우 공시 불필요,
상급단체가 총연합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면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 상급단체: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5)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임

※ 해당 과세기간에 연합단체 등 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연합단체 등 결산결과가 공표되었다면 해당 퇴직자가 납부한 회비는 공제 가능

참고

○ 노동조합의 분류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연합단체와 단위노동조합으로 구분됨
- 연합단체는 총연합단체(예시: 00노동조합총연맹)와 산업별 연합단체(예시: 00산업노동조합연맹)로 구분됨
- 단위노동조합은 기업 단위노동조합(예시: 00기업노동조합)과 초기업 단위노동조합(예시: 00산업노동조합, 00지역노동조합)으로 구분됨
- 산하조직은 지역본부, 지부, 지회 등 단위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을 의미
(예시: 00산업노동조합의 00기업지부)

※ 조합비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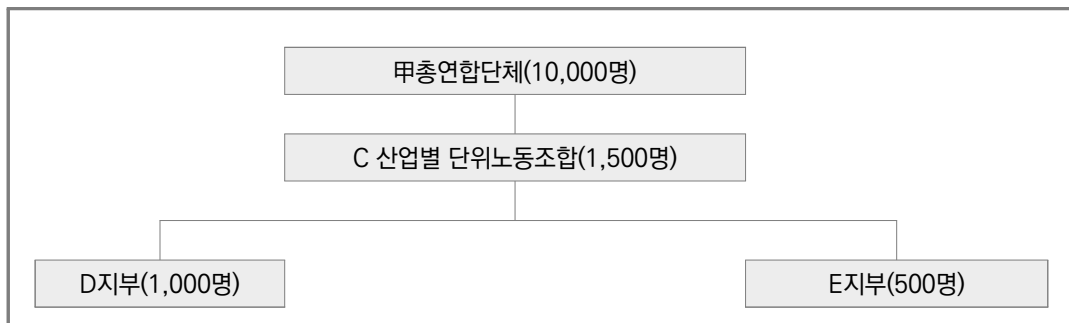
○ (예시1)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A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의 경우

- A는 1,000인 이상의 단위노동조합이므로 A가 공시하여야 A의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 공제 적용

○ (예시2)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B 노동조합(조합원 수 500명)의 경우:

- B는 1,000인 미만의 단위노동조합이므로 B의 공시여부에 관계없이 B의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 (예시3) C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이 甲 총연합단체(10,000명)에 가맹하였고, C가 산하조직으로 D 지부(1,000명)와 E 지부(500명)를 둔 경우



- ① C, 甲, D가 공시하면 D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② C, 甲이 공시하면 E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E는 1,000인 미만의 산하조직이므로 공시 불필요

참고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회계 공시 여부 조회 방법

- ①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접속 (<http://labor.moel.go.kr/pap>)
- ② 상단의 '회계공시열람'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아래의 '회계공시여부조회' 메뉴 클릭
- ③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명칭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24.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며,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들 노동조합(산하조직)의 공시 여부를 열람할 수 있음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을 검색
 - * (예시1) '24.12.31. 기준 조합원수 1,500명인 C노동조합이 A총연맹 산하 B연맹에 가맹한 경우, C노동조합을 검색하여 A총연맹, B연맹, C노동조합의 공시 여부 확인
 -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의 상급단체를 검색
 - * (예시2) '24.12.31. 기준 조합원수 500명인 C노동조합이 A총연맹 산하 B연맹에 가맹한 경우, C노동조합이 아니라 B연맹을 검색하여 A총연맹, B연맹의 공시 여부 확인
- ④ '조회결과'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산하조직) 클릭
- ⑤ '회계공시여부 정보'에서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 및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 확인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위탁자 등)이 가목의 공익법인 등(위탁자 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로 한정)과 다음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위탁자 등 중 1명이 공익법인 등의 설립자인 관계
- 2) 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관계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바.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일반기부금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www.moef.go.kr) 법령 > 고시·공고

제1부 2025년 국세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4) 기부금세액공제의 이월공제(소법 §61)

-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4.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참고

2023년 이월기부금은 공제기간(10년) 경과로 인해 소득공제 항목에서 삭제

- 이월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이월 특례기부금(2015~2024)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5)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5) →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5~2024)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5)

※ 2015.12.31. 이전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가 2016.1.1. 이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기재부 소득세제과-473. 2017.10.11.)

6)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소법 §160의3)

-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소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1)] 작성내용 :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 ※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기부자별 발급명세 의무 보관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소법 §160의3 ③)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소칙 별지 제29호의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기부금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7)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소법 §81의7, 법법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⁶⁾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 분	가산세
기부금영수증	①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①”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6) 1억원 한도.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8) 기부금 표본조사(소법 §175)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제59조의4 제4항(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9) 주요 예규

-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322, 2009.04.0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원천-201, 2010.03.05.)
-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301, 2010.12.31.)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원천-175, 2011.03.28.)
- 일본적십자사에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을 지급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1-177, 2011.05.26.)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306, 2012.4.9.)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님
- 개인사찰이 종단에 사찰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의로 탈종을 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법인-550, 2012.09.12.)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02.03.)
-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설기관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292, 2014.3.31.)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 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2016.01.18.)
-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179, 2017.01.11.)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 2020.03.26.)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해 긴급재난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접수된 긴급재난 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2622, 2020.08.25.)
-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기부금 단체)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한 자(기부자)가 기부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기부금 단체로 하며, 보험계약의 유지 및 중도해지, 수익자 변경, 해약환급금 수령 등의 권한이 기부자에게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부자가 해당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법인-4422, 2023.07.11.)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의 “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가 되고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이 되며, “기부금 모집처”는 작성하지 않는 것임(사전-2023-법규법인-0277, 2023.07.21.)
-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음에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원천세과-830, 2023.09.13.)

09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자) :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
-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text{월세액} =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text{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times \text{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총급여 요건 미충족 등)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예규

-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2021.11.25.)
-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023.05.19.)
-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04.3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

10 납세조합 공제(소법 §150)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⁷⁾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7) 소득세법 §127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11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기간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상환완료시까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 ~ '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중복공제 불가)

참고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2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가. 공제대상 외국소득세액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8)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8)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급여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나. 외국소득세액 계산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 ②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text{세액공제한도}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right)$$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text{비율} =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 원천소득} \times \text{면제(감면)비율}}{\text{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21.1.1. 이후 소득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적용

라. 제출서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례

【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 ① 기본공제대상자 3명(본인, 배우자, 자)
-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 600만원 포함)
- ④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답 331,200원

- ① 과세대상근로소득 : 13,000,000원 + 18,000,000원 - 6,000,000원(비과세) = 25,000,000원
-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25,000,000원 - 9,00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 16,000,000원
-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0,000\text{원} - 6,000,000\text{원}) - \left(9,000,000\text{원} \times \frac{12,000,000\text{원}}{25,000,000\text{원}} \right) = 7,680,000\text{원}$$
-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690,000\text{원} \times \frac{7,680,000\text{원}}{16,000,000\text{원}} = 331,200\text{원}$$

※ 근로소득 산출세액 계산 : {16,000,000원 - 4,500,000원(기본공제)} × 6%(기본세율) = 690,000원

13 농어촌특별세

가. 과세대상(농어촌특별세법 §2)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등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나. 과세표준(농어촌특별세법 §5)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과세표준에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

사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융자받아 2025년도 중 매월 125천원씩 이자를 납입하고 2025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 90,000원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30\% = 450,000\text{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text{원} \times 20\%(\text{세율}) = 90,000\text{원}$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I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사례

01 소득·세액공제금액 계산

이강모(800101-1*****)는 한강건설(주)(123-81-*****)에 근무하며 배우자(황정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자녀 3명[이태현 19세, 이태희 6세, 이태영 0세('25년 출생)]과 함께 살고 있다.

가. 기본사항

○ 근무 기간

2025.1.1. ~ 2025.12.31. 근무

○ 가족관계

부양가족	나이	주민등록번호	성명	비고
배우자	43세	820701-2*****	황 정 연	사업소득(1,000만원)
자녀 1	19세	060501-1*****	이 태 현	고등학생
자녀 2	6세	191224-4*****	이 태 희	취학전 아동
자녀 3	0세	251030-3*****	이 태 영	'25년 출생

○ 급여 명세

월 급여 내역		상여금 등 내역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기 본 급	250만원	연간 상여금	2,200만원
식 대	20만원	자녀 수업료	250만원
시간외 근무	40만원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6세 이하 보육수당	30만원	성과급여*	190만원
배우자 수당	25만원	출산지원금(1회)	500만원
합 계	365만원	합 계	3,440만원

* 성과급여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2025년도 3월에 확정

○ 원천징수내역

2025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1,000,000원(가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초자료

지출내역 구분		지출액	대상자	비고
보험료	건강보험료	13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종신보험료	150만원	태희(자녀)	2025.10월 납부
	종신보험료	150만원	태영(자녀)	2025.10월 납부
	자동차보험	120만원	배우자	
의료비	수술비	250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보약(건강증진)	150만원	본인	
	입원치료비	130만원	본인	
	난임시술비	100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산후조리원비용	220만원	배우자	근로자 지출
	시력교정용안경	55만원	본인	
교육비	수업료	250만원	태현(자녀)	회사 전액지원
	교복구입비	35만원	태현(자녀)	
	학원수강료	120만원	태현(자녀)	
	체험학습비	50만원	태현(자녀)	
	수능응시료	20만원	태현(자녀)	
	체육시설	120만원	태희(자녀)	주 1회 월 단위
	대학원(박사과정)	300만원	본인	회사 전액지원(비과세)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20만원	본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본인	
	특례기부금	50만원	본인	
	우리사주조합	50만원	본인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
	노인복지시설	50만원	배우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25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
	퇴직연금	100만원	본인	급여에서 징수(근로자부담금)
	연금저축	200만원	본인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00만원	본인	요건 충족(2013.3.2. 차입)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3,100만원 사용)

구 분	연간사용액	비 고
신용카드	1,5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체크카드	600만원	문화체육 사용분 100만원 포함
총 계	3,100만원	

나. 근로자 소득명세 입력

○ 급여 검토

구분	금액		비과세 금액	금액
월급여 합계	4,380만원=365만원 × 12월		식대	240만원
연간상여금	2,200만원		6세 이하 보육수당	240만원
자녀 수업료 지원	250만원	⇒	비과세학자금	300만원
학자금 지원	300만원		출산지원금	500만원
성과급여	190만원		소계	1,280만원
출산지원금(1회)	500만원			
합계	7,820만원	⇒	총급여액	6,540만원

○ 비과세금액 기재방법

비과세구분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기재란 번호	코드
식대	○	⑱-40	P01
6세 이하 보육수당	○	⑱-2	Q02
비과세학자금	○	⑱-5	G01
출산지원금(1회)	○	⑱-3	Q03

○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6,540만원
- 근로소득공제(소법 제47조)

총 급여액	공제액(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근로소득 공제금액 계산

$$1,200\text{만원} + (6,540\text{만원} - 4,500\text{만원}) \times 5\% = 13,020,000\text{원}$$

- 근로소득금액 : 52,380,000원

$$65,400,000\text{원} - 13,020,000\text{원} = 52,380,000\text{원}$$

다. 인적공제

○ 본인, 부양가족(자녀3명) : $1,500,000 \times 4\text{명} = 6,000,000\text{원}$

※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제외

라.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공제 ⇨ 2,500,000원

구분	공제한도	납입금액	공제금액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전액	250만원	250만원

○ 보험료

* 보험료공제 ⇨ 1,700,000원

구분	납입금액	자료구분	공제한도	공제금액
건강보험료	130만원	국세청자료	없음	13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만원	국세청자료	없음	40만원

* 자료 구분 란에는 소득공제영수증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자료”로,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자료”로 구분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 ⇨ 1,000,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됨(주택마련저축 등과 합하여 종합한도로 적용)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text{MIN}(1, 2) = 489.5\text{만원}$

※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100만원이 총급여의 25%(1,635만원)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489.5만원

① 신용카드 사용분 = $(1,500\text{만원} - 200\text{만원}) \times 15\% = 195\text{만원}$

② 현금영수증 등 = $(1,000\text{만원} - 300\text{만원}) \times 30\% + (600\text{만원} - 100\text{만원}) \times 30\% = 360\text{만원}$

③ 문화체육 사용분 = $100\text{만원} \times 30\% = 30\text{만원}$

④ 전통시장 사용분 = $300\text{만원} \times 40\% = 120\text{만원}$

⑤ 대중교통 사용분 = $200\text{만원} \times 40\% = 80\text{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1,300만원) $\times 15\%$ + [최저사용금액(1,635만원) - 신용카드사용분(1,300만원)] $\times 30\%$
= 295.5만원

2. 총 공제한도 = 489.5만원

= 기본공제(300만원) + 추가공제[$\min\{189.5\text{만원}^*, (30\text{만원} + 120\text{만원} + 80\text{만원}), 300\text{만원}\}$]

* $489.5\text{만원}(\text{공제가능금액}) - 300\text{만원}(\text{기본공제한도}) = 189.5\text{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Rightarrow 0\text{원}(= 5,895,000\text{원} - 25,000,000\text{원}) \rightarrow$ 음수인 경우 '0'

-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 5,895,000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489.5만원)

마.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52,380,000원) - 종합소득공제(11,200,000원)

- 그밖의소득공제(4,895,000원) +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0원) = 36,285,000원

바. 산출세액

○ 과세표준(36,285,000원) $\times$ 기본세율 = 4,182,750원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times 15\%$)

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MIN(①, ②)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1,579,825원 = 71.5만원 + {산출세액(4,182,750원) - 130만원} × 30%

② 세액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6,540만원인 경우

66만원* = Max(66만원, 74만원 - (6,540만원 - 3,300만원) × 0.008)

* 세액공제한도가 66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66만원을 한도 적용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950,000원(①+②)

① 8세 이상(1명) : 250,000원(1명 : 25만원, 2명 : 55만원, 3명이상 : 55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1명) : 700,000원 (셋째 이상인 경우 1명당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360,000원

구분	공제한도	납입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연 6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4만원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하여 연 9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2만원
합계		300만원	300만원	36만원

※ 세액공제율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5%)

○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원

구분	납입금액	자료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종신보험료	300만원	국세청 자료	100만원	12만원
자동차보험	120만원	국세청 자료	소득요건 초과 배우자의 보험료로 공제 제외	

※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공제율 12%)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950,700원

구분	수술	입원치료비	시력교정용안경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본인, 난임시술비		230만원*	55만원 → 50만원한도		280.0만원	950,700원
그 외 부양가족	250만원			220만원 → 한도 200만원	253.8만원	
합계	250만원	230만원	50만원	200만원	533.8만원	

* 입원치료비 130만원, 난임시술비 100만원

국세청자료	250만원	230만원		200만원	
기타 자료			50만원		

* 시력교정용 안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자료에 해당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5,338,000원 (②+③+④)

① 총급여액의 3% → 1,962,000원 (65,400,000원 × 3%)

② 그 외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금액 : 2,538,000원

2,538,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962,000원

③ 본인·장애인·65세 이상·6세이하 세액공제 대상금액 : 1,800,000원

④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00,000원

- 세액공제액 계산 : (② + ③) × 15% + ④ × 30% = 950,700원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여부검토

부양가족	교육비 내역	자료구분	금액	공제대상여부
이태희(취학전아동)	체육시설수강료	기타 자료	120만원	공제대상
이태현(고등학생)	수업료	국세청 자료	250만원	공제대상
	교복구입비	기타 자료	35만원	공제대상
	체험학습비	기타 자료	50만원	공제대상(30만원)
	수능응시료	국세청 자료	20만원	공제대상
	학원비	-	120만원	공제대상 아님
이강모	대학원 수강료(비과세학자금)	-	300만원	공제대상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 ⇨ 630,000원

구분	공제대상	공제대상 제외	공제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취학전아동	120만원		300만원	120만원	630,000
고등학생	335만원	12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근로자 본인		300만원	없음	-	
합계	455만원	420만원		420만원	

※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 대상금액(4,200,000원) × 15% = 630,000원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271,818원

기부내역	기부자	공제대상여부	기부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이강모	여	20만원	10만원 이하	10만원	90,909
				10만원 초과	10만원	15,000
고향사랑기부금	이강모	여	10만원	10만원 이하	10만원	90,909
특례기부금	이강모	여	50만원	50만원		75,000
우리사주조합	이강모	부	50만원	-		-
노인복지시설	황정연	부	50만원	-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근로소득금액 : 54,660,000원

② 정치자금기부금

- 20만원 중 10만원은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되고,
10만원 초과분(근로소득금액 100% 한도)은 15% 공제율 적용(15,000원)

③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분은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

④ 특례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금액 : 50만원 {Min(50만원,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100%)}
- 세액공제액 : 75,000원(세액공제 대상금액 × 15%)

④ 노인복지시설 5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공제 대상 아님

아. 결정세액 및 환급(납부)세액

* 결정세액 ⇨ 240,232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4,182,750원 - (660,000 + 950,000 + 360,000 + 1,972,518)원 = 240,232원

* 환급(납부)세액 ⇨ △ 759,768원

240,232원(결정세액) - 1,000,000원(기납부세액) = △ 759,768원

0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자의 인적사항, 세대주 여부, 거주구분, 근무기간을 기재하며 소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 코드 기재
- 소득·세액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관계코드 : 근로자와의 관계를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숫자로 기재
- 내·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여부 숫자로 기재
-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 : 기본공제·추가공제 관련하여 변동 여부를 체크
- 인적공제항목 : 자녀 인원을 기재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항목에 “○”을 기재 (장애인 공제는 해당자별 코드번호를 기재) 한다.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인적공제 대상검토표〉

관 계		기본 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장애인	경로 우대	한부모
본인	0	-	- 기혼여성 -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인 여성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 하는 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소득자 직계존속	1	60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증명서 · 상이자 증명을 제출한 자	70세 이상	
	배우자 직계존속	2				
	배우자	3	-			
	직계비속 자녀	4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외	5	20세 이하			
	형제자매	6	20세 이하 60세 이상			
	수급자	7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8	위탁아동			

* 직계비속 자녀 외 = 손자·손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안 2026. >

(10쪽 중 제1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이강모	주민등록번호	800101-1*****
근무처 명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의 배우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2025.1.1.~2025.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공제		경로 우대	혼인 세액 공제	출산 입양	보험료				의료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3,000,000		6,000,000					
	0							국세청	1,700,000					550,000		1,000,000			
		(근로자 본인)						국세청	1,700,000					550,000					
	3	황정연						국세청					4,700,000						
	1	820701-2*****	✓						기타							1,000,000			
	4	이태현						국세청											
	1	060501-1*****						○	기타										
4	이태희							국세청			1,500,000								
1	191224-4*****							기타											
4	이태영						○	국세청			1,500,000								
1	251030-3*****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기부금									
국세청계	2,700,000			1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기타계	1,850,000									800,000									
국세청	2,700,000			1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기타	1,850,000									800,000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계코드

구 분	관계 코드	구 분	관계 코드	구 분	관계 코드
소득자 본인('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입양자)('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기 필요한 자
해당코드	1	2	3

-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신고서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서체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10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2,500,000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2,500,000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노인 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1,700,000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1,700,000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1,000,00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1,000,000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3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4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5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13,000,000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5,000,000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7,000,000					
	④ 문화체육 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1,000,000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3,000,000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2,000,000					
	계(①+②+③+④+⑤+⑥)				31,000,00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금액					

(10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세액(단위)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감면기간 만료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공제종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공제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V 세액 감 면 및 공 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12% 또는 15%			
		연금저축	납입금액	2,000,000		2,000,000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3,000,000		3,000,000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3,000,000	100만원	1,000,000	12%			
		장애인전문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3,000,000		1,000,000				
		의료비	본인·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자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1,850,000	작성방법 참조	1,800,000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1,000,000		1,000,000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4,700,000	2,538,000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교육비	의료비 계		7,550,000		5,338,000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1 명)	유치원·학원비 등	1,200,000	1명당 300만원	1,200,000			
			초·중·고등학교(1 명)	공납금	3,350,000	1명당 300만원	3,0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4,550,000		4,200,000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000		100,000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00,000		100,000	15%,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000		100,000	100/110	
	10만원 초과 (일반)			기부금액				15%		
	1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액				3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500,000	15%·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800,000		800,000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5% 또는 17%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③ 성 명	이강모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전화번호: 02-0000-0000)		
	⑥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전화번호: 02-0000-0000)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금	00보험	987-**-*****	1,000,000	120,000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은행	*****-67890	2,000,000	240,000

3)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 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

작성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투자조합 출자·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9쪽)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면적 (㎡)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㉑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성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면적 (㎡)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주택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작성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⑨, ㉕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10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③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 (전화번호: 02-0000-0000)	
소득자	④ 성 명 : 이강모	⑤ 주민등록번호: 800101-1*****
	⑥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전화번호: 02-0000-0000)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지급받은 날	⑩지급받은 금액	⑪지급회차 [1 또는 2]	
이태영	251030-3*****	2025.11.30	5,000,000	1	123-81-*****

작성방법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자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03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

가.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25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여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료비지급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작성요령

- 2025.01.01.~2025.12.31.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다.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가능
- 본인, 장애인, 6세 이하자,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⑥본인 등 해당 여부' 란에 ○표 하며, 그 외의 의료비공제 대상자는 X표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증빙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⑨의료증빙코드'란에 기재한다.

의료증빙코드	내 용
1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3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5	기타 의료비 영수증

-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인별로 합계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사업자등록번호, 건수는 기재하지 않음)
-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한다.
-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경우 '⑬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란에 ○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안 2026. . .>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이강모	② 주민등록번호 : 800101-1*****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2025)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해당여부	⑬ 난임 시술비 해당여부			
8	0	0	1	0	1	-	1	2	3	4	5	6	7	○				-		-		*	*	*	*	*		1		1,300,000	×	×
8	0	0	1	0	1	-	1	2	3	4	5	6	7	○	1	0	1	-	0	1	-	*	*	*	*	*	A안경	5	1	550,000	×	×
8	2	0	7	0	1	-	2	2	3	4	5	6	7	×				-		-							1		2,500,000	×	×	
8	2	0	7	0	1	-	2	2	3	4	5	6	7	×				-		-							1		1,000,000	×	○	
8	2	0	7	0	1	-	2	2	3	4	5	6	7	×				-		-							1		2,200,000	×	×	
						-												-		-												
						-												-		-												
						-												-		-												
						-												-		-												
															합 계												1	7,550,000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일

제출자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에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성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세 이하자·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⑫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및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04 기부금명세서 작성

가. 대상자

- 서식 작성 대상자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
- 국세청에 전산 파일 제출 대상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 ※ 공제대상 기부금 :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나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대상임
 - ※ 근로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음

나. 작성요령

-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 해당연도 기부 명세
 - ⑦ 유형, ⑧ 코드 :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일반 등 기부금 유형과 코드를 기재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 “특례”, 코드번호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 “고향사랑”, 코드번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기부금 : “고향사랑”, 코드번호 “44”)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 “일반(종교단체 외)”, 코드번호 “40”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일반(종교단체)”, 코드번호 “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번호 “50”
 - ⑨ 기부내용 : 금전기부는 “금전”, 금전 외 기부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 기재하고, 현물의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른 금액임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⑩ 상호, ⑪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단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한 줄로 최상단에 기재
 -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⑫ 기부자 : 관계코드(1.거주자, 2.배우자, 3.직계비속, 4.직계존속, 5.형제자매, 6.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⑬ 기부내역의 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공제제외 기부금”에 포함

○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 「**㉓**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금액을 기부자별, 기부금 코드별로 구분하여 기재

○ 기부금 조정 명세

- 전년도 이월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 금액과 이월금액 소멸금액을 계산하여 기재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다음의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기부금은 소멸금액에 기재
 - ※ 이월공제 기간(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10년)
- 전년도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된 경우)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 추가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명세서 추가제출 아니할 수 있음
-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
-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종교단체 외 기부금을 먼저 공제
- 다음연도 이월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 없음

0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안 2026. . .>

(3쪽 중 제1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주자 성명	이강모	생년월일	1980.1.1.
근무처 명칭	한강건설(주)	사업자등록번호	123-81-*****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 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⑪)	⑥ 신용카드	⑦ 직불·선불카드등	⑧ 현금영수증	⑨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⑩ 전통시장 사용분	⑪ 대중교통 이용분
내국인	본인	이강모	800101	국세청 자료	31,000,000	1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그 밖의 자료							
				국세청 자료							
			-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31,000,000	1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⑯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⑰-1 총급여	⑰-2 최저사용금액 [(⑰-1)×25%]	⑰-3 공제제외 금액
1,950,000	3,600,000	300,000	1,200,000	800,000	65,400,000	16,350,000	2,955,000
⑱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⑯)-(⑰-3)]	⑲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50만원]	⑳ 일반 공제금액 (⑱과 ⑲ 중 적은 금액)	㉑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체육 추가공제액 계산			㉒ 추가공제 금액 합계 {(⑱-⑲), (㉑-3) 중 적은 금액}	㉓ 최종 공제금액 (㉒+㉑)
			㉑-1 추가공제 가능금액 [(⑱)⑲인 경우 (⑭+⑮+⑯)과 (⑱-⑲)중 적은 금액]	㉑-2 추가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00만원]	㉑-3 추가공제금액 [(㉑-1)과 (㉑-2)중 적은 금액]		
4,895,000	3,000,000	3,000,000	1,895,000	3,000,000	1,895,000	1,895,000	4,895,000

⑰-3 계산

구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15%	
⑥ + ⑦ + ⑧ + ⑨ ≥ (⑰-2) > ⑥	⑥×15% + {(⑰-2)-⑥}×30%	2,955,000
⑥ + ⑦ + ⑧ + ⑨ ≥ (⑰-2)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⑥×15% + (⑦+⑧+⑨×30%) + {(⑰-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II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작성, 전자제출하면 편리합니다.(p.268 참조)

가. 개요

-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은 주(현), 종(전)근무지별로 각각 작성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적용란에 “여 ①” 표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대상 아님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 처리 방법

- 결정세액 =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 × 19%
-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나. 근무처별 소득명세

- 근무기간, 감면기간을 정확히 기재

주(현), 종(전)근무처별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특히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자, 중도 퇴사자는 퇴직 일자를 정확히 기재)

참고

- 2025.4.1. 중도 입사(2024.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⑪ 근무기간 ⇨ 2025.4.1.부터 2025.12.31.까지
- 2025.10.30. 중도 퇴사(2025.1.1.부터 근무)한 경우
 - ⑪ 근무기간 ⇨ 2025.1.1.부터 2025.10.30.까지
- 전근무지 2025.1.1.~2025.4.1., 현근무지 2025.6.1.~2025.12.31.인 경우
 -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현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한 경우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같은 회사내에서 중도 퇴사 및 전입·전출의 경우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합계의 ⑪ 근무기간”
 - ⇨ 2025. 1.1.부터 2025.12.31.까지
- ※ 4대보험의 기준소득월액은 “주(현)근무지의 ⑪ 근무기간”과 “⑩ 계의 소득금액”을 활용하여 결정되므로 근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잘못 기재한 사례)
 -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을 2025.1.1.로 기재
 -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를 합산하여 현 근무지에 신고
 - 2025.12월 급여를 2026.1월 이후에 지급하고 2025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총급여란에는 [I. 근무처별 소득명세 ⑯계의 합계]의 금액에 당해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재함

* 비과세소득에는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을 포함

(예) 급여 22,000,000원, 상여 25,000,000원, 비과세소득 6,000,000원(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 포함)인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 [근무처별소득명세 ⑯계의 합계] 금액 47,000,000원을 입력하고 ②총급여 란에는 [근무처별소득명세 ⑯계의 합계] 47,000,000원에 비과세소득 6,000,000원을 더한 53,000,000원을 기재

다. 비과세소득

○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해당 기재란에 해당 코드와 비과세금액을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소득 한도〉

법조문	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호	코드	비과세 한도
소법§12 3 아 소법§12 3 자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⑬-5	G01	해당연도 납입할 금액 한도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⑬-18	H05	전액(승선수당은 20만원 한도)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⑬-4	H06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고등교육법	⑬-4	H07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 -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⑬-4	H08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⑬-4	H09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⑬-4	H10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3 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⑬-22	H14	전액
	소령§12 13 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⑬-23	H15	전액
	소령§12 14 (취재수당)	⑬-6	H11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5 (벽지수당)	⑬-7	H12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⑬-8	H13	전액

법조문	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호	코드	비과세 한도
소법§12 3 자	소령§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⑬-24	H16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령§12 18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⑬-30	H17	전액
소법§12 3 차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⑬-19	I01	전액
소법§12 3 파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⑬-10	K01	전액
소법§12 3 거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⑬	M01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300만원	⑬	M02	월 300만원 이내 금액 (2023년 귀속까지만 적용)
	소령§16①2(국외근로)	⑬	M03	국외 등에서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소령§16①1(국외근로) 500만원	⑬	M04	월 50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더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등	⑬-1	O01	연 240만원 이내 금액(광산 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 총액)
소법§12 3 러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내)	⑬-40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머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⑬-2	Q01	월 10만원 이내 금액 (2023년 귀속 까지만 적용)
소법§12 3 머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월 20만원 이내)	⑬-2	Q02	월 2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머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⑬-3	Q03	전액
소법§12 3 머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⑬-3	Q04	전액
소법§12 3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⑬-21	R10	전액
소법§12 3 어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⑬-29	R11	연 700만원 이내 금액
소법§12 3 처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⑬-41	W01	MAX(시가×20%, 240만원)
구 조특법§15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⑬-11	S01	행사이익 중 연 3,000만원 이내 금액
조특법§16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⑬-31	U01	행사이익 중 연 2억원 이내 금액
조특법 §88의4⑥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⑬-14	Y02	인출금의 5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⑬-15	Y03	인출금의 7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⑬-16	Y04	인출금의 100%

법조문	비과세 항목	기재란 번호	코드	비과세 한도
소법§12 3 자	소령§12 13 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⑪9	Y22	전액
조특법§1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⑪8-12	T01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50%)
		⑪8-36	T02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70%)
조특법§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⑪8-33	T30	경영성과급의 50%
조특법§29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⑪8-34	T40	공제금 중 기업부담 기여금의 50%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⑪8-37	T41	공제금 중 기업부담 기여금의 3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⑪8-38	T42	(청년근로자)공제금 중 기업부담 기여금의 90%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⑪8-39	T43	(청년근로자)공제금 중 기업부담 기여금의 50%
조특법§18의3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⑪8-35	T50	해당 기업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50%
조특법§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⑪8-27	T12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7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⑪8-32	T13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90%
조세조약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의 소득세 감면	⑪8-28	T20	학교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100%

- 비과세소득 종류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II 비과세소득란에 해당 번호별
총액을 기재하고 비과세 소득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별지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라. 세액명세

○ 기납부세액(소득세)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 금액을
기재
-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소득세)은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㉓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기재

※ 이 경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반드시 기재

○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 ⑥8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등

마. 소득·세액공제 명세 ⑦8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내/외국인, 장애인 (구분코드 기재)여부, 인적공제항목을 기재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명세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사.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과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작성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안 2026. . .>

(9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 1, 세대원 2 세대주의 배우자 3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한강건설(주)		② 대표자(성명) 김 0 0					
	③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④ 주민등록번호 400101-1*****					
소득자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 1 / 부 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							
	⑥ 성명 이 강 모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분		주(현)	종(전)	종(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무처명		한강건설(주)					
	⑩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⑪ 근무기간		25.1.1.~25.12.31.	~	~	~	25.1.1.~25.12.31.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여		39,000,000				39,000,000	
	⑭ 상여		26,400,000				26,400,000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⑮ 계		65,400,000				65,400,000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⑮ 국외근로		MOX				
		⑮-1 야간근로수당		O0X				
		⑮-2 보육수당		Q02	2,400,000			2,400,000
⑮-3 출산지원금		Q03	5,000,000			5,000,000		
⑮-4 연구보조비		H0X						
⑮-5 비과세학자금		GO1	3,000,000			3,000,000		
~								
⑮-40 비과세식대		P01	2,400,000			2,400,000		
⑮ 수련보조수당		Y22						
⑮ 비과세소득 계		12,800,000				12,800,000		
⑮-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분		㉑ 소득세		㉒ 지방소득세		㉓ 농어촌특별세	
	㉑ 결정세액		240,232		24,023			
	기 납 부 세 액	㉒ 중(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㉒ 주(현)근무지			1,000,000	100,000		
	㉒ 납부특례세액							
	㉒ 차감징수세액(㉑-㉒-㉓-㉔)			-759,768	-75,977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세무서장 귀하		2026년 3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9쪽 중 제2쪽)

IV 정 산 명 세	②① 총급여(①⑤,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65,400,000
	②② 근로소득공제		13,020,000
	②③ 근로소득금액		52,380,000
	기본 공제	②④ 본 인	1,500,000
		②⑤ 배 우 자	
	추가 공제	②⑥ 부 양 가 족(3 명)	4,500,000
		②⑦ 경 로 우 대(명)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②⑧ 장 애 인(명)	
		②⑨ 부 녀 자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③①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2,500,000 공제금액 2,500,000
		③② 공적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③③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③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③⑤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③⑥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1,700,000 공제금액 1,700,000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③⑦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③⑧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③⑨ 정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1,000,000
		③⑩ 2012년 이후 차입분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③⑪ 계		2,700,000
	③⑫ 차감소득금액		41,180,000
	그 밖 의 소 득 공 제	④① 개인연금저축	
		④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④③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④④ 청약저축 ④⑤ 주택청약종합저축 ④⑥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④⑦ 투자조합출자 등	
		④⑧ 신용카드등 사용액	4,895,000
		④⑨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④⑩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④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⑫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⑬ 그 밖의 소득공제 계	4,895,000
	④⑭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세 액 공 제	④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36,285,000
	④⑯ 산출세액		4,182,750
	세 액 감 면	⑤① 「소득세법」	
		⑤② 「조세특례제한법」(제외)	
	세 액 감 면	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⑤④ 조세조약	
	세 액 감 면	⑤⑤ 세액감면 계	
		⑤⑥ 근로소득	660,000
	세 액 감 면	⑤⑦ 혼인세액공제	
		⑤⑧ 자녀	공제대상자녀 (1 명) 250,000 출산·입양자 (1 명) 700,000
	세 액 감 면	⑤⑨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세 액 감 면	⑤⑪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2,000,000 세액공제액 240,000
		⑤⑫-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세 액 감 면	⑤⑬ 보험료	보장성 장래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⑤⑭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5,338,000 세액공제액 950,700
	세 액 감 면	⑤⑮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4,200,000 세액공제액 630,000
		⑤⑯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100,000 세액공제액 90,909
	세 액 감 면	⑤⑰ 고항 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특별재난지역) 공제대상금액 100,000 세액공제액 90,909
		⑤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세 액 감 면	⑤⑲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⑳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㉑ 계		1,972,518
	⑤㉒ 표준세액공제		
	⑤㉓ 납세조합공제		
	⑤㉔ 주택차입금		
	⑤㉕ 외국납부		
	세 액 감 면	⑤㉖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㉗ 세액공제 계	3,942,518
	⑤㉘ 결정세액(⑤㉓-⑤㉗)		240,232
	⑤㉙ 실효세율(%) (⑤㉘/⑤㉓)×100		0.36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국
무
법
률

(9쪽 중 제3쪽)

※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 애 인	혼인 세액 공제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 건강 보험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국세청			3,000,000		6,000,000					2,700,000	
						기타	1,700,000				550,000		1,000,000			1,850,000	
0		○				국세청				1,300,000							
	(근로자 본인)					기타	1,700,000			550,000							
3	황정연					국세청				4,700,000							
1	820701-2*****					기타						1,000,000					
4	이태현	○				국세청										2,700,000	
1	060501-1*****				○	기타										650,000	
4	이태희	○				국세청		1,500,000									
1	191224-4*****					기타										1,200,000	
4	이태영	○			○	국세청		1,500,000									
1	250130-3*****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계	1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기타계							800,000										
국세청	1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	3,000,000	2,000,000											
기타							800,000										
국세청																	
기타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자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청홈페이지→국제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함)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② 비과세소득 계"란 및 "②-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轉)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①-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공제금액을 "⑥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② 총급여"란에는 "⑥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⑥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③③~③④)"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③⑦~③⑧)"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⑤⑧~⑤⑩-1)"란과 "특별세액공제(⑥①~⑥⑤)"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④⑦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③④ 주택자금공제(②④+③), ③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③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②④+③+③), ④①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④②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④③ 우리스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④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 ④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③⑥ 차감소득금액에서 ④⑥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④⑦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⑦⑥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4.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 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 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㉔ 실효세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㉗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를 말함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6. "㉘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O"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장애인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2
화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3

마.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사.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아.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하·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9. ㉚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 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육단련장 시설이용료(이하 이 서식에서 "문화체육 사용분"이라 합니다)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문화체육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 (수영장·체육단련장 시설이용료의 경우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나목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한도)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바목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아목	G01	⑬-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⑬-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⑬-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⑬-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⑬-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⑬-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⑬-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⑬-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⑬-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⑬-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⑬-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⑬-8	소득령§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⑬-24	소득령§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⑬-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I01	⑬-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카목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타목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파목	K01	⑬-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하목	L01		중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M01	⑬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⑬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M03	⑬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M04	⑬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500만원	○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제4부 사업소득·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녀목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O01	⑬-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P01	⑬-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Q01	⑬-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Q02	⑬-2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	○
		Q03	⑬-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출산지원금(1회)	○
		Q04	⑬-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출산지원금(2회)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버목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	R10	⑬-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R11	⑬-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V0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	W01	⑬-41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S01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	U01	⑬-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2제1항	Y02	⑬-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⑬-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⑬-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Y22	⑬	소득령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T01	⑬-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⑬-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T30	⑬-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T40	⑬-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⑬-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⑬-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⑬-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T50	⑬-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T12	⑬-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⑬-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⑬-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③ 성 명	이강모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전화번호: 02-0000-0000)		
	⑥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전화번호: 02-0000-0000)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퇴직연금	00보험	987-65-*****	1,000,000	120,000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은행	*****-67890	2,000,000	240,000

3)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 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투자조합 출자·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공제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 4호·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쪽 중 제7쪽)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면적 (㎡)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㉑ 원금	㉒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성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면적 (㎡)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작성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⑨, ㉕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9쪽 중 제8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한강건설(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③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 (전화번호: 02-0000-0000)	
소득자	④ 성 명: 이강모	⑤ 주민등록번호: 800101-1*****
	⑥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전화번호: 02-0000-0000)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지급회차 [1 또는 2]	
이태영	251030-3*****	2025.11.30	5,000,000	1	123-81-*****

작성 방법

-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됩니다.
-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합니다.
- ⑪ 지급회차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횟수에 따라 '1' 또는 '2'로 적습니다.
- 2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I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해 수동으로 작성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이므로 실무 적용시 홈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p.297 참조)

□ (주)한강건설 2026.2월 원천징수세액 자료

○ 급여지급현황(2026년 2월 급여를 2.24.에 지급)

성명	주민번호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비고
합계	8명	22,230,000	1,198,170	
김△△	000000-00000000	2,500,000	51,180	
최△△	000000-00000000	3,000,000	113,390	
박○○	000000-00000000	2,300,000	78,600	
박△△	000000-00000000	500,000	-	
이○○	000000-00000000	5,200,000	465,700	
정△△	000000-00000000	2,100,000	45,000	
송○○	000000-00000000	2,000,000	62,000	
문○○	000000-00000000	4,630,000	382,300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현황(중간 정산 포함)

성명	총지급액 (전·현근무지 포함)	작성대상 비과세	결정세액	전근무지 총지급액	기납부세액			전 근무지 상호	전 근무지 사업자번호	차감 징수세액
					계	현근무지	전근무지			
고○○*	7,500,000	300,000	-		620,820	620,820				- 620,820
계속근로자합계	323,231,250	12,290,000	10,994,140	36,690,720	14,895,170	12,356,850	2,538,320			- 3,901,030
김△△	30,000,000	1,200,000	586,230		855,980	855,980				- 269,750
최△△	45,000,000	2,200,000	1,500,760		2,500,370	2,500,370				- 999,610
박○○*	38,700,000	670,000	825,700	11,690,720	1,571,980	676,980	895,000	(주)○○물산	111-81-00010	- 746,280
박△△*	32,600,000	1,800,000	1,585,420	10,000,000	1,001,470	326,470	675,000	△△백화점	211-03-00007	583,950
이○○	82,003,950	2,400,000	4,250,950		5,900,350	5,900,350				- 1,649,400
정△△	12,600,800	720,000	-		312,000	312,000				- 312,000
송○○	24,000,000	1,200,000	307,030		521,900	521,900				- 214,870
문○○*	58,326,500	2,100,000	1,938,050	15,000,000	2,231,120	1,262,800	968,320	(주)○○전자	312-81-00080	- 293,070

※ 고○○○ : 4월 중도퇴사

박○○, 박△△, 문○○ : 5월 중도 입사

○ 2026.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을 담당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 1,000,000원 지급

- 기타소득 1,000,000원, 원천징수세액(소득세) 80,000원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2025년 귀속)

귀속연월	지급연월	소득구분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당월조정 환급	납부세액
						소득세	농특세	가산세		
202501	202501	간이세액	A01	6	25,300,000	1,225,800				1,225,800
202502	202502	간이세액	A01	6	24,600,600	1,136,240				
202502	202502	연말정산	A04	6	237,650,000	- 2,582,650				
202502	202502	가 감 계	A10	12	262,250,600	- 1,446,410				
202503	202503	간이세액	A01	6	23,800,000	1,060,000				1,060,000
202504	202504	간이세액	A01	6	21,389,000	968,720				
202504	202504	중도퇴사	A02	1	7,500,000	- 620,820				
202504	202504	가 감 계	A10	7	28,889,000	347,900			347,900	
202504	202504	퇴직소득	A22	1	3,520,000	120,820			38,510	82,310
202505	202505	간이세액	A01	8	26,470,820	1,382,420				1,382,420
202506	202506	간이세액	A01	8	21,210,890	1,195,750				1,195,750
202507	202507	간이세액	A01	8	21,350,760	1,221,820				1,221,820
202508	202508	간이세액	A01	8	23,850,850	890,790				890,790
202509	202509	간이세액	A01	8	24,682,440	905,620				905,620
202510	202510	간이세액	A01	8	29,720,650	1,110,890				1,110,890
202511	202511	간이세액	A01	8	24,901,140	992,750				992,750
202512	202512	간이세액	A01	8	26,763,380	886,870				886,870

○ 환급세액조정내역(2025년 귀속)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전월 미환급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당월조정 환급세액	차월 환급세액	환급 신청액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 세액	차감 잔액	일반 환급	신택 재산	그밖의 환급세액				
202501	202501			-			-	-	-	-	
202502	202502			-	1,446,410			1,446,410	-	1,446,410	
202503	202503	1,446,410		1,446,410				1,446,410	1,060,000	386,410	
202504	202504	386,410		386,410				386,410	386,410	-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3. 21.>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6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2026년 2월		
원천징수 의 무 자		법인명(상호)		한강건설(주)		대표자(성명)		김00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23-81-*****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 종로5길 1000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02-0000-0000
										전자우편주소		nhk12@nts.go.kr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거 주 자 ·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8	22,230,000	1,198,17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8	323,231,250	- 3,901,03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6	345,461,250	- 2,702,86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1	1,000,000	80,000						
		가감계	A40	1	1,000,000	80,000			80,000			
연금계좌		A48										
연금 소득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계	A99	17	346,461,250	80,000			80,0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⑯	⑰	⑱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전월미환급 세액	기환급 신청세액	차감잔액 (12-13)	일반환급	신택재산 (금융회사 등)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환 급 신청액		
			2,702,860				2,702,860	80,000	2,622,860	2,622,860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신고인 한강건설(주)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총로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국세은행 예금종류 일 반 계좌번호 121-12-0000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123-8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소득 지급액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 금액	⑤ 조정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중(전)]				
근로	202602	202602	A04	8	323,231,250	10,994,140	14,895,170	12,356,850	2,538,320	-3,901,030		1,278,170	2,622,860
합계				8	323,231,250	10,994,140	14,895,170	12,356,850	2,538,320	-3,901,030		1,278,170	2,622,860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1쪽)의 ②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②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③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 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1쪽의 코드 참조)를 기재하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중(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중(전)]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7. ③차감세액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④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조정환급세액란에는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분납금액에서 ③차감세액과 ⑥환급 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의 ②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9쪽)”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123-81-*****						기납부세액 명세서			(단위 :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소득세 등	②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별	지	참	조				
합 계				88	294,040,530	12,977,670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별	지	참	조			
합계			12,356,850				2,538,320		14,895,170	
❸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12,977,670	12,356,850	- 620,820	-	-	-	중도퇴사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수시제출(2025.5월)한 경우임

작성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기재합니다.
기재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기재하고 해당 내역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기재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해 합계를 기재하고 해당 내역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를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지]

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근로소득	202501	202501	A01	6	25,300,000	1,225,800		
근로소득	202502	202502	A01	6	24,600,600	1,136,240		
근로소득	202503	202503	A01	6	23,800,000	1,060,000		
근로소득	202504	202504	A01	6	21,389,000	968,720		
근로소득	202505	202505	A01	8	26,470,820	1,382,420		
근로소득	202506	202506	A01	8	21,210,890	1,195,750		
근로소득	202507	202507	A01	8	21,350,760	1,221,820		
근로소득	202508	202508	A01	8	23,850,850	890,790		
근로소득	202509	202509	A01	8	24,682,440	905,620		
근로소득	202510	202510	A01	8	29,720,650	1,110,890		
근로소득	202511	202511	A01	8	24,901,140	992,750		
근로소득	202512	202512	A01	8	26,763,380	886,870		
합 계				88	294,040,530	12,977,670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김△△	000000-0000000	855,980						855,980	
근로소득	최△△	000000-0000000	2,500,370						2,500,370	
근로소득	박○○	000000-0000000	676,980		☞00물산	111-81-00010	895,000		1,571,980	
근로소득	박△△	000000-0000000	326,470		△△백화점	211-03-00007	675,000		1,001,470	
근로소득	이○○	000000-0000000	5,900,350						5,900,350	
근로소득	정△△	000000-0000000	312,000						312,000	
근로소득	송○○	000000-0000000	521,900						521,900	
근로소득	문○○	000000-0000000	1,262,800		☞00전자	312-81-00080	968,320		2,231,120	
합계			12,356,850				2,538,320		14,895,170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경우 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에서 인별 세부명세를 관리하는 경우 합계자료만 입력 가능

IV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과다공제)

■ 한강건설(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관련 수정신고 자료

○ 직원 중 이○○은 직계존속을 배우자와 중복공제하여 추가 납부세액 200,000원 발생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6.2월 귀속분 수정 → '26.10.10. 제출)

※ 수정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 당초 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각 항목의 하단에 기재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26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③ 지급연월		2026년 2월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8	22,230,000	1,198,170								
			8	22,230,000	1,198,170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8	323,231,250	-3,901,030			0					
			8	323,231,250	-3,701,030			18,600					
가감계	A10	16	345,461,250	-2,702,860			0	0		0			
			16	345,461,250	-2,502,860			18,600	-200,000	218,600			
기타 소득	가감계	A40	1	1,000,000	80,000				80,000				
			1	1,000,000	80,000				80,00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7	346,461,250	80,000			0	80,000		0		
			17	346,461,250	80,000			18,600	-120,000	218,600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⑰	⑳	㉑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⑬+⑮+⑯+⑰)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⑮-⑰)	환급 신청액			
					금융회사 등	합병 등							
			2,702,860				2,702,860	80,000	2,622,860	2,622,860			
			2,502,860				2,502,860	-120,000	2,622,860	2,622,860			

■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6.9월 귀속 → '26.10.10 제출)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귀속연월	2026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③ 지급연월	2026년 9월
1. 원천징수 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	간이세액	A01	8	22,230,000	1,198,170					
소득	가감계	A10	8	22,230,000	1,198,170				1,198,170	
수정신고(세액)		A90			200,000		18,600		218,600	
총합계		A99	2	6,000,000	1,398,170		18,600		1,416,770	

수정신고서 작성

02.원천세 신고서 작성

02-1.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

- ①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기재
→ 연말정산_납부금액란에 수정 신고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기재
- ②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음수(-)로 기재

☞ 근로소득 작성 및 간이세액표 조회 안내

소득구분	코드	(A) 소득지급 인원수	(B)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C)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D) 원천징수세액 동여준 특약세	(E)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F) 원천징수 환급세액	(G)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H) 원천징수세액 동여준 특약세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_합계	A04	15	1,100,000,000	3,000,000		100,000			
연말정산_분--	A05								
연말정산_납--	A06			3,000,000		100,000			
가산세	A10	25	160,000,000	8,000,000		100,000	-2,425,180	10,725,180	

※ 간이세액, 중도퇴사, 일용근로 항목은 당초 신고내용 자동 반영되므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수정신고(세액)

소득구분	코드	(A) 소득지급 인원수	(B)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C)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D) 원천징수세액 동여준 특약세	(E)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F) 원천징수 환급세액	(G)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H) 원천징수세액 동여준 특약세
수정신고(세액)	A90								

③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해 보는 화면입니다.

미납세액과 계산된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예정일자까지의 기간입니다.

미납세액 0 ☒ 아직 납부하지 않은 A

당초납부기한 2025-11-30

납부예정일자 2025-12-01

부터	까지	미납일수 (일)	가산세율 (%)	금액 (원)
①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소계				
가산세 한도액 (당초 미·과소납부세액의 10%)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③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해보기
→ 미납세액, 당초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 입력
→ 계산하기

03. 신고서 부표

※ 신고서 부표 작성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 완료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소득에 따라 다음 화면이 구성되며, 소득별 부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는 세액을 각 소득종류별로 기재하고, 법인세에는 법인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산적재산분, 수익회사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합니다.
- ② 원천징수 의무자(신고세무자는 예외) 지급년월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제출합니다.
- ③ 비거주자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 ④ 법인원천소득에는 일반이자, 산적재산분, 수익회사징수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국내 원천소득이 포함됩니다.

※ 소득의 종류 선택은 **제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를 클릭합니다.

소득의 종류 선택

☐ 거주자 : 이자소득

☐ 거주자 : 배당소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거주자 : 배당주식

※ 근로소득(미근로소득에 대한 대가) 항목은 미근로소득에서 온 과세근로자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과세근로자 소득세법 156조제7 과 소득세법 시행령 207조제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04. 신고서 제출

다침완전 공여용영신우감도님의 납부할 세액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하기

10,725,180 원

귀속년월 2025-02

제출년월 2025-12

원천징수의무구분 매일

납부·환급세액

· 소득세 납부세액 : 10,725,180 원

· 차월이월 환급세액 : 127,390 원

지급년월 2025-02

신고구분 수정신고

환급신청여부 부

·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 0 원

· 환급신청액 : 0 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9시 ~ 18시)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수정신고 추가 납부세액 납부방법

※ 접근경로

홈택스 → ① 납부고지환급 → ② 납부 → ③ 자진납부

HomeTax

납부·고지·환급

① 납부고지환급

② 납부

③ 자진납부

납부서 작성

- ① 납부구분 : 원천분 자납
- ② 세목 : 14근로소득세(갑)
- ③ 납부기한 : 수정신고일
- ④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 출력으로 납부 가능

납부서 작성

① 납부구분 : 원천분 자납

② 세목 : 14근로소득세(갑)

③ 납부기한 : 수정신고일

④ 납부하기 또는 납부서 출력으로 납부 가능

납부서 출력

정기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 작성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01. 기본사항 입력

원천세 신고

다달원천 공여통영신우빌딩 101-82-429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서 부호: 101-82-4293

납부(원천징수)할 세액: 3,130,000 원

기본정보

※ 귀속년월, 지급년월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장수의무자 기본정보

귀속연월: 2025-12, 귀속연월: 2025-11, 지급연월: 2025-11, 사업자등록번호: 101-82-4293

원천징수신고구분: 원천징수구분 (예, 아니오)

원천징수이행 여부: 예, 아니오

원천징수이행자: 다달원천 공여통영신우빌딩

연락처: 010-1111-****, 이메일: abcde@daum.net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3길 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자동 9

상세주소: A동 47층 1208호 위례정나는 나면집다 9-9-308호, 아이주보문대

※ 연말정산 포함 체크 해제

※ 소득종류 선택
→ 근로소득 등 신고대상 소득 모두 체크
→ 저장 후 다음 이동

소득종류선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금소득, 양도소득, 법인원천, 수상금(20세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정기신고서 작성방법

02. 원천세 신고서 작성

다행연선 공여영양신우검도
101-82-4293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안내 내려받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근로소득

신고서 부호
신고서 소득종류 코드
신고서 부호명

납부(환급신청)할 세액
납부할 세액
3,130,000원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해당 월의 신고자료 입력 : 간이세액, 중도퇴사자 등

소득구분	코드	(4) 소득지급 인원수	(5)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6)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7) 원천징수세액 농어촌 특별세	(8)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9) 당월조정 환급세액	(10) 납부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11) 납부세액 농어촌 특별세
간이세액	A01	1	1,000,000	1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_합계	A04								
연말정산_분-	A05								
연말정산_납-	A06								
가합계	A10	1	1,000,000	10,000				10,000	

02-1. 수정신고(세액) 기재

수정신고(세액)

수정신고서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하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를 A90항목에 기재

(단위: 원)

소득구분	코드	(4) 소득지급 인원수	(5)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6)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등	(7) 원천징수세액 농어촌 특별세	(8)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9) 당월조정 환급세액	(10) 납부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11) 납부세액 농어촌 특별세
수정신고(세액)	A90			2,620,000		500,000		3,120,000	

정기신고서 작성방법

03. 신고서 부표 작성

※ 신고서 부표 작성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소득에 따라 다음 화면에 구분되며, 소득별 부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무자가 징수하는 세액은 세액을 각 소득종류별로 기재하지, 법인세에는 법인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신채자산분, 수확회사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세(부표)는 해당 지급년월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하여 해당 제출합니다.
- 비거주자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 법인원천소득에는 일반이자, 신채자산분, 수확회사징수분,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국내 원천소득이 포함됩니다.

※ 소득의 종류 선택은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소득의 종류 선택

- ☐ 거주자 : 이자소득 ☐ 비거주자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 근로 소득
- ☐ 거주자 : 배당소득 ☐ 법인원천 : 일반이자, 신채자산분, 수확회사징수분, 비영업대금의 이익(국내원천소득)
- ☐ 거주자 : 해지주정 ☐
- ☐ 거주자 :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항목은 외국법인이서 온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156조의7 과 소득세법 시행령 207조의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04. 신고서 제출

다침완전 공여용영신우감도님의 납부할 세액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하기

3,130,000 원

귀속년월	2025-11	지급년월	2025-11
제출년월	2025-12	신고구분	정기신고
원천징수의무구분	매일	한금신청여부	부
납부·한금세액	· 소득세 납부세액 : 3,130,000 원 · 차월이월 한금세액 : 0 원 ·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 0 원 · 한금신청액 : 0 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정기신고서 작성방법

05. 신고내역 조회(납부서, 접수증)

원천세 2025년 11월 지급 정기 신고서 제출
2025년 12월 01일 12시 05분에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하기

※ 원천세 신고내역 조회

- ① "신고자 본인 확인" 체크
- ② "신고내역 확인하기" 클릭 또는 "납부서 출력하기" 클릭 → 팝업생성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 신고서와 무효한 것으로 봅니다.
에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①

☒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작성 확인하였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증빙서류 제출

납부기한 연장신청

②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신고내역 확인하기

조회시 유의사항

조회조건

※ 팝업창에서 신고서 제출목록이 나타나며
접수증 및 납부서 출력 확인 가능

• 신고일자 2025-11-01 ~ 2025-12-01
 • 정보 공개여부 ☒ 예 ☐ 부 정보 공개 대상 : 신고내역의 성명(성명) 항목 중 접수증의 성명(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자 ID, 사용자명 항목

조회

총 9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10건

☐	과세연월	신고세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성명 (성명)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세번호)	접수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정 소득세	납부여부	세액 요율
☐	2025년11월	원천징수	정기(확정)	정기신고	다정원	101-82-42933	인타넷	2025-12-01	101-2025-2	접수서류 1종	보기	보기	test1-		신고이동	예	이동
☐	2025년3월	원천징수	정기(확정)	수정신고	다정원	101-82-42933	인타넷	2025-11-28	101-2025-2	접수서류 2종	보기		test1-			-	이동
☐	2025년2월	원천징수	정기(확정)	수정신고	다정원	101-82-42933	인타넷	2025-11-28	101-2025-2	접수서류 2종	보기		test1-			-	이동

정기신고서 작성방법

06. 원천세 신고서 납부서 및 접수증

제출내역

주인세 납부양식 다운로드

납부서 일괄출력

세목	원천세	사업자(주인)등록번호	101-82-42933
접수일시	2025-12-01 12:05:30	접수번호	101-2025-2-600001526960

첨부서류 : 총 1 건

☒	신고서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과세기간	소득구분	납부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기(확정)	정기신고	2025년11월	근로소득세(갑)	출력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HomeTax 국세청홈택스

사용자 ID	testtest2	사용자명	다집 환선 공여용영신우강도
접수번호	101-2025-2-600001526845	접수일시	2025-12-01 12:00:21

제출내역

상호(성명)	다집 환선 공여용영신우강도	사업자(주인)등록번호	101-82-42933
신고서종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0건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내역

(단위 : 원)

매월/반기	매월	총지급액	1,000,000
귀속연월	2025년 11월	소득세 등 납부세액	3,130,000
지급연월	2025년 11월	동기소득별세 납부세액	0
제출연월	2025년 12월	차월이월환급세액	0
환급신청여부	아니오	환급신청금액	0

* (종료)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 (주의) 정기(확정) 신고서 접수 시 신고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하여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특정)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9시 ~ 18시)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V

근로소득 경정청구 사례

□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관할세무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정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 관련증명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 관련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정정분 기재 시 당초 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각 항목의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한 신고내용을 검정색으로 각 항목의 하단에 기재

□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편리함(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장기신고)

제출서류 :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명서류

사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 종교단체기부금 1백만원에 대한 공제가 누락된 경우

- 경정청구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별지 제16호의2서식] (2021. 3. 16.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청 구 인	① 성명	이강모	② 주민등록번호 800101-1*****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⑤ 전화번호	
	⑥ 상호				
신 고 내 용					
⑦ 법정신고일		2026.03.10.		⑧ 최초신고일	2026.03.10.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구분		최초신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경정(결정)청구 누락된 항목을 넣어 재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	
⑩ 세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⑪ 과세표준금액		36,285,000		36,285,000	
⑫ 산출세액		4,182,750		4,182,750	
⑬ 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3,942,518		4,092,518	
⑮ 납부할 세액		240,232		90,232	
⑯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국세은행	계좌번호	100-200-30000
⑰ 환급받을 세액		150,00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7월 일					
청구인 이 강 모 (서명 또는 인)					
종로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위 임 장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위 임 장	(서명 또는 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세 무 사 []공인회계사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명		주소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안 2026. . .>

(9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 1, 세대원 2 세대주의 배우자 3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한강건설(주)				② 대표자(성명) 김 0 0				
	③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④ 주민등록번호 400101-1*****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⑤ 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1000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800101-1*****				
	⑥ 성명 이 강 모								
	⑧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번길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분		주(현)		종(전)		합 계		
	⑨ 근무처명		한강건설(주)						
	⑩ 사업자등록번호		123-81-*****						
	⑪ 근무기간		25.1.1.~25.12.31.		~		25.1.1.~25.12.31.		
	⑫ 감면기간		~		~		~		
	⑬ 급여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⑭ 상여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⑬ 국외근로		MOX						
	⑬-1 야간근로수당		OOX						
	⑬-2 보육수당		Q02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⑬-3 출산지원금		Q03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⑬-4 연구보조비		H0X						
	⑬-5 비과세학자금		GO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⑬-40 비과세식대		P01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⑰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12,800,000		12,800,000			
				12,800,000		12,800,000			
㉑-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분			㉑ 소득세		㉒ 지방소득세		㉓ 농어촌특별세	
	㉑ 결정세액			240,232		24,023			
				90,232		9,023			
	기 납부 세액	㉒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㉓ 주(현)근무지			1,000,000		100,000			
				1,000,000		100,000			
	㉔ 납부특례세액								
㉕ 차감징수세액(㉑-㉒-㉓-㉔)			-759,768		-75,977				
			-909,768		-90,977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6년 7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67

VI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0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란?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대상서식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한 서식은 12종으로 다음과 같음. 12종 이외의 지급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산매체(전자신고)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순번	서 식 명	서 식 번 호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5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6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
7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8	의료비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9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
10	비거주자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
11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12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참고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 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참조

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위한 홈택스 가입방법 및 이용시간

1) 가입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신용확인용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2) 이용시간

제출기간 내 06:00~24:00(휴일, 공휴일 포함)

라. 지급명세서 제출서비스 종류 및 제출기한

1)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귀속의 지급명세서를 연간 합산하여 법정기한 내에 연 1회 제출할 수 있음
- ②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3월 10일)까지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구분
2월말	거주자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3월10일	근로소득, 의료비, 거주자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용), 퇴직소득, 연금계좌, 종교인소득(연말정산용)

- ③ 법정기한 내에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서비스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2) 수시제출 서비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②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8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매월 1일 ~ 매월 말일까지 운영
- ③ 개정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에 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도퇴사자 및 휴·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 ④ 월단위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수정·기한후 제출 서비스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합산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로 제출하거나, 연간합산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② 근로·사업·기타소득, 기부금('15년, '16년 귀속), 의료비 지급명세서만 수정·기한후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단위로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해 유효한 자료로 인정
- ③ 직접작성 제출방식은 '15년 귀속 이후, 변환제출방식은 '10년 귀속 이후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하고 당해 귀속에 해당하는 수정·기한후 제출 서비스는 4월 말(예정)부터 운영. 단,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은 '20년 귀속 이후 수정·기한후 제출 가능

4) 유의사항

지급명세서 제출서비스(연간합산제출, 수시제출, 수정·기한후 제출)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급명세서 중복 제출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제

○ 중도퇴사자 10건, 계속근무자 100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아래의 2가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퇴사자(10건)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25년 9월)하고, 계속근무자(100건)는 연말정산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26년 3월)할 수 있음
-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25년 9월에 중도퇴사자(4건)를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25년 11월에 중도퇴사자(6건)를 '수시제출'로 제출한 뒤, '26년 3월(연말정산기간)에 계속근무자(100건)와 9월과 11월에 제출한 중도퇴사자(10건)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 중복 제출되어 이중 자료가 됨

마.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1) 로그인 및 지급명세서 전자제출방식 선택

①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②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 작성할 지급명세서를 선택

③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선택

제출방식 선택 단계에서 [직접작성]이나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2) 직접작성제출방식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서식과 유사한 화면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전송)하는 방식

① 기본정보 입력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②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근로자) 자료를 화면의 지급명세서 서식에 맞춰 입력 후 등록함. 원천징수의무자의 모든 소득자들을 등록하여 제출할 과세자료 작성을 완료

③ 과세자료 제출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전송)

④ 과세자료제출 접수증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제출 접수증]이 자동팝업으로 화면에 보임

3) 변환제출방식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오류검증하여 제출(전송)하는 방식

※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된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국세청에서 지정한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생성

① 전자파일변환

사용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오류 검증(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진행

② 변환결과조회

오류검증 후 파일의 형식검증오류, 내용검증오류, 확인납세자자료, 정상자료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③ 전자파일제출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를 확인하고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전송)

④ 과세자료제출 접수증(일괄제출) 확인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제출 접수증(일괄제출)]이 자동팝업으로 화면에 보임. '세목상세내용'의 '건수'를 클릭하면 상세내역 조회화면에서 소득자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4) 제출결과 확인

[제출내역]의 과세자료 제출목록에서 '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건수, 금액)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예시

-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①)]하고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②)]을 선택하고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화면에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③)]를 선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표준정의서 가이드상물

다점한선 공어용... 회관정보조회 로그아웃 인증센터 화면크기 100%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나의 메뉴 전체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조회/삭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자동계산

- ②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④)]를 선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표준정의서 가이드상물

다점한선 공어용... 회관정보조회 로그아웃 인증센터 화면크기 100%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나의 메뉴 전체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 조회/삭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자동계산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③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화면에서 작성할 지급명세서 선택 후 [직접작성^⑤]이나 [변환 제출방식^⑥]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

-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은 근로·사업·기타소득, 의료비, 기부금만 제공되고 과년도(사업·기타소득은 '20년~'24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수정제출 또는 기한후 제출할 수 있음
-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넘어온 연말정산 자료는 [직접작성^⑤]을 선택해서 자료를 확인 후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됨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고 제출방식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해요.**

1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세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의료비	기부금
사업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이자·배당소득	연금계좌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비거주자 부동산 등 양도소득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세 신고내역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최종수록 자료조회

2 지급명세서 제출방식을 선택해주세요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⑤ 직접작성(정기·수시) 직접작성 방식으로 정기 또는 수시제출을 하는 경우	직접작성(수정·기한후) 직접작성 방식으로 수정 또는 기한후제출을 하는 경우	⑥ 변환제출방식 회계프로그램이용 등
---	---	-------------------------------

▣ [직접작성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① [Step1.과세자료제출]의 [01.기본정보 입력]에서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귀속년도, 제출대상, 제출년월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주민)번호를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동작함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넘어온 연말정산 자료는 '임시저장' 상태임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01.기본정보 입력

02.상세내역 입력

03.과세자료 제출

dev.hometax.go.kr 내용:
확인완료되었습니다.

다첨한선 공여용영신우감도 남

기본사항

- 지급명세서는 제출구분에 따라
 - ① 수시제출 (휴폐업 또는 중도퇴사자)
 - 매월 제출이 가능하며, 그 날 말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합니다.
 - ② 정기제출(연간 합산 제출)
 - 연 1회 제출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최종 제출한 후에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 변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송한 자료는 직접작성확인증서 조회, 확인 후 제출해야 최종 전송자료로 인정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자료는 수시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간합산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수시제출로 제출한 자료를 연간합산에 포함해 제출하면 중복 자료가 됩니다.)
-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입력한 날 말일까지만 미제출(임시)자료로 제공됩니다.
- (단, 1월 1일 ~ 1월 31일에 입력한 자료는 그해 2월 말일까지 미제출(임시)자료로 제공됩니다.)
- 제출 완료한 날의 말일까지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와서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 변리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는 [상세내역 입력] 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 제출완료된 자료 중 10,000건을 초과하는 자료는 불러올 수 없습니다.
- '지장 후 다음이름' 버튼 클릭 후 [상세내역 입력] 화면으로 이동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에서 소득자별 요약정보(총급여 등)를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은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합니다.

① [01.기본정보 입력]의 '지장 후 다음이름' > [02.상세내역 입력] 좌측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

② [Step2. 제출내역] > '제출내역' 설정 > '조리하기' > 출력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열 >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완료]

과세연월, 제출연월

·제출대상 ☐ 정기제출 ☒ 수시제출

·귀속연도 2025 년

·제출대상 수시제출 ·제출연월 2025 년 11 월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사업자(주인)등록번호 확인

·법인명(상호) 다첨한선 공여용영신우감도 ·대표자(성명) 한보승

이전 저장 후 다음 이동

A. 작성중인 '임시' 자료만 있을 경우

- [확인] 클릭 시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옴

dev.hometax.go.kr 내용: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옵니다.

확인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사업자(주인)등록번호 확인

·법인명(상호) 다첨한선 공여용영신우감도 ·대표자(성명) 한보승

이전 저장 후 다음 이동

B. 전송(제출) 완료된 자료만 있을 경우

dev.hometax.go.kr 내용:
제출완료된 자료를 불러오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로 작성하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B

확인 취소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사업자(주인)등록번호 확인

·법인명(상호) 다첨한선 공여용영신우감도 ·대표자(성명) 한보승

이전 저장 후 다음 이동

- [확인]을 클릭하면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오고, [취소]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 작성할 수 있음
- [확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취소]를 잘못 선택해도, 상세화면에서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1 10명의 소득자를 제출완료하고 추가 입력, 삭제 혹은 수정사항이 발생 할 경우, [확인]을 클릭하여 전송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 가능

ex2 [취소]를 클릭해도 상세화면의 [제출자료불러오기]에서 10명의 자료불러오기 가능

C. 작성중인 임시 자료와 전송(제출) 완료된 자료가 둘 다 있을 경우

dev.hometax.go.kr 내용:

‘제출 완료한 자료’와 ‘작성중인 자료’ 중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옵니다.
다음 화면에서 [제출자료불러오기]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C **확인**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 법인명(상호)	다침완선 공여용영신우감도	* 대표자(성명)
		한보송

이전 **저장 후 다음 이동**

- ‘제출 완료한 자료’와 ‘작성중인 자료’가 있을 때, 위의 메시지 창이 뜨고 [확인] 버튼 클릭시 다음화면(상세화면) 하단에 ‘작성중인 자료’를 불러옴. 상세화면의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제출 완료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보낸 자료는 ‘작성중인 자료’ 상태임. ‘편리한 연말정산’ 자료와 ‘제출 완료한 자료’를 합쳐서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상세화면의 ‘제출자료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제출 완료한 자료’를 추가해야 함

ex ‘직접작성제출방식’으로 10건의 자료가 ‘미전송’ 자료로 작성된 상태에서 ‘변환제출방식’으로 100명의 소득자를 제출완료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50건의 자료를 보냈다면, ‘직접작성 제출방식’의 ‘미전송’에는 이미 작성한 10건의 자료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또는 일괄생성)]으로 보낸 50건의 자료가 합쳐진 총 60건의 자료가 있고, ‘전송’에는 100건의 자료가 존재.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후 위의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하면 상세화면 하단 목록에 60건의 자료가 나타나며 [제출자료불러오기]로 100건을 불러와서 160건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

- ②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상세내역 입력]에서 소득자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지급명세서를 작성
- ‘소득자 인적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❶)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성명은 반드시 입력하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주(현)’ [작성] 버튼(❷)을 클릭하면 아래로 팝업이 펼쳐지며 주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급여 등 주현 근무처 정보(❸)를 입력하고 [등록하기 (❹)]를 클릭

○ 소득자 인적사항 (2025년 귀속)

입력된 소득자 목록보기 입력 방법(매뉴얼) 초기화 제출자료불러오기

❶ * (7)주민등록번호 * (6)성명

거주구분 거주자 내 ·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안함 세대주여부 세대주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부

○ 근무처 추가정보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부

○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분	(13)급여	(14)상여	(15)기타소득
* 주(현) 작성	0	0	0
종(전) 작성	0	0	0
합계	0	0	0

❷ * 주(현) 근무처 및 소득금액 입력

(10) 사업제(주민등록번호) * (9) 근무처명 사시월년일

(11) 근무기간 2025-01-01 ~ 2025-12-31 (12) 결산기간 yyyy-mm-dd ~ yyyy-mm-dd

(13) 급여 0 원 (14) 상여 0 원

(15) 원형상여 0 원 (15)-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0 원

(15)-2 우리사주조합원출금 0 원 (15)-3 월간 퇴직소득금액 환도초과액 0 원

(15)-4 직무발명보상금 0 원 (16) 계 0 원

* 세액명세(기납부세액)

소득세 0 원 지방소득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기납부세액 계 0 원

*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 비과세감면 코드 * 비과세감면 금액 추가 초기화

선택 비과세감면항목명 비과세감면코드 비과세감면금액

☐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확정하기**

출산지원금 1회 (Q03) 0 원 출산지원금 2회(Q04) 0 원

*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18) 국외근로	(18)-1 여간근로	(18)-2 보육수당	(18)-3 출산지원금	(18)-4 ~ (18)-41 계	(19) 수련보조	(20)-1 감면소득계	(20) 비과세소득계
0	0	0	0	0	0	0	0

❸ ❹ **등록하기**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 ‘소득·세액공제명세’에 설정된 본인의 정보(5)를 확인. 본인의 공제 금액(국세청자료, 기타)을 입력(6)하고, [등록하기](7)를 클릭하면 하단에 본인정보(8)가 등록

○ 소득 · 세액공제명세

※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작성]을 클릭하여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등 항목별 지출금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9 연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작성]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명세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을 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가 연도당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건강·고용 등(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국세청 자료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안내)에서 제공하는 각 공제항목의 금액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입력하며, 기타자료 항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입력합니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기 작성한 자료를 수정하려면 화면아래 목록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수정한 후,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자와 관계를 「4-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 입양자)」으로 선택하여야 자녀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가능)

5

· 소득자와 관계	☒ 0-소득자 본인 ☐ 2-배우자의 직계존속 ☐ 4-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 입양자) ☐ 6-형제자매 ☐ 8-위탁아동	☐ 1-소득자의 직계존속 ☐ 3-배우자 ☐ 5-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 입양자 제외) ☐ 7-수급자
· 내·외국인	☒ 내국민 ☐ 외국인	
· 주민등록번호	 확인 초기화	· 성명 갑
· 인적공제항목	☒ 기본공제 ☐ 경로우대 ☐ 부녀자 ☐ 한부모가족 ☐ 혼인세액공제 ☐ 출산입양 ☐ 자녀 장애인공제 ☒ 공제하지 않음 ☐ 공제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단위 : 원)

6

구분	보험료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국세청자료	0	0	0	0	0	0
기타자료	0	0	0	0	0	0

< >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 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 대중 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 교통비 제외)	문화체육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국세청자료	0	0	0	0	0	0
기타자료	0	0	0	0	0	0

< >

7

[닫기] [초기화] [등록하기]

※ 등록된 자료 중 수정을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수정」버튼 버튼을 클릭해서 상단에 나타난 정보를 수정 후 재 등록합니다.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입력합니다.

8

(단위 : 원) 선택내용 삭제 -

선택	번호	수정	관계	관계명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	장애인	경로우
☐	1	[수정]	0	소득자 본인	내국민	갑	800101-*****	1,500,000	0	

< >

· 소득 · 세액공제대상 및 지출금액 합계

(단위 : 원)

(24) 본인	1,500,000	(25) 배우자	0	(26) 부양가족	0 명	0	
(27) 경로우대	0 명	0	(28) 장애인	0 명	0	(29) 부녀자	0
(30) 한부모가족	0	(33) 보험료 (건강·고용)	0	(41) 신용카드 등		0	
(56) 혼인세액공제	0	(57) 자녀	0 명	(57) 출산입양자		0 명	
(61) 보장성보험 (장애인 포함)	0	(62) 의료비	0				
(63) 교육비	0	(64) 기부금	0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본인 정보를 입력한 것처럼 ‘소득자와 관계’에서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인적공제항목에서 공제항목을 선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국세청 자료와 기타자료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9)]를 클릭하면 부양가족 주민번호를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년도에 작성한 부양가족 리스트를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음
-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대상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10)를 클릭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 입력된 공제세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입력완료](11)를 클릭하면 작성목록에 소득자(11)가 추가. 작성목록의 소득자를 클릭하면 입력된 자료가 상단 화면에 다시 나타나고 수정이 가능
- 해당 사업장의 소득자를 모두 입력한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12)를 클릭

결정세액 (단위: 원)

(72)결정세액 0

차감세액 (단위: 원)

구분	(79)소득세	(80)지방소득세	(81)농어촌특별세	계
(73)결정세액	0	0	0	0
(74)중(전)근무지 기납부세액	0	0	0	0
(75)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0	0	0	0
(76)납부특례세액	0	0	0	0
(77)차감징수세액	0	0	0	0

실효세율 (단위: %)

(82)실효세율 0

10

계산하기

입력완료

입력한 지급명세서 목록

성명

검색

(단위: 원)

선택내용삭제

역월입금등록

선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근무처수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11	1	김	800101-*****	1	0	0	0	0

1 총1건(1/1)

이전

12

과세자료 작성완료

제1부 2025년 국세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③ [Step1.과세자료제출]의 [03.과세자료 제출]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요약]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보기](13)를 클릭하여 소득자 자료를 최종 점검한 후 [제출하기](14)를 클릭하여 제출

☞ [미리보기](13)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에서 소득자별 자료가 나타남

☞ [제출하기](14)를 클릭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④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자동 팝업으로 보임. [인쇄하기] 버튼(15) 클릭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

▶ [직접작성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의 참고기능

- ①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상세내역 입력]의 [입력현황조회]에서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에 필요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현황] 집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명단을 클릭하면 작성된 근로소득자 명단에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소득자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음

- ☞ [제출현황 인쇄하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현황] 화면 내용을 인쇄
 ☞ [소득자별인쇄]와 [소득자별 내려받기]는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요약 내용을 제공
 (단, 근로소득자 수가 3천 건을 초과하는 경우 3천 건씩 나눠서 인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01.기본정보 입력 02.상세내역 입력 03.과세자료 제출

입력현황 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명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력) 현황

조회대상 선택

제출

작성중

조회

제출현황 인쇄하기

선택	제출구분	제출(입력)일시	소득원인	비과세소득계 (감면소득계 포함)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중(한)근무지	주(한)근무지	차감징수세액	잔액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농특세	농특세	농특세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선택

소득자별인쇄

소득자별내려받기

닫기

- ② [Step1.과세자료제출]의 [02.상세내역 입력]의 [제출자료불러오기]는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 완료된 자료를 다시 불러올 수 있음

지급명세서 제출자료 불러오기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오는 화면으로, 불러오는 자료건수에 따라 3분~5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에 표기된 자료를 화면으로 불러옵니다.

동일한 소득자가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제외)
 ["동일한 소득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삭제 후 추가하시겠습니까?"]
 ① [확인]을 선택하면 화면에 입력된 동일 소득자를 삭제 후 불러오는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② [취소]를 선택하면 화면에 입력된 동일 소득자를 제외 한 데이터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를 불러온 후, [새로고침]을 클릭하여 불러오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납세자번호	상호	제출년월	소득자건수
127- []	사시광농밥	2025-11-13	1

취소 불러오기

이동 자료가 합니다.

에 '0'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록번호, 여권번호

표준세액공제

입력된 소득자 목록보기

입력 방법(메뉴열)

추가하기

제출자료불러오기

검색

검색

부

계속근로

중도퇴사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 변환제출방식의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①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의 [과세자료제출]에서 파일검증함

- 제출할 전산매체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고, '민원종류'와 해당 '과세년월'을 확인함
 *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10년~'16년 귀속)은 과년도 지급명세서를 변환제출방식으로 수정·기한 후 제출이 가능. (단, 과년도 지급명세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과세년월을 다시 설정)

○ 파일검증하기 진행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 · 내역조회

과세자료제출

제출내역

전자파일변환

○ 유형선택

민원종류

과세년월

제출구분

파일검증하기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 · 내역조회

파일검증하기

파일선택

파일검증하기

변환파일 선택

파일선택

파일검증하기

- 283

- ② [과세자료제출]의 [검증결과내역]에서 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의 오류상세내용 및 오류 없는 정상자료일 경우 소득자별 요약 정보를 상세하게 볼 수 있음

☞ 형식검증 오류와 내용검증 오류가 천 건이 넘으면 천 건이 넘는 오류내용은 오류검증내역 리스트에 보이지 않음

○ 형식검증오류 상세 내용보기

The screenshot illustrates the steps to view detailed format verification errors in the tax reporting system.

Main Window: Verification Results Summary

형식검증		내용검증	
대상 납세자수	1	오류납세자수(확인납세자수)	0(0)
- 라인(줄)수	16	- 오류항목수	0
오류 납세자수	1	정상납세자수	0
- 오류항목수	3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0		

Below the summary, a message states: "[파일형식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용검증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내용 확인후 다시 변환하세요."

Navigation buttons: 1 형식검증오류, 2 내용검증하기, 3 전자파일제출

A red box labeled "오류자료확인" points to the "오류내역" button in the sub-window.

Sub-window: 파일형식오류 (File Format Error)

오류자료 목록 및 상세내용

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오류내역
1		1	120

Buttons: < 이전, 1, 다음 >, 총 1건

Sub-window: 형식검증 오류내역 조회 (Format Verification Error Detail Search)

오류라인	항목명	오류내용	오류메시지
1	전체길이	전체길이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8	기부금액총계	00 0006000000	[소득자 : 김 *****]소득-
11	전체길이	전체길이	[소득자 : 김 *****]레코-

Buttons: < 이전, 1, 다음 >, 총 3건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닫기" (Close) and "출력하기" (Print).

○ 내용검증오류(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상세 내용보기

- 오류납세자수 : 제출이 불가능한 오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없음
 오류납세자수 클릭 시 내용검증오류 팝업 화면으로 이동
- 확인납세자수 : 경고성 오류로 제출은 가능하지만 확인해야 할 오류임
 확인납세자수 클릭 시 확인납세자자료 팝업 화면으로 이동

[내용검증오류]

형식검증

대상 납세자수	1
- 라인(줄)수	8
오류 납세자수	0
- 오류항목수	0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1

내용검증

오류납세자수(확인납세자수)	1(0)
- 오류항목수	2
정상납세자수	0

[내용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제출이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내용 확인후 다시 변환하세요.

1 형식검증완료
2 내용검증오류
3 전자파일제출

내용검증오류

오류자료 목록 및 상세내용

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오류 간수	주요서식명	금액	오류내역
1		1(	2	근로소득 지급명 세서	0	오류내역

< 이전
1
다음 >

총 1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수정 및 재확인 후 다시 제출해주세요.

자료내용

오류 2건

소속자번호 소속자명

서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 항목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
명세서)

오류라인 3 유형 오류

[소득자 : 경]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보다 크고, 근로소득금액 6천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속자번호 소속자명

서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 항목명 그 밖의 소득공제
명세서)

오류라인 3 유형 오류

[소득자 : 경]그 밖의 소득공제 계의 입력값(4,000,000)과 계산값(6,000,000)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이전
1
다음 >

총 2건

[확인납세자자료]

형식검증

대상 납세자수	1
- 라인(줄)수	19
오류 납세자수	0
- 오류항목수	0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1

내용검증

오류납세자수(확인납세자수)	0(1)
- 오류항목수	0
정상납세자수	1

[내용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출하러가기]버튼을 눌러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내용검증(경고/안내) 정상자료확인

1 형식검증완료 2 내용검증완료 3 전자파일제출

확인납세자자료

상세내용 [모든오류자료연세](#)

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오류 건수	주요서식명	금액	경고내역
1		1	12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40,000,000	0

< 이전 1 다음 > ☐ 총 1건

닫기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주세요.

자료내용

안내(경고) 1 건 [엑셀 내려받기](#) [문](#)

소득자번호	*****	소득자명	
서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 함)명세서)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금액	
오류라인	3	유형	경고

[소득자 : 김 *****]보장성보험료공제금액(1,000,000)이 소득공제명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보험료합계(888,888)보다 클 수 없습니다.

< 이전 1 다음 > ☐ 총 1건

닫기

287

- ④ 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일괄 제출)’ 화면이 자동 팝업으로 보임. 한 파일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수가 여러 건일 때 ‘제출내용’^①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원천징수의무자 목록이 나타남. [인쇄하기]^② 클릭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일괄제출)

접수내용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일시	
--------	--	------	--	------	--

제출내용 ①

번호	과세년월	과세자료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접수번호	접수결과	건수	금액
1	2025-01	근로소득지급명...		20	1	-5...	1	67,855,786

1 총1건(1/1)

※ '건수'는 중복을 포함한 소득자 수 (C레코드 건수의 합), '금액'은 C레코드 총급여의 합

세목 상세 내용

과세자료종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귀속년도	2025 년	제출구분	정기신고
건수 (소득자 건수)	1 건 (1 건)	총급여(주현+종전) 합계	67,855,786 원
비과세소득(감면소득포함) 합계	955,377 원	결정세액(소득세) 합계	0 원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합계	0 원	결정세액(농특세) 합계	0 원
차감징수세액(소득세) 합계	0 원	차감징수세액(지방소득세) 합계	0 원

닫기

인쇄하기 ②

▶ 제출내역 결과 확인(제출내역 리스트 및 접수증 인쇄)

- ① [제출내역]에서 [제출년월]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자가 제출한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출내역’의 ‘접수증’에 ‘보기’를 클릭하면 접수증을 다시 볼 수 있음
 -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소득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기능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집계 및 소득자별 요약자료를 제공

- 일부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번에 선택해서 지급명세서 서식 형태로 일괄 출력이 가능한 [일괄출력] 기능을 제공

②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는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공개'로 선택해서 일괄출력하면 성명과 주민번호의 '*' 표시를 해지하고 출력 가능

과세자료 제출하기

Step1. 과세자료제출 Step2. 제출내역

○ 꼭 읽어주세요

- 조회 된 제출내역 목록에서 밑줄 표시된 [접수번호]를 누르면 제출 된 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종류의 과세자료 제출내역 전체를 조회하려면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을 누르세요.

* 제출년월 2025-09 ~ 2025-10 과세년월 yyyy-mm ~ yyyy-mm

* 정보공개여부 ☒ 예 ☐ 부

조회

과세자료 제출목록

총 1 건의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개별접수증 일괄출력 목록 내려받기 10 ~ 확인

☐	성명/성로	과세년월	제출방법	제출지이름	제출건수	총금액	접수일시	접수번호 (자료보기)	접수종	제출유형
☐		2025-01			1		2025-10-~	127-21 1661	보기	접기...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접수내용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일시
접수결과	정상	접수번호 1

제출내용

성명	과세년월	과세자료종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2025-01	1 건	과세자료종류
		금액	67,855,786 원

* '건수'는 총계를 포함한 소득자 수(단위:건)의 건수이며, '금액'은 총금액이며(단위:원)의 총금액이며(단위:원)

세목 상세 내용

과세자료종류	과세년월	건수(소득자 건수)	총금액(주원+출원) 합계	비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과세자료종류	2025 년	1 건 (1 건)	67,855,786 원	955,377 원	0 원	0 원	0 원
비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과세소득(과세소득) 합계							

접기 인쇄하기

- ② [제출내역]의 [나의과세자료제출현황]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이 홈택스에 제출한 제출내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과세자료제출 제출내역

○ 꼭 읽어주세요

- 조회 된 제출내역 목록에서 밑줄 표시된 [접수번호]를 누르면 제출 된 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종류의 과세자료 제출내역 전체를 조회하려면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을 누르세요.

* 제출년월 2025-09 ~ 2025-10 과세년월 yyyy-mm ~ yyyy-mm

* 정보공개여부 ☒ 예 ☐ 부

조회

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동일소득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홈택스로 제출하는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와 제출자의 로그인 아이디로 제출 유효여부를 판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개의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사업자번호지만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총괄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볼 수 있고,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재제출할 수 있음. 재제출하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총괄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남음
 - ☞ 총괄부서사용자가 부서사용자 목록에 보이는 모든 부서사용자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해서 재제출 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도 삭제되니 총괄부서사용자는 취합할 때 부서사용자들이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 후 재제출 해야 함
 - ☞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각각의 자료가 모두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니 총괄부서사용자가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홈택스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 이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
 - 홈택스로 제출 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 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 관할세무서로 제출 시,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로그인 후 홈택스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할 수 없으며 여러 창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음

0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Q&A

가. 지급명세서 공통 Q&A

Q 1. 지급명세서 개정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 2.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나요?

-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매체 제출요령의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오표도 같이 제공되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3.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 했을 때 세제 혜택이 있나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로 2014.1.1. 이후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4.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사업·기타소득, 의료비, 기부금(16귀속 이전)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수정(기한후)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작성방식은 2015년 귀속부터, 변환제출방식은 2010년 귀속부터 상시 제공되고 당해 연말정산한 자료의 수정제출은 4월 말부터 제공됩니다. 단,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직접작성 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은 '20년 귀속 이후 수정·기한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Q 5.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Q 6. 홈택스에서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각각 제출하면 둘 다 제출한 상태가 되나요?

- 아니요. 동일한 아이디로 같은 사업장의 자료를 홈택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변환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후, 직접작성방식에서 변환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와서 직접작성방식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합니다. 또는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각 제출하셔도 됩니다.

Q 7.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Q 8. 부서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총괄부서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9.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레코드는 제출하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제출할 본·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10.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재 제출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재 제출합니다.

Q 11.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 12.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했는데 제출결과나 접수증을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제출내역]에서 제출년월을 제출한 기간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내역 리스트의 [접수증]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전자제출 후에는 소득자 건수, 금액 등이 제출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13.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제출내역]의 제출목록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급명세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제출했고 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의 '*'를 해지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변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외 지급명세서를 변환제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소득자 만 건 이하의 자료에 한해서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득자 만 건 이상의 자료는 사용자의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14.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제출내역]에서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을 클릭합니다.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에서 접수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된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Q 15.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홈택스 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소득자 개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오른쪽 상단의 [나의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나의 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를 클릭하면 제출된 최근 6개년치(근로소득 7개년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 형태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득자 성명과 주민번호는 '*' 처리됩니다.)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Q 16.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1) 홈택스 제출
 -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조회/삭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서 [세금신고 삭제 요청]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2) 관할 세무서 제출
 -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로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을 찾습니다.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나. 부서사용자·총괄부서사용자 Q&A

Q 1. 부서사용자 아이디는 언제 사용하나요?

- 동일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부서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서별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 부서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제출방식(변환제출방식, 직접작성제출방식, 편리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생성 또는 일괄생성)이 서로 다른 자료들을 합쳐서 제출하지 않고 각각 제출하고자 할 때,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각의 제출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Q 2.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는 언제 사용하나요?

- 총괄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들의 제출내역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 부서사용자들은 각 지급명세서 [Step2. 제출내역]에서 직접 제출한 지급명세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들이 제출 완료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괄부서사용자는 직접작성방식의 상세화면에서 [부서사용자 불러오기]를 통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합쳐서 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출 시,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총괄부서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 취합과정에서 부서사용자와 총괄부서사용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취소되어 복구할 수 없거나 이중 자료를 만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사업장에서 취합된 자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Q 3. 총괄부서사용자로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꼭 취합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부서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각각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4.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부서사용자 불러오기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전송도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총괄부서사용자도 부서사용자처럼 직접작성제출, 변환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Q 5. 총괄부서사용자가 부서사용자 불러오기를 한 후 다른 소득자 추가 입력도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 직접작성방식으로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는 [부서사용자 불러오기]를 통해 부서사용자 자료를 불러온 후 추가적으로 자료를 입력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는 파일을 먼저 제출한 후 직접작성방식에서 [부서사용자 불러오기]를 통해 제출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6. 총괄부서사용자와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도 기존에 가입된 사업자 아이디(주사업자 아이디)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주사업자 아이디는 총괄부서사용자와 부서사용자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7.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 아이디(주사업자 아이디)로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러와서 병합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주사업자 아이디는 부서사용자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병합할 수 없습니다. 부서사용자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병합하려면 반드시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가입하여야합니다.

Q 8. 총괄부서사용자가 기존에 가입된 사업자 아이디(주사업자 아이디)로 제출한 자료를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처럼 [Step2.제출내역]에서 확인하거나 [부서사용자 불러오기]를 통해 병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존에 가입된 사업자 아이디(주사업자 아이디)로 제출한 자료는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로 확인하거나 병합할 수 없습니다.

Q 9. 부서사용자로 로그인할 경우 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하는데 어떤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나요?

- 부서사용자로 로그인 시에는 반드시 회사 사업자번호로 된 인증서가 필요하며, 하나의 인증서를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Q 10. 총괄부서사용자와 부서사용자 ID는 몇 개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는 사업자별로 하나만 가입 가능합니다.
- 부서사용자 아이디는 부서별로 제한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Q 11. 부서이동으로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받게 됐는데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새로 만들라고 하네요. 새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홈택스에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는 기준이 아이디와 사업장번호이기 때문에 아이디 변경 시 아이디 변경 전에 제출한 내역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시) 연말정산 기간에 A라는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A로 접속해야만 제출내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어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B로 변경한다면 A가 제출한 내역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전 담당자에게 아이디(A)를 그대로 받아야 이전 제출 내역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환급 신청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메뉴를 클릭

원천세 신고

홈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신고서 미리보기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삭제내역 조회

이용안내 (365일) 06:00 ~ 24:00 단, 납부는 07:00 ~ 23:30 원천세 신고 도움말

정기신고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대화형)
 연말정산 환급/분납신청을 포함한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 (반기 신고자의 연말정산은 정기신고 이용)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중역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파일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꼭 읽어주세요

- 작성과 변한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한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06:00:00 ~ 23:59:59)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 납부서 출력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 작성]과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하는 [파일변환 신고(회계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

- 방법1 : 신고유형(정기/수정/기한 후)에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클릭
- 방법2 : [파일변환 신고(회계프로그램)]버튼을 클릭하여 진행
- 변환신고 이용 시 유의사항 : 변환신고 화면 상단의 변환순서에 유의하여 신고, 제출 ([찾아보기] → [파일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검증결과확인] → [제출하러가기]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증' 확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신고유형

신고유형	설 명
정기신고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신고·납부기한 :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다음월 10일까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어 신고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있어야 함)
기한 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 (국세청에 당초 신고한 자료가 없어야 함)

③ [새로작성하기] 또는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 01. 기본정보

○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 제출연월 2026-03 • 귀속연월 2026-02 • 지급연월 2026-02 • 사업자(주인)등록번호 101-8 **확인**

○ 원천징수신고구분

• 원천징수신고구분 ☒ 매월 ☐ 반기 • 신고구분 정기

연말정산포함 여부 ☒ 예 ☐ 부 소득처분신고 여부 ☐ 예 ☒ 부 환급신청 여부 ☒ 예 ☐ 부

○ 원천징수의무자

상호(법인명) 다침원선 공여용영신우검도 • 성명(대표자) 한**

연락처 010 - 1111 - 이메일 abcde @ daum.net

주소 도로명 검색 서울특별시 중로구 새문안로3길 9-9 지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9

상세주소 A동 67층 1208호 위례창나는 나면침타 9-9-3(내수동, 아이주보문대)

• 일괄납부 여부 ☐ 예 ☒ 부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 예 ☒ 부

○ 소득종류선택

☒ 소득종류선택 시 유의사항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저축해지추징세액
☐ 양도소득 ☐ 법인원천 ☐ 수정신고(세액)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전 **저장 후 다음어둠**

- 귀속, 지급연월 선택 후 사업자번호 우측의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의(매월/반기) 정보가 신고구분에 자동 지정
- 신고하려는 소득종류를 모두 선택하면 다음화면(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할 수 있음

○ 02.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원천세 신고서에 작성하지 않음
- 각 소득별 계에서 ‘-’인 징수세액은 총합계(A99)의 징수세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다음 화면(환급세액조정)의 (15)일반환급 항목으로 입력됨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세액 ‘-1,286,020’은 총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근로소득

○ 근로소득 작성 및 간이세액표 조회 안내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4) 소득지급 인원수	(5)소득지급 총지급금액	(6)징수세액 소득세 등	(7)징수세액 농어촌 특별세	(8)징수세액 가산세	(9)당월조정 환급세액	(10)납부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11)납부세액 농어촌 특별세
간이세액	A01	5	18,000,000	994,800					
종도회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_합계	A04	5	261,400,000	-2,280,820					
연말정산_분...	A05								
연말정산_납...	A06			-2,280,820					
가감계	A10	10	279,400,000	-1,286,020					

기타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4) 소득지급 인원수	(5)소득지급 총지급금액	(6)징수세액 소득세 등	(7)징수세액 농어촌 특별세	(8)징수세액 가산세	(9)당월조정 환급세액	(10)납부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11)납부세액 농어촌 특별세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_...	A43								
종교인소득_...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1	500,000	20,000					
가감계	A40	1	500,000	20,000			20,000		

• 총합계 (코드 A99)

징수세액 - 조정환급세액 = 납부세액

(단위:원)

소득지급 인원수	총 소득지급 금액	징수 소득세 등	징수 농어촌 특별세
11	279,900,000	20,000	0

가산세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소득세 등(가산세포함)	납부 농어촌 특별세
0	20,000	0	0

299

- (18)조정대상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징수세액에서 조정(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징수세액 '20,000'이 있는 기타소득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20,000'을 입력하여 납부세액을 '0'으로 만들. 이때 (18)조정대상환급세액 '1,286,020'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03. 환급세액조정

- 근로소득 가감계의 징수소득세 '1,286,020'은 (15)일반환급에 반영되었으며 (18)조정대상환급세액에도 반영되며, 기타소득 가감계의 당월조정 환급세액 '20,000'은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에 반영됨
그리고, (20)차월이월 환급세액에는 (18)조정대상환급세액에서 (19)당월 조정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제한 금액이 반영
- 전월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20)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12)전월미환급세액에, (21)환급신청액이 있는 경우에는 (13)기환급신청한 세액에 금액을 작성
- (20)차월이월환급세액과 (21)환급신청액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음
(20)차월이월환급세액 '1,266,020' 한도 내에서 환급신청할 수 있음)

○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단위:원)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0

0

0

당월 발생 환급 세액

(단위:원)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15)일반환급

(16)신택재산(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합병 등

1,286,020

0

0

0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하려면,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

(단위:원)

(18)조정대상환급세액(14+15+16+17)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1,286,020

20,000

1,266,020

※ 환급신청하려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구분"에 체크 후 환급신청서부표를 작성합니다.

(21)환급신청액

1,266,020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04. 신고서부표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부표를 작성해야하는 소득종류를 신고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입력

○ 05. 환급신청서부표

- 환급신청서부표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환급세액조정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작성

환급신청서 부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매뉴얼 내려받기

(21)환급신청액

※ 작성순서 :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1,266,020 원

환급신청 내역

(단위:원) 선택수정 선택삭제 추가하기

	소득의 종류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소득지급액	1 결정세액	2 기납부세액계 기납부[주(현)] 기납부[종(전)]	3 차감세액 4 분납금액 5 조정환급세액	6 환급신청액
☐	근로소득	2026-02 2026-02	A04	5	251,400,000	11,049,940	12,315,960 11,815,960 500,000	-1,266,020 0 0	1,266,020

환급신청 합계

(단위:원)

인원	소득지급액	1 결정세액	2 기납부세액 계	기납부세액[주(현)]
5	251,400,000	11,049,940	12,315,960	11,815,960
기납부세액[종(전)]	3 차감세액	4 분납금액	5 조정환급세액	6 환급신청액
500,000	-1,266,020	0	0	1,266,020

(12)전월 미환급세액

0 원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1,266,020 원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환급세액조정 - ⑫전월미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환급신청서 부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메뉴얼 내려받기 >

※ 작성순서 :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21)환급신청액 1,566,020 원

● 환급신청 내역 (단위:원) 선택수정 선택삭제 추가하기

☐	소득의 종류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소득지급액	① 결정세액	② 기납부세액계 기납부[주(현)] 기납부[종(전)]	③ 차감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환급세액	⑥ 환급신청액
☐	근로소득	2026-02 2026-02	A04	5	251,400,000	11,049,940	12,315,960 11,815,960 500,000	-1,266,020 0 0	1,266,020
☐	근로소득	2026-01 2026-01	A02	1	2,016,020	500,000	800,000 800,000 0	-300,000 0 0	300,000

● 환급신청 합계 (단위:원)

인원	소득지급액	① 결정세액	② 기납부세액 계	기납부세액[주(현)]
6	253,416,020	11,549,940	13,115,960	12,615,960
기납부세액[종(전)]	③ 차감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환급세액	⑥ 환급신청액
500,000	-1,566,020	0	0	1,566,020

(12)전월 미환급세액 300,000 원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1,566,020 원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 [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환급세액조정 - ⑫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06. 기납부세액명세서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의 기납부한 세액을 귀속년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작성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이 발생한 소득자들을 개인별, 소득별, 근무지별로 각각 작성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의 징수세액 ① 소득세등(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과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등(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에 차이 나는 사유를 선택 및 작성

기납부세액 명세서

기납부세액 명세서 매뉴얼 내려받기

한급 신청시 기납부세액 (주(전), 종(전))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단위:원)

선택수정

선택삭제

추가하기

기납부세액 일괄조회

☐	소득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① 징수세액 소득세 등	② 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가산세
☐	근로소득	2025-01	2025-01	A01	57	23,510,000	11,815,960	0	0
		인원		총지급액		① 징수세액 소득세 등	② 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가산세	
		57		23,510,000		11,815,960	0	0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단위:원)

선택수정

선택삭제

추가하기

기납부세액 일괄등록

☐	소득구분	소득자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전)근무지- ③ 소득세 등 주(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	종(전)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근무지명	종(전)근무지 소득세 등 종(전)근무지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계 농어촌특별세 계
☐	근로소득	800101-***** 테***	11,815,960 0		0 0	11,815,960 0
		주(전)근무지- ③ 소득세 등	종(전)근무지 소득세 등	소득세 등 계		
		11,815,960	0	11,815,960		
		주(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	종(전)근무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		
		0	0	0		

※ 기납부세액 일괄등록 사용 방법 및 일괄등록 양식은 자료실 403번 게시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일괄등록을 이용하실 경우 기납부세액 현황은 50건 이상 불러올 수 없습니다.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단위:원)

① 소득세 등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③ - ①)
11,815,960	11,815,960	0

농어촌특별세

(단위:원)

② 농어촌특별세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④ - ②)
0	0	0

자유선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포함

전입자

전출자

합병분할

기타

⑤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며,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아래 자유내용을 입력하세요.

자유내용

내용을 입력하세요

⑥ 특수문자 %*#@ 등 입력불가 합니다. 최대 한글 750자(1500bytes)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0 / 1500

이전

작성완료

1년간 원천징수
했던 내역들을
상세하게 작성

[기납부세액명세서 메인 화면]

303

○ 07.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환급신청시 전월 미환급세액 내역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
- 환급신청시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미환급세액이 최초에 발생한 이후의 환급금 발생 내역 및 조정사항을 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별로 각각 작성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의 금액과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의 ⑩차월이월환급세액은 동일해야 함.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메뉴얼 내려받기

(12)전월 미환급세액

300,000 원

최초 미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서의 내용을 작성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귀속년월

지급년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 환급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②)

2026-01

2026-01

매월

근로소득

300,000

0

300,000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합계(① - ②)

300,000 원

환급세액 조정 현황

전월미환급세액

③ 전월미환급세액 중 기환급세액

④ 전월미환급세액 중 차감잔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2026-01

2026-01

0

0

300,000

300,000

0

300,000

이전

작성완료

※ 현재 작성중인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과 마지막 행의 <⑩차월이월환급세액>은 같아야 합니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메인 화면]

304

- ④ 모든 내용 입력 후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작성 후에 납부(환급신청)할 세액 화면의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의 오류여부를 검사함. 오류가 있을 경우 팝업창에 정정해야 할 오류항목이 안내되므로, 안내에 따라 정정해주시기 바람
- 정상 신고서일 경우, 팝업창이 아닌 신고내용 요약 화면이 나오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람. (귀속연월 2026-02, 지급연월 2026-02, 신고구분의 '환급신청', 환급신청액 '1,566,020', 예입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다침완선 공어용영신우감도님의 납부할 세액

0 원

환급신청한 세액

1,566,020 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우체국 1234567890

귀속연월	2026-02	지급연월	2026-02
제출연월	2026-03	신고구분	정기신고
원천징수의무구분	매월	환급신청여부	여

납부·환급세액

· 소득세 납부세액 : 0 원

·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 0 원

· 차월이월 환급세액 : 1,566,020 원

· 환급신청액 : 1,566,020 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정상 신고서 제출 시 뜨는 신고내용 요약 화면]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305

☉ 원천세 신고서 전송시 유의사항

- 같은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번 작성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접수자료로 인정(귀속 또는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접수)
 - 예) 귀속 2026년 1월, 지급 2026년 2월의 신고서(2026년 3월 제출)
 - ⇒ 3월4일 1차 전송, 3월7일 2차 전송, 3월10일 3차 전송시 3차 전송분 인정
 - 귀속 2026년 2월, 지급 2026년 2월의 신고서(2026년 3월 제출)
 - ⇒ 3월4일 1차 전송, 3월10일 2차 전송시 2차 전송분 인정
 - ☞ 2026년 3월 제출한 신고서는 귀속1월 지급2월로 전송한 1건, 귀속2월 지급2월 전송한 1건으로 총 2건임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제출한 신고서 1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으로 추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⑤ 정상적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면 제출 결과를 알려주는 화면이 보여짐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신고내역 확인하기], [납부서 출력하기] 등을 클릭하여 신고결과를 확인하고 접수증과 납부서를 인쇄

홈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원천세 신고

신고서 미리보기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삭제내역 조회

원천세 2026년 02월 지급 정기 신고서 제출 2025년 11월 18일 17시 58분에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하기

⚠ 꼭 확인하세요!

-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종빙서류 제출
납부기한 연장신청

신고서(접수증) 출력하기
신고내역 확인하기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testest2 사용자명: 다짐한선 영어용량신우값도

접수번호: 101-2025-2-000001526364 접수일시: 2025-11-18 17:58:56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역

상호(성명)	다짐한선 영어용량신우값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101-8
신고서종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원서류	3종	신고구분	장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텍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상세내역 (단위: 원)

매월/반기	각월	총지급액	279,900,000
귀속연월	2025년 02월	소득세 등 납부세액	0
지급연월	2025년 02월	영어용량별세 납부세액	0
제출연월	2025년 03월	자월이월환급세액	1,566,020
환급신청여부	예	환급신청금액	1,566,020

※ (종료) 접수종류가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을 일치하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일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여도 **최종 접수한 신고서만 유효** 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고내역 조회에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를 인쇄 가능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조회시 유의사항

조회조건

· 신고일자: 2025-11-01 ~ 2025-11-18 ☐ 당일 ☒ 1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3년 ☐ 5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정보 공개여부: ☒ 예 ☐ 부 정보 공개 대상: ① 신고내역의 상호(성명) 항목 ② 접수증의 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항목

총 3 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번호)	접수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삭제 요청
☐	2025년2월	원천징수...	정기(확정)	정기신고	다짐한선...	101-8	인터넷...	2025-11-18	101-2025-2-...	접수서류 4종	보기	보기	testte...		신고여부	-	이동
☐	2025년10월	원천징수...	정기(확정)	정기신고	다짐한선...	101-8	인터넷...	2025-11-07	101-2025-2-...	접수서류 1종	보기	보기	testte...		신고여부	N	이동
☐	2025년2월	원천징수...	정기(확정)	수정신고	다짐한선...	101-8	인터넷...	2025-11-05	101-2025-2-...	접수서류 2종	보기		testte...			-	이동

< 이전 1 다음 >

- 신고내역 조회의 신고서 목록 중 지방소득세 란의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원천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위택스 이동 전 원천세 납부서를 우선 출력)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부서] 팝업창에서 각 세목의 납부서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납부서의 [출력] 버튼이 없는 상태로 조회됨

납부서 목록

제출내역

주인세 납부영식 다운받기 납부서 일괄출력

세목	원천세	사업자(주인)등록번호	101-8
접수일시	2025-11-18 17:58:56	접수번호	101-2025-2-600001525354

첨부서류 : 총 2 건

☐	신고서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과세기간	소득구분	납부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기(확정)	정기신고	2026년2월	근로소득세(갑)	출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기(확정)	정기신고	2026년2월	기타소득세	출력

- [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이 필요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번호로 [62]를 검색해보시거나, 또는 제목+내용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라고 검색하신 후 다운 받을 수 있음

자료실

업무구분: -전체- 제목+내용 영수필

번호	제목	변경일	첨부파일	조회수
62	[서식](원천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2015-05-27	0	44225

1 총1건(1/1)

국세청 ·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 · 취업 후 학자금상환 서비스 · 위택스 · 국민건강보험 · 공익신고안내 · 납세자권익 24 · 손말이음센터(청각장애인용) 107

- 신고내역 조회의 신고서 목록 중, 인쇄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나오는 팝업창에서 해당 신고서를 서식형태로 인쇄

원천세 신고서 보기

* 원천세 신고서 미리보기 하신 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로 표시합니다.

※ 일괄출력하려면 [일괄출력] 버튼 클릭 후 아래의 프린트()를 클릭하세요.

일괄출력

신고서 목록

전체선택

선택해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가납부세액 명세서

1

<

>

125%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 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① 신고구분

② 위속연월

2025년 00월

③ 지급연월

2025년 00월

④ 지급연월

2025년 00월

⑤ 지급연월

2025년 00월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101-00

대표자(성명)

한***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로구****

전화번호

010-1111-****

전자우편주소

nt***@ntu.net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속자

소속구분

코드

소속지급

원천징수명세

납부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액

⑦ 동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동어촌 특별세

간이세액

A01

6

18,000,000

994,800

중도환사

A02

노동공로

A03

합계

A04

6

181,400,000

-2,280,520

총보상금

A05

노동공로

A06

가급계

A10

10

279,400,000

-1,286,020

연월계

A21

크 외

A22

가급계

A20

하월계

A25

연월계

A26

가급계

A30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309

VII

ICL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01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가.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란?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던 상환금명세서(채무자별 원천공제액이 기재된 명세서)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ICL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원천공제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중 의무상환액이 있는 채무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채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

나.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를 위한 ICL홈페이지 가입방법 및 이용시간

1) 가입방법

공동·금융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가입 가능

2) 이용시간

제출기간내 평일 09:00~23:00(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이용불가)

다.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방법

1) 로그인 및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방식 선택

① 로그인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②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경로

[원천공제 의무자] →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 작성할 상환금명세서 탭을 선택

③ 상환금명세서 신고방식 선택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화면에서 [상환금명세서 작성]이나 [상환금명세서 변환] 탭을 선택하여 상환금명세서를 작성

2) 직접작성신고방식

원천공제 의무자가 상환금명세서 서식과 유사한 화면에서 직접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전송)하는 방식

①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 원천공제 대상의 [지급연월]을 확인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의무자 기본사항 확인

㉡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화면으로 이동

㉢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통지된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명단 및 금액을 불러온 후 추가·미공제 사유를 확인하고 채무자별로 원천공제일(급여 지급일 등)을 입력 후 저장

② 오류검증

[오류검증]을 클릭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에서 수정 후 다시 오류검증 완료

③ 상환금명세서 제출

[오류검증] 완료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환금명세서 제출]을 클릭하여 작성한 상환금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전송)

④ 상환금명세서 접수증 확인

상환금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상환금명세서 접수증]이 자동팝업으로 화면에 보임

3) 변환제출방식

원천공제 의무자가 회계(자체) 프로그램에서 상환금명세서 파일을 작성한 후 ICL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제공하는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오류검증 후 제출(전송)하는 방식

① 전자파일 변환

사용자가 회계(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오류검증(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진행

② 검증결과 조회

오류검증 후 파일의 형식검증오류, 내용검증오류, 정상자료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③ 신고서 전송하기

검증결과가 정상인 경우 [신고서 전송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상환금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전송)

④ 상환금명세서 접수증 확인

상환금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상환금명세서 접수증]이 자동팝업으로 화면에 보임

4) 제출결과 확인

[상환금명세서 내역조회]의 제출내역 목록에서 '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한 상환금명세서의 제출내역(인원, 금액)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ICL홈페이지를 이용한 상환금명세서 제출 방법

- ①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①)]하고 [원천공제의무자(②)]를 선택하고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③)]를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ICL home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Top navigation bar: MY ICL, 로그인 (①), 회원가입, 홈페이지이용안내, 자료제출시스템
- Search bar: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 Main menu: 대출자 (②), 원천공제의무자 (selected), 세무대리인, 장기미상환자, 민원신청, 알림·소식, 제도안내
- Left sidebar (under 원천공제의무자):
 - 조회: 통지내역 조회, 고지내역 조회, 고지목록, 유예신청내역 목록, 민원처리결과 조회, 납부내역 조회, 송달내역 조회, 납부할 계좌 조회
 - 신고 (③):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상환금 납부계좌 조회 및 변경
 - 납부: 원천공제분 납부, 고지·제출분 납부
 - 신청: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신청
 - 이용안내

- ②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화면에서 [상환금명세서 작성(④)]이나 [상환금명세서 변환(⑤)] 탭을 선택하여 상환금명세서 작성

The screenshot shows the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
- Sub-header: 상환금명세서의 기본사항(상환금명세서(갑) 서식의 기본정보에 해당)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Navigation tabs:
 - ④ 상환금명세서 작성 (selected)
 - ⑤ 상환금명세서 변환
 - 상환금명세서 내역조회
- Buttons:
 - 전일 신고납부 확인
 -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따라하기
 - 상환금명세서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 상환금명세서 민원서식 파일 다운로드
- Instructions:
 - 상환금명세서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연월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상환금명세서를 불러오거나 의무가 기본사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천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 Form fields:
 - 지급연월: 2025-10
 - 사업자등록번호: 999 - 12 - 13614
 - 검색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 [직접작성신고방식]의 상환금명세서 제출 순서

- ① [1Step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에서 급여의 [지급연월(①)]을 확인 후 [검색(②)]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공제 의무자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③)]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화면으로 이동

① 지급연월 2025-10 사업자등록번호 999-12-13614 ② 검색

인터넷(전자)연원 신청하기

1 STEP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2 STEP 오류검증 3 STEP 상환금명세서 제출 4 STEP 결수증 확인

• 의무자 기본사항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

지급연월	2025-10	신고연월	2025-11
신고구분	경기	사업자등록번호	999-12-13614
법인명 (상호)	(주)올림픽상사	대표자명 (성명)	전**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서울시 *** ** *		
사업장전화번호	02-11-****		
휴대전화번호	선택 [] - [] - []		
전자우편주소	te*****@test.com		

• 원금계좌번호

원금계좌기관 선택 [] 원금계좌번호 []

③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미리보기] [오류검증]

- ② [대상자 불러오기(④)]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 명단 및 금액을 불러온 후 추가·미공제 사유를 확인하고, 채무자별로 [원천공제일(⑤)]을 입력 후 [저장(⑥)]을 클릭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 원천공제는 귀속월이 아니라 지급월 기준이며, 급여 자체의 귀속월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때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일은 직전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날(급여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 7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가 6월 귀속이라 하더라도 7월 원천공제분으로 원천공제하여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원천공제일 7월 5일)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각 항목을 더블클릭하시면 정렬됩니다.
- 대상자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해당 대상자가 하단의 목록에 보여집니다.

④ 대상자 불러오기 [대상자 추가 +] [대상자 삭제 -]

찾기 성명 [] 검색

원천공제일 [] 적용

	소속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원천공제 통지금액(원)	원천공제 금액(원)	추가·미공제사유	원천공제일
					199,560		
☐	14 - 근로소득	950105-*****	서현가	169,560	169,560	00 - 해당없음 ⑤	[]
☐	14 - 근로소득	000617-*****	이현가	30,000	30,000	00 - 해당없음	[]

상환금명세서 내려받기 초

[창달기] ⑥ [저장]

③ [2Step 오류검증]에서 [오류검증(7)]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검증 완료 후 [확인(8)]을 클릭



④ [3Step 상환금명세서 제출]에서 제출할 상환금명세서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환금명세서 제출(9)]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 ⑤ 상환금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서 자동 팝업으로 보이며 [인쇄(⑩)] 버튼 클릭 시 접수증 인쇄가 가능

상환금명세서 접수증

- 접수내용

접수번호	HCL-2025-320-2-00000019	접수일시	2025-10-31 10:37:28
신고인명	(주)홍길동상사		
접수결과	완료		
- 신고내용

세식명	상환금명세서		
제출연월	2025-10	신고연월	2025-11
법인명(상호)	(주)홍길동상사	사업자등록번호	999-12-13614
원천징제 인원(명)	2	원천징제 금액(원)	199,560
- 원천징제금액 납부관련내용

은행명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9206003357816
납부할 금액(원)	199,560	납부기한	2025-11-10

• 전자신고 시 상환금명세서에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조회된 원천징제 자료는 작성변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원천징제피무자가 직접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⑩

닫기 인쇄

▶ [변환제출방식]의 상환금명세서 제출 순서

- ① [1Step 검증]에서 [추가(①)] 버튼을 클릭하여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 선택한 후 [검증하기(②)]를 클릭하여 정상 여부 확인

상환금명세서 작성 상환금명세서 변환 상환금명세서 내역조회

상환금명세서 변환 관련 파일 다운로드 안내

- 신청기간이 경과되거나, 상환금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송(접수)되지 않습니다.
- 상환금명세서 신청서 변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보안 정책 강화에 따라 변환제출 시 엑셀파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환금명세서 작성 또는 상환금명세서 변환파일경의서 형식에 텍스트파일을 암호화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증 > 전송 > 접수종발급

- 파일선택
 -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는 변환 파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파일명	① 추가	파일크기(Byte)	파일건수(건)
-----	------	------------	---------

② 검증하기

② [2Step 전송]에서 검증결과가 정상인 경우 [신고서 전송하기(③)]를 클릭하여 제출

• 검증결과

- 신고상세 내용을 조회하려면 신고서 전송 후 조회하고자 하는 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더블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자료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일련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지급연월	신고연월	원천공계통지내역		원천공계내역		오류여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	111-11-*****	홍길동상사	2025-07	2025-08	2	724,680	2	724,680	N

• 오류명세

일련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지급연월	신고연월	오류내역	오류발생일자
------	----------	---------	------	------	------	--------

전체 : 1 건 / 정상 : 1 건 / 오류 : 0 건

정상명세출력 > 오류명세출력 >

신청서 전송하기를 클릭한 후 접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서 전송하기

③ 상환금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서 자동 팝업으로 보이며 [출력(④)] 버튼 클릭 시 접수증 출력이 가능

상환금명세서 신청 접수증

상환금명세서 신청 접수증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ID	W*****	법인명(상호)	홍길동상사
접수건수	1	접수일시	2025-08-08 10:32:48

• 상환금명세서 일괄신청명세

번호	접수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지급연월	원천공계내역인원	원천공계내역금액
1	ICL-2025-320-2-000000004	111-11-*****	홍길동상사	2025-07	2	724,680

• 주의: 접수증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프로그램 설치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설치하신 후 상환금명세서를 다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고기간 내에 다시 신고(신고내용의 변경 유무에 상관없음)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닫기 ④ 출력

02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가. 원천공제금액 납부 이용시간

제출기간내 평일 09:00~21:00(토요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이용불가)

나.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1) 로그인 및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선택

① 로그인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②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경로

[원천공제징수자] → [원천공제분 납부] → 납부 방법 선택

③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선택

[원천공제분 납부]화면에서 [전자납부(CMS)]나 [가상계좌]를 선택하여 납부

2) 전자납부(CMS) 방법

전자납부(CMS)를 선택한 경우에만 [상환하기] 버튼이 생성되며,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국장학재단의 [납부신청] 화면이 자동 팝업으로 보이고 납부할 계좌를 선택하여 납부신청

3) 가상계좌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선택하면 가상계좌 정보가 보이며, [가상계좌번호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계좌번호를 신규 발급하여 납부할 수 있음

>>> ICL홈페이지를 이용한 원천공제금액 납부 방법

- ①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①)]하고 [원천공제의무자(②)]를 선택하고 [원천공제분 납부(③)]를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ICL home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Top navigation bar: MY ICL, 로그인 (①), 회원가입, 홈페이지이용안내, 자료제출시스템
- Left sidebar: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자 (②), 원천공제의무자 (selected), 세무대리인, 장기미상환자, 민원신청, 알림·소식, 제도안내
- Main content area:
 - 조회: 통지내역 조회, 고지내역 조회, 고지목록, 유예신청내역 목록, 민원처리결과 조회, 납부내역 조회, 송달내역 조회, 납부할 계좌 조회
 - 신고: 상환금명세서 신고 및 내역조회, 상환금 납부계좌 조회 및 변경
 - 납부 (③): 원천공제분 납부 (selected), 고지·체납분 납부
 - 신청: 상환금명세서 알리기 신청
 - 이용안내

- ② [원천공제분 납부] 화면에서 [사업자번호(④)]를 선택하여 [검색(⑤)]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 공제내역 목록 및 상세내역 등이 조회되고, [납부할 금액(⑥)]을 수정하여 입력할 수도 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원천공제분 납부' screen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원천공제분 납부
- Text: 원천공제분에 한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Search bar:
 - 사업자등록번호 (④): 999-12-
 - 상호: (주)홍길동상사
 - 검색 (⑤)
- 원천공제내역 목록:
 - 납부할 금액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 Table:

선택	지급년월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	2025-07	2025-08-10	141,920원
- 원천공제 상세내역:

사업자등록번호	999-12-	상호	(주)홍길동상사
계출년월	2025-08	지급년월	2025-07
납부기한	2025-08-11		
원천공제금액	141,920원		
납부할 금액	0원		
납부대상금액	141,920원		
납부할 금액 (⑥)	141,920 원		

③ [원천공제분 납부] 화면에서 [전자납부(CMS)(⑦)]나 [가상계좌(⑧)]를 선택하여 납부

• 원천공제 명세

소득구분	인원	원천공제 금액
계	2	141,920원
근로소득	2	141,920원
사업소득	0	0원
연금소득	0	0원
퇴직소득	0	0원

• 납부방법 선택

-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는 평일 09:00~21:0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번호 변경하기 서비스는 평일 09:00~23:0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⑦ 전자납부(CMS) ⑧ 가상계좌

상환하기

▶ [전자납부(CMS)] 방법

① [원천공제분 납부]에서 [전자납부(CMS)(①)] 버튼을 선택하면 [상환하기(②)] 버튼이 생성되고
[상환하기(②)] 버튼을 클릭하면 한국장학재단의 [납부신청] 화면이 자동 팝업으로 보임

• 원천공제 명세

소득구분	인원	원천공제 금액
계	2	141,920원
근로소득	2	141,920원
사업소득	0	0원
연금소득	0	0원
퇴직소득	0	0원

• 납부방법 선택

-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는 평일 09:00~21:0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번호 변경하기 서비스는 평일 09:00~23:00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① ① 전자납부(CMS) 가상계좌

② 상환하기

- ② 이미 등록한 계좌가 있는 경우 [납부할 계좌(③)]를 선택, 등록된 계좌가 없거나 새로운 계좌를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계좌등록(④)]을 선택하여 등록 후 [납부신청(⑤)]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방법

- ① [원천공제분 납부]에서 [가상계좌(①)] 버튼을 선택하면 원천공제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 정보(②)]가 조회되고, [가상계좌번호 변경하기(③)]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계좌번호를 신규 발급하여 납부도 가능

03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가.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서비스란?

원천공제 의무자(회사)가 '상환금명세서 알리미'를 신청하면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기한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기한 3일 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

나.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로그인

ICL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한 후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②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신청방법 경로

[원천공제 의무자] → [신청] →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신청]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ICL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국세청' (Korea Revenue Service) and '원천징수 후 학자금 상환' (Repayment of Education Funds after Source Deduction). Below this, there's a menu with tabs: '대출자' (Lender), '원천공제 의무자' (Source Deduction Obligor), '세무대리인' (Tax Agent), '장기미상환자' (Long-term Non-repayer), '민원신청' (Public Inquiry), '알림·소식' (Notification/News), and '제도안내' (System Guide). The '원천공제 의무자' tab is selected. Under this tab, there are four main sections: '조회' (Inquiry), '신고' (Reporting), '납부' (Payment), and '신청' (Apply). The '신청'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it contains the option '상환금명세서 알리미 신청' (Apply for Repayment Statement Reminder), which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신청' section, there's a link for '이용안내' (User Guide).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I

사업소득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0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소법 §144의2)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②,③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③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정하고 종된 사업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서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지된 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02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방문판매수당(②)·음료품판매수당(③)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소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소칙 별지 제25호의2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 연말정산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

0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text{사업소득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 \times \text{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text{소득률} = (1 - \text{단순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0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해당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명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소칙 별지 37호 서식(1))를 사용한다.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06 납부할 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참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계산 절차〉

구 분	해당 내역	계산 사례
사업소득 수입금액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가 연간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방문판매원 : 연간 사업소득 6천 5백만원
사업소득금액	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사업소득금액 = 1,875만원 : 6천5백만원 ×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5%, 4천만원 초과분 35%) = 1천만원 + 875만원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공제 = 660만원 : 기본공제 4명(본인, 배우자, 자녀 2명) = 600만원 연금보험료 60만원 = 6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48만원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20만원 (120만원 × 40% = 48만원)
종합소득과세표준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1,167만원
산출세액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700,200원 : 1,167만원 × 6%(기본세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7만원)	세액공제 = 620,000원 : 자녀세액공제 550,000원 표준세액공제 70,000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80,200원
차감납부할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80,200원 기납부세액 = 1,500,000원 차감납부할세액 = △1,419,800원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0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의 경우 당해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음료품 판매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법 제73조(과세 표준확정 신고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08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3)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로 작성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한다.

주의!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과 소칙 별지 제23호 서식(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제출할 경우 소득이 이중으로 집계되어 자료 소명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0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박영영(750701-1*****)은 방문판매원으로 배우자(김선이, 연간 소득금액 없음), 자녀 2명(박서영 11세, 박현영 10세)과 함께 살고 있음

- ① 사업소득 수입금액 : 70,000,000원
 - OO(주)로부터 2025년 방문판매수당 7천만원 발생
(OO(주)가 7천만원에 대해 2,100,000원을 원천징수 후 수당 지급)
* 방문판매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이 없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② 사업소득금액 : 20,500,000원
 $40,000\text{천원} \times (1 - 0.75) + 30,000\text{천원} \times (1 - 0.65) = 20,500\text{천원}$
- ③ 종합소득공제 : 6,000,000원
 - 기본공제 4명(본인, 배우자, 자녀 2명) 6,000천원
- ④ 그 밖의 소득공제 : 720,000원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0천원(개인연금저축 납입액 1,800천원 $\times$ 40%)
- ⑤ 과세표준 : 13,780,000원
- ⑥ 산출세액 : 826,800원(과세표준 14,000천원 이하, 과세표준 $\times$ 6%)
- ⑦ 세액공제 : 620,000원
 - 자녀세액공제(자녀 2명) 55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⑧ 결정세액 : 206,800원
- ⑨ 기납부세액 : 2,100,000원
- ⑩ 차감납부할 세액 : △1,893,200원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세칙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안 2026. .>

관리번호 ① 귀속연도 2025년		[O]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O]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정수 의무자 ② 법인명(상호) : OO(주)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 이상사 ⑥ 소재지(주소) : 서울 종로구 **길 123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사업자등록번호		⑦ 상호 ⑨ 사업장 소재지 : 서울 종로구 000길 123 ⑩ 성명 : 박영영 ⑪ 주민등록번호 : 750701-1***** ⑫ 주소 : 서울 종로구 **길 456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분 ⑭ 법인명 (상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발생기간(연·월·일) ⑰ 지급액(수입금액)		주(현) 2025. 1. 1. ~ 2025. 12. 31. 70,000,000		중(전)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계 (124)		70,000,000 70,000,000 70,000,000			
소득 금액 ⑱ 사업별 ⑲ 수입금액 (⑰) ⑲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교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계		22.4% 31.4%	
보험모집 70,000,000 22.4% 31.4% 10,000,000 10,500,000 20,500,000		방문판매 70,000,000 25.0% 35.0%		음료배달 70,000,000 20.0% 28.0%	
(124)합계 70,000,000					
② 사업소득금액(㉒) 20,500,000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 ③ 본인 1,500,000		④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㉔ 결정세액 206,800 20,680 227,480	
적 ④ 배우자 1,500,000		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㉕ 중(전) 근무지	
공 ⑤ 부양가족 (2명) 3,000,000		⑥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㉖ 중(현) 근무지 2,100,000 210,000 2,310,000	
제 ⑥ 경로우대 (명)		⑦ 종합소득 과세표준 13,780,000		㉗ 차감 납부할 세액 △1,893,200 △189,320 △2,082,520	
⑦ 장애인 (명)		⑧ 산출세액 826,800			
⑧ 부녀자		⑨ 혼인세액공제			
⑨ 한부모가족		⑩ 공제대상자녀 (2명) 550,000			
⑩ 연금보험료공제		⑪ 자녀 세액 공제			
⑪ 연금보좌세액공제		⑫ 출산·입양자 (명)			
⑫ 종합소득공제 계 6,000,000		⑬ 연금계좌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720,000		⑭ 정치자금		2026년 3월 일	
⑭ 기부금 세액공제		⑮ 고령자특별부금		정수(보고)의무자 OO(주) (서명 또는 인)	
⑮ 우리스자조합		⑯ 특례기부금		종로 세무서장 귀하	
⑯ 일반기부금		⑰ 우리사주조합			
⑰ 표준세액공제 70,000		⑱ 공제대상자녀 (2명) 550,000			

㉔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김선이	7601101-*****				
4 박서영	1401101-*****				
4 박현영	1501101-*****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II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공적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이다.

01 연금소득의 범위(소법 §20의3)

가. 연금소득 종류

1)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연말정산 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1.1.이후 발생하는(지급받기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종합합산 과세대상)

2) 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연말정산 제외)

- 소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1.1. 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포함)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소령 §40)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기준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노령연금

$$\text{과세기준금액} = \frac{\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text{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일시금 반납으로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 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text{과세기준금액} = \frac{\text{과세기간 연금수령액} \times \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월수}}$$

- 과세기준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 퇴직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소득인 경우만 해당)을 반납하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2) 사적연금소득의 계산(소령 §40의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액으로 한다.

① 연금수령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한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다만,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연금수령 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연금수령으로 봄
- * 한도 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02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03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 : 연금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04 연금소득금액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소법 §20의3 ③)

총 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소법 §47의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05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나 분리과세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0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소법 §143의2)

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3)에 따라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를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다만, 당해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 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①, ②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후 수령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③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세율의 70%(60%*)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적용

나. 연말정산(소법 §143의4)

1)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 연금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인터넷 제출 방법〉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기관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시 퇴거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입양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적연금소득(연말정산 제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0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신청받은 경우 한정)
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나. 세액 납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연금계좌 A48)란에 적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 서식(5)]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6)]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8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가. 연금소득 종합과세(소법 §73 ①, ②, §64의4)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법 §51의4)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인지 또는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공적연금인 경우,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적연금인 경우,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면 동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다면 동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김일일(500101-1*****)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공적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이며 배우자(정아이 510101-2*****, 연간 소득금액 없음)와 함께 살고 있음

- ① 총 연금수령액 : 30,000,000원
 - 매월 250만원의 연금이 발생함
 - 연금 지급 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104,260원)하여 기납부세액은 1,251,120원임

② 연금제외 소득 : 10,600,000원

* 2001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연금 불입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임

③ 총 연금액 : 19,400,000원

총 연금수령액(30,000천원) - 연금제외 소득(10,600천원) - 비과세 연금(없음) = 19,400천원

④ 연금소득공제 : 6,840,000원

총 연금액	공제액(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

⑤ 종합소득공제 : 5,000,000원

- 기본공제(2명) 3,000,000원, 경로우대자추가공제(2명) 2,000,000원

⑥ 과세표준 : 7,560,000원(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⑦ 산출세액 : 453,600원(과세표준 14백만원 이하, 기본세율 6% 적용)

⑧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⑨ 결정세액 : 383,600원

⑩ 차감납부할 세액 : △867,520원

결정세액(383,600원) - 기납부세액(1,251,120원) = △867,520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9.3.20.>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	공무원연금공단				
	② 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소득자	④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⑤ 소재지(주소)	*** ** * ** *				
	⑥ 성명	김일일				
소득자	⑦ 주민등록번호	500101-1*****				
	⑧ 주소	*** ** * ** *				
⑨ 귀속연도		2025.1.1.부터 2025.12.31.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금지급 내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30,000,000		10,600,000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19,400,000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19,400,000		⑯ 종합소득 과세표준(⑮-⑰)		
		6,840,000		7,560,000		
⑰ 연금소득공제		⑱ 산출세액		453,600		
		세액 감면				
		⑲ 「소득세법」				
		⑳ 「조세특례제한법」				
		㉑ 감면세액 계				
⑰ 연금소득금액(⑮ - ⑱)		12,560,000				
종합 소득 공제	기본공제	㉒ 본인	1,500,000	세액 공제	㉓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㉓ 배우자	1,500,000			출산·입양자 (명)
		㉔ 부양가족(명)				
	추가공제	㉕ 경로우대(2명)	2,000,000		㉖ 표준세액공제	
		㉖ 장애인(명)			㉗ 외국납부	
		㉘ 부녀자			㉘ 세액공제 계	70,000
		㉙ 한부모				
	㉚ 소득공제 계		5,000,000			
세액 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㉛ 결정세액	383,600	38,360		421,960	
	㉜ 기납부세액	1,251,120	125,110		1,376,230	
	㉝ 차감징수세액	△867,520	△86,750		△954,270	
㉞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미이	51101011-2234567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6년 2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 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㉞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I

종교인소득이란?

01 개념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02 분류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함



○ 자녀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교육비세액 공제가 가능함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③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② ①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①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②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이 경우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본인 명의 임차차량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③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인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

④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II

종교관련종사자

01 개념

종교관련 종사자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02 구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종교관련 종사자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구분되며 그 업무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업 무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성직자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 참고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관련종사자〉

분류명			설 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종교 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 (24811)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 (24812)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사제, 주교, 신부, 부제)
		승려 (24813)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승려, 스님, 법사)
		교무 (24814)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교무, 원불교)
		그 외 성직자 (218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전교, 대종교, 유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수녀 및 수사 (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수녀, 수사)
		전도사 (24892)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248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포교사,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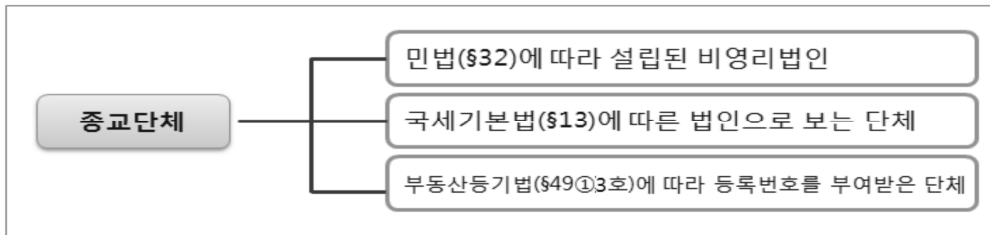
III

종교단체

01 개념

종교단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말함

〈종교단체 범위〉



01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의미(그 소속 단체를 포함)

02 국세기본법(§13)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종교단체 소재지의 세무서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체 승인을 신청(그 소속 단체를 포함)

- | | |
|-----------------|------------------------|
|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정 | ② 소속증명서 |
| ③ 대표자 증명 | ④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

03 부동산등기법(§49①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종교단체를 의미(그 소속 단체를 포함)

IV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0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종교인이 받은금액	총 급여액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좌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 + 월세, 의료비·교육비· 보험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함

* 상시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 신청이 가능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0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 수입금액	총 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20~80%)	근로소득공제(2~70%)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600~2,0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2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혼인(생애 1회, 연 50만원)		○	○
	자녀(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	○
	연금계좌[15%(12%),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
	특별	보험료(12%(장애인전용 15%),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항목별 20%, 30%),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5%, 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5%)	○	○
조특법	고향사랑기부금(금액별 100/110, 15%, 30%)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0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04 연말정산 시기

①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연말정산

②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05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

①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 2025.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제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원에게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②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항목〉

구 분	공제항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참고

06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공제내역	참고페이지
① 인적공제	근로소득 p.95 참조
②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 p.103 참조
③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 p.120 참조
④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 p.124 참조
⑤ 혼인세액공제	근로소득 p.163 참조
⑥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p.164 참조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 p.164 참조
⑧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p.186 참조
⑨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 p.207 참조

*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검토하여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07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

-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음에 유의하여야 함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	3월 10일	3월 10일

- 비과세항목 中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임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아님

08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안 2026. . .>

관리번호

① 귀속연도 2025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국

비거주자1

비거주자2

내국인1

외국인9

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교회	③ 대표자(성명)	김**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123-**-*****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7*****-*****	⑥ 소재지(주소)	서울 강동구 암사동 ***-**			
⑦ 성명	박**		⑧ 주민등록번호	8*****-*****		
⑨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구 ****-**					

종교인 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 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연·월·일)	⑭ 지급액(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소득										
	주(현)				2025.5.6.~2025.12.31.	16,000,000	600,000										
	종(전)	**교회	3	1	2	-	*	*	-	*	*	*	*	*	*	2025.1.1.~2025.5.5.	6,000,000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22,000,000				17,000,000				5,000,000			

⑲ 종교인소득소득금액(⑱)				5,000,000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 공제	⑳ 본인	1,500,000	㉑ 소득공제 등 종합소득 초과액		㉒ 결정세액	50,000	5,000		55,000		
		㉓ 배우자	1,500,000	㉔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000		기납부 세액	㉕종(전) 근무지				
		㉕ 부양가족(1명)		㉖ 산출세액	120,000			㉗주(현) 근무지	31,200	3,120	34,320	
	추가 공제	㉘ 경로우대(명)		㉙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명)	㉚ 차감 납부할 세액	18,800	1,880		20,680		
		㉚ 장애인(명)			출산·임양자(명)							
		㉛ 부녀자		㉜ 연금계좌 세액공제								
		㉝ 한부모가족										
	㉞ 연금보험료공제		㉟ 가납부 세액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2026년 3월 일 정수(보고)의무자 **교회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 귀하						
	㊱ 종합소득공제 계	3,000,000		㊲가납부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㊲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㊳표준세액공제	70,000							
㊳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㊴외국납부세액공제										
㊴창원형 장기저축투자증권공제												

㊵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김**	7*****-*****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방법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 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청출판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㉕ 종합소득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㉚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귀속 연도	2025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	-------	---	----------	--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촌 특별세	⑬ 계
성당	123--*****	서울 종로 종로*가	3	8	12,000,000	3,500,000	2,400,000	0	0	0	0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77	김**	7*****-*****	1	2025	8	12,000,000	3,500,000	9,600,000	2,400,000		0	0	0	0
2															
3															
4															
5															
6															
7															
8															
9															
10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㉕부터 ㉘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 계는 소득자별 ㉑ (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 연간 소득금액 계(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 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 ㉑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㉒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㉓ 소득금액란은 ㉑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안 2026. . .>

(9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거주구분</td> <td style="width: 33%;">거주자1/비거주자2</td> </tr> <tr> <td>거주지국</td> <td>거주지국코드</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1 /외국인9</td> </tr> <tr> <td>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여 1/부 2</td> </tr> <tr> <td>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td> <td>여 1/부 2</td> </tr> <tr> <td>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 <td>여 1/부 2</td> </tr> <tr> <td>국적</td> <td>국적코드</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세대주1, 세대원2</td> </tr> <tr> <td>연말정산 구분</td> <td>계속근로1, 중도퇴사2</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성당 ③ 사업자등록번호 123-**-*****	② 대표자(성 명) 김** ④ 주민등록번호 6****-*****
소득자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⑤ 소재지(주소) ⑥ 성명 이** ⑧ 주소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7****-*****

	구분	주(현)	총(전)	총(전)	⑩-1 납세조합	합계
I 근무 처별 소득 명세	⑨ 근무처명	**성당	**성당			
	⑩ 사업자등록번호	123-**-*****	312-**-*****			
	⑪ 근무기간	25.6.1~25.12.31	25.1.1~25.5.31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여	11,000,000	7,000,000			18,000,000
	⑭ 상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⑬ 국외근로	M0X				
	⑬-1 야간근로수당	O0X				
	⑬-2 보육수당	Q02				
	⑬-3 출산지원금	Q03				
	⑬-4 연구보조비	H0X				
	⑬-5					
	종교활동비		1,250,000	660,000		1,910,000
	⑬-40 비과세식대	P01				
	⑮ 수련보조수당	Y22				
	⑯ 비과세소득 계		1,250,000	660,000		1,910,000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액 명세	구분		㉗ 소득세	㉘ 지방소득세	㉙ 농어촌특별세	
	㉓ 결정세액		11,210	1,120		
	기 납부 세액	㉔ 중(전)근무지(결정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13,000	1,300		
		㉕ 주(현)근무지	18,100	1,810		
	㉖ 납부특례세액					
	㉗ 차감징수세액(㉓-㉔-㉕-㉖)		-19,890	-1,990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26년 3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국세청당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 록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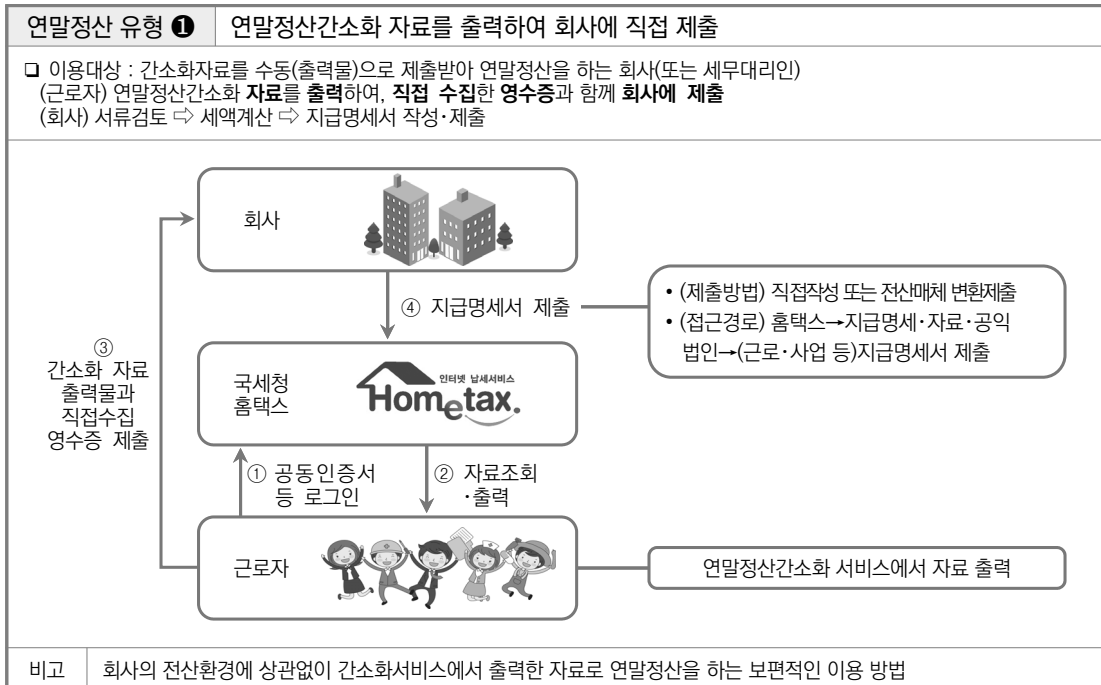
1.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01 연말정산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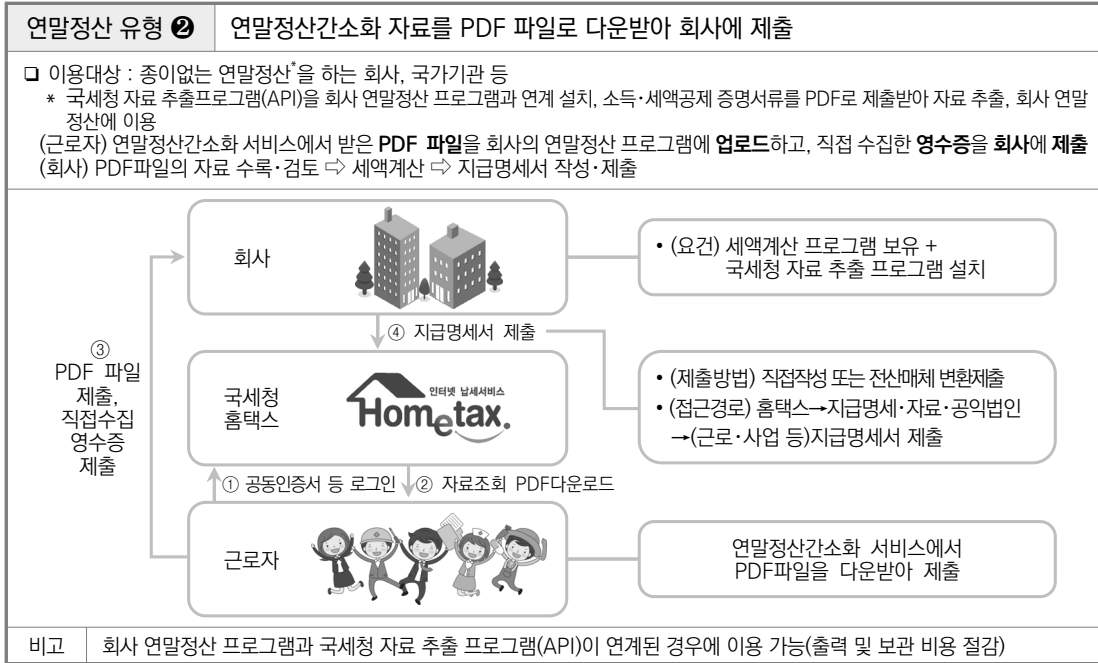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아래의 유형과 자체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설계하고,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등 정보를 안내

- | | |
|---|---------------------|
| (유형 ①) 간소화 자료를 출력(종이) |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 (유형 ②)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 (유형 ③)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 |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 (유형 ④)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 |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 (유형 ⑤) 유형 ④ +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 | → 회사보유 시스템에 의해 연말정산 |
| (유형 ⑥) 유형 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작성) 수행 | |
| ※ (유형 ④·⑤·⑥)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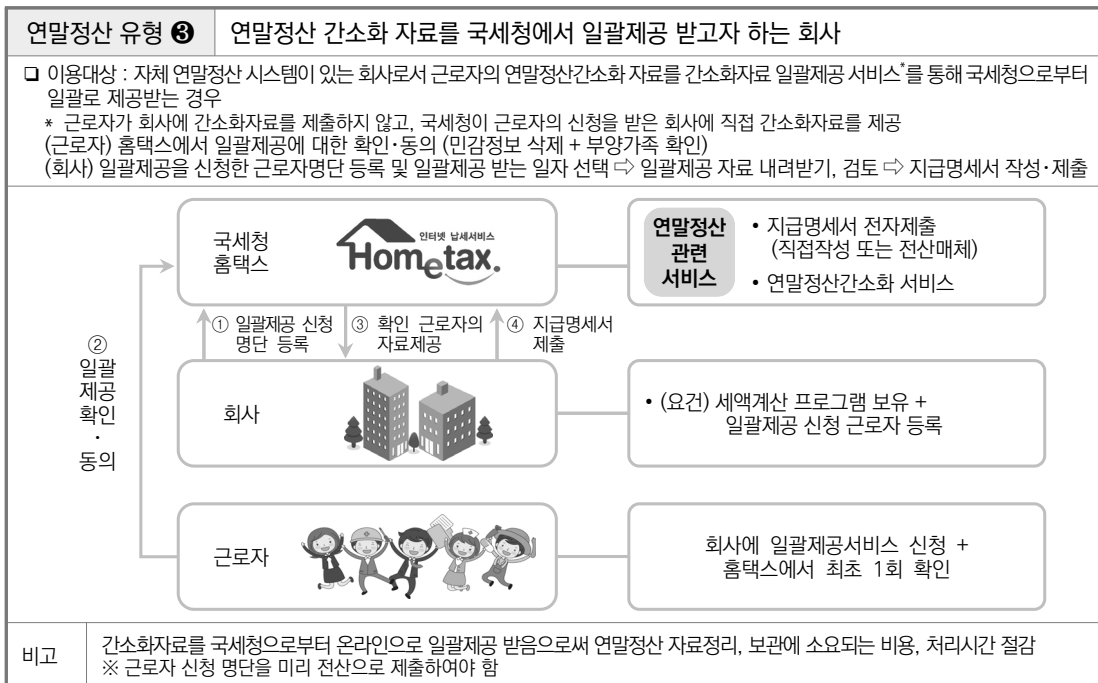
가. 간소화자료를 출력물(종이)로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유형①)



나.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대기업, 공무원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유형②)



다.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유형③)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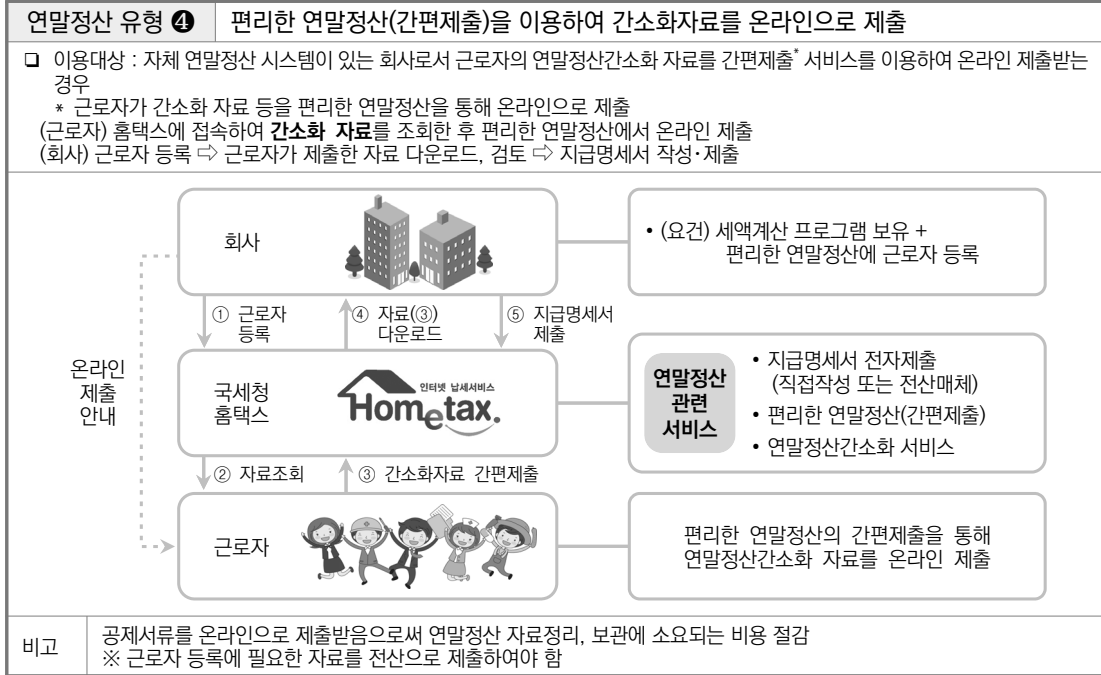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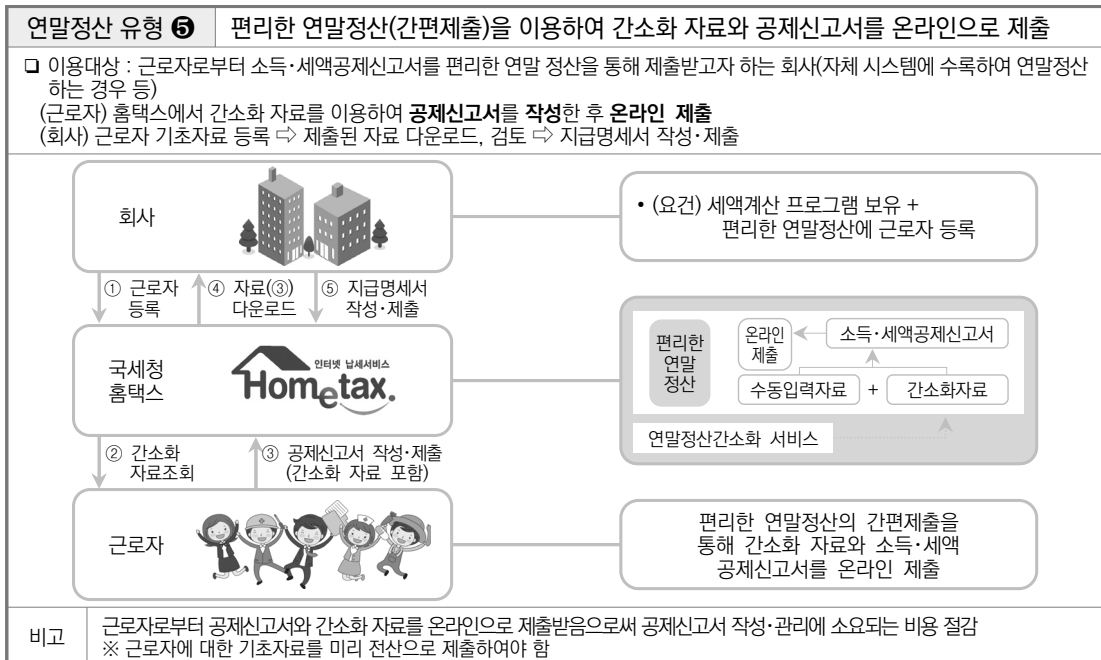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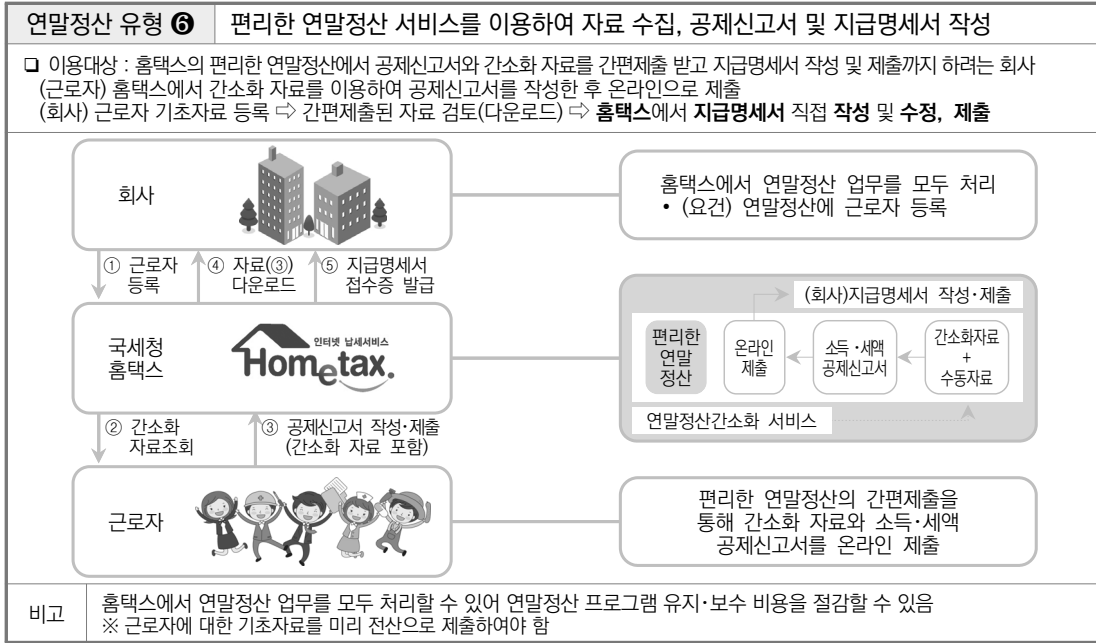
라.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간편제출” 받고자 하는 회사(유형④)



마.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받아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유형⑤)



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자료수집, 세액계산, 지급명세서 작성(유형⑥)



02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근로자가 직접 총급여액(비과세 제외)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용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 메인 화면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의 “세무 업무별 서비스”

나.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증명서류로 사용가능)에 의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 가능(증명서류로 사용불가)

※ 2020년~2025년 및 연도 중 제출된 2026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 조회가 가능하며, 제출된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 '26.8월 수시오픈 이후부터는 '20년 귀속 확인 불가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록

(이용방법)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또는 ②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다. 과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소득·세액공제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1) 신용카드 사용액 조기 제공 및 예상세액 자동계산('25.11월)

- 근로자가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제공
 - 전년도 지급명세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주고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 총급여액, 항목별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예상세액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며, 각 항목별 공제한도액, 절세Tip, 유의사항을 제공
- ※ 2018년부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인 '실효세율' 데이터 함께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2) 맞벌이부부 절세 가이드('26.1월)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손쉽게 시뮬레이션하여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3) 근로자 맞춤형 안내('25.11월)

근로자를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소득 및 세액공제항목*을 개별 안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마.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그동안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 증명서류를 전산에 입력하여 불편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금액을 미리 채워주어(Pre-filled) 편리하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음

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1) 소득·세액공제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수정 가능)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2) 절세 주머니

충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2022~2024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 충급여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본인인증 절차 필요)

4)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

충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한 임의의 값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입력값에 따른 세액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5) 예상세액 계산하기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적용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6) 연말정산 자가체크리스트

주요 소득·세액공제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 통해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적정여부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7)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2020~202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본인 공인 인증서 필요)

8) 자료제공동의 신청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함.

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가능

회사와 근로자 모두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 인증 절차 필요)

10)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11)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

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

* 공제요건을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0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 구간별로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나.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위한 연말정산 분야의 종합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다.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운영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매년 6월, 12월)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라.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제공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25년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 2014.1.1. 이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

(이용방법) 홈택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간편제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사례 및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 원천세 신고 전반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원천세 신고안내

사. 연말정산 신고안내 동영상 제공('25.12월)

신규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해 연말정산 시 꼭 필요한 신고절차, 세법 설명 등 동영상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제공('25.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로 책자파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제공

연말정산관련 주요 공제항목별로 자주묻는 Q&A, 공제Tip, 동영상설명자료, 단계이동형 자가체크리스트 등을 통합 수록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25.12월)

(이용방법) ① pc이용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자주묻는 국세상담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② 모바일이용자 → 국세청 손택스 앱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상담하기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아울러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관련 도움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도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0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 제공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금년에 신규 입사하였거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위해 근무기간을 지정하여 월별로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다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불입)액이 공제되는 항목은 조회기간을 특정하여 조회를 하더라도 연간 지출액을 제공

※ 근로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조기 제공

1~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조기에 수집·제공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 오후 8시까지 PC(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모바일(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추후 별도의 개별 행정지도 예정

라. 2025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19세('06.12.31. 이전 출생)가 넘어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19세 미만 자녀('07.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음

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Q.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 ○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PC 또는 모바일)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2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자로 주택자금 공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3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Q.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소는 가능한가요?
A.4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은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 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5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5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팩스 신청)팩스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온라인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ID/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등)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자동반영하여 작성되나요?
A.6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공제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항목 및 공제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자동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05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음
(유형 ①, ②)

○ 접근경로(홈택스 www.hometax.go.kr)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관리」클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용)공제신고서 작성하기」클릭	③ 「바로가기」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5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유형 ⑤,⑥)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참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일괄작성)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
- 근무처 선택하고 간편채움으로 작성된 부양가족 정보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하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아래의 단계별 작성하기로 진행
- (1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 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 급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택	선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 계산	선택	필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택

- (2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3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4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
 -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2)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 위 절차 중 한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 가능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 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 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하는 절차

- ① 공제신고서 작성여부가 'Y', 기초자료 등록여부가 'Y', 처리상태 '확인 완료',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 또는 '지급명세서 작성 실패'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낼 수 있음
- ②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작성관리화면에서 작성 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지 표시
- ③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할 근로자 자료를 체크
- ④ 「지급명세서 생성」을 클릭하면 선택한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정보(회사 입력정보 포함)가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으로 전송
- ⑤ 전송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여 [홈텍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 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로 이동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 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5) 맞춤형 도움말 제공

- 근로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다양한 유형*의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를 제공
 -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버튼방식), 키워드 연말정산(하이퍼링크),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질문대답형), Q&A 모음집(책자) 등

부록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0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2025년 귀속 기준)

구분	공제항목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기부금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02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홈택스 주소 : 『www.hometax.go.kr』

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클릭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비회원 로그인(인증서)도 가능

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출력하기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나의 메뉴 전체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연말정산 일괄제출

국세청홈택스 HomeTax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나의 홈택스 나의 메뉴 전체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담·불복·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연말정산 일괄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남.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됨.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 의료비 및 기부금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됨

○ 중도입사자(퇴사자) 등 월별 지출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조회

○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됨.



TIP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을 제공함.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납입금액,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03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제출·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회사는 사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 방문해서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함.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가.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다운로드하기

-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 조회방법은 [2.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와 동일하며,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 ※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임의의 7자리로 설정 가능) 설정여부 선택이 가능함.
 -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0000년도자료-(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가능함.

TIP

-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주의할 점
전자문서의 비밀번호 설정여부, 파일명, 형태 등 전자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함.

나. 내려받은 전자문서 활용하기(Paperless 연말정산)

- 근로자는 내려받은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종이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6.소득·세액공제자료 활용 방법] 참조

04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19세 미만(2007.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를 클릭
 -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함.

-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됨.
-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첨부서류 파일업로드),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이용방법 : 나-1)-② 또는 ③, 나-3) 참조)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음.

○ 본인인증 수단 있고 가족관계 확인이 되는 경우

신청 구분	인증수단	신청 절차	승인
모바일 (홈택스 앱)	인증서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 동의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	즉시 처리
	휴대전화	신청정보 입력 후 자료제공 동의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이용	
	신용카드	본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	
	I-PIN	I-PIN(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ID와 비밀번호 이용하여 인증	
온라인(홈택스)			

○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 구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승인
온라인(홈택스)	온라인신청	제공동의를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일정 시간 소요
	팩스신청서 제출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1544-7020)	
모바일 (홈택스 앱)	모바일신청	제공동의를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파일을 업로드(정보제공자만 신청)	
서면 신청	세무서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정보 제공 동의신청서 작성·제출	

1)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① 홈택스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 4. 신청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선택 → 6. 본인 인증하여 신청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 4. [제공 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③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클릭 → 3. 「팩스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5.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여 팩스로 전송(☎1544-7020)

2) 모바일을 이용한 제공동의 신청 방법

제공자가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휴대전화, 인증서)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①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손택스앱 실행하여 로그인 → 1. 전체메뉴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3. [연말정산간소화] → 4.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5. [제공동의 신청] 선택 → 6.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7. 본인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인증서 인증) 선택 → 8. 본인 인증 → 9.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10. [다음] 선택

②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최근 3월 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

손택스앱 실행하여 로그인 → 1. 전체메뉴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3. [연말정산간소화] → 4.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5. [제공동의 신청] 선택 → 6.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7. 본인 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인증서 인증) 선택 → 8. 본인 인증 → 9.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10. [다음] 선택 → 11. [파일제출 신청] 선택 → 12. [첨부] 선택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선택 → 13. [증빙서류 제출] 선택

3)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원서류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세무서방문 신청」 클릭 → 4. [서식다운로드] 클릭

○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진행 상황 조회

팩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제공동의 진행상황(팩스신청, 온라인신청)]를 클릭
- 팩스 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팩스 신청으로 선택하고 접수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음.
※ 팩스 전송의 경우 자료 전송에 소요되는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담당자 조회 가능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하고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음.
- 손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음.

05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홈택스·모바일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선택하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조회 가능, 정상적으로 자료제공동의 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홈택스·모바일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

06 소득·세액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에게 제출.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

나. 서비스 제공시기

’2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음

다. 안경구입비 자료 활용

’20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시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간소화자료 의료비 항목의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안경구입정보」를 제공함.

의료비 내역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창이 열리며, 자료 내용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의료비에 반영됨.

의료비 내역

도움말

전체 테스트개인3 김주완 말홍형 테스트개인10

PDF다운로드 인쇄/첨자받기

○ 의료비 (단위:원) 안경구매정보

✓	환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지출금액
✓	테스트개인3	408-81-93...	(담) 나화...	폐업의료비(...	10,000
✓	테스트개인3	201-81-37...	(맥) 대판...	안경 또는 콘...	50,000
✓	테스트개인3	201-81-37...	(맥) 대판...	보청기 또는 ...	10,000
✓	테스트개인3	201-81-37...	(맥) 대판...	산후조리원 ...	400,000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 꼭 읽어주세요

- 본인과 부양가족이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입니다. (제공동의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란에서 구매자(본인 또는 부양가족)를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일시	구분	카드사용자	구입처	구입금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2024-10-01 16:29:55	현금영수증	테스트개인3	주인형박	30,000	선택하세요. ▾
2024-11-01 18:00:00	현금영수증	테스트개인3	주인형박	110,000	테스트개인3 ▾
2024-12-01 18:00:00	현금영수증	테스트개인3	주인형박	220,000	선택하세요. ▾
2024-12-05 16:29:55	농약약약	테스트개인3	주인형박	40,000	선택하세요. ▾

닫기

등록하기

07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가. 본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 차단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시 본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성인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의 경우 환자 병명, 처방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출받고 있음.

또한, 자료 출력 시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길*****’로 출력)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라도 어느 병원에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음

다.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 인정 및 자료삭제기능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이미 본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음(한 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음)

부록

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①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26.1.10.까지 일괄등록 하여야 함

-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입력 또는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음

[접근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1) 연말정산 일괄제공 화면에서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선택

(2) ① 업무 수행자 등록 ② 비밀번호 설정 ③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일괄제공 동의여부 선택 ④ 일괄제공 받는 일자 1.17. 또는 1.20. 중 선택 후 저장하기

(3) 세가지 제출 방법(직접입력, 엑셀파일,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중에 선택

제출방법 선택 근로자 명단은 **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2025년

* 제출방법

☐ 직접입력 ☐ 엑셀파일

☐ 전년도명단 불러오기

㉓ 직접입력 제출 : 신청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 자료추가하여 제출

제출방법 선택 근로자 명단은 **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2025년

* 제출방법

☒ 직접입력 ☐ 엑셀파일

☐ 전년도명단 불러오기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입력 제출하기 후 제출결과 조회를 눌러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명을 입력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㉔ 엑셀파일 제출 : 엑셀서식에 맞춰 파일 생성 후 자료 업로드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검증 후 제출

제출방법 선택 근로자 명단은 **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2025년

* 제출방법

☐ 직접입력 ☒ 엑셀파일

☐ 전년도명단 불러오기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파일 등록 제출하기 후 제출결과 조회를 눌러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서식 내려받기

파일경로

찾아보기

㉕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로 제출

제출방법 선택 근로자 명단은 **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2025년

* 제출방법

☐ 직접입력 ☐ 엑셀파일

☒ 전년도명단 불러오기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전년도명단 등록 제출하기 후 제출결과 조회를 눌러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제출결과 조회

성명	번호	주민등록번호	오류내용	검증일시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②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근로자는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회사에 일괄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에 대한 사전 삭제 기회 제공을 위해 근로자로부터 직접 신청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임
- 해당 근로자는 '25.12.1.부터 '26.1.15.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절차를 진행
- 최초 1회 신청내역 확인 후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내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접근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일괄제공 동의/취소/조회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된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 자동 안내

(1) 연말정산 일괄제공 화면에서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과 회사 확인 후 동의하는 경우 확인(동의)하기 선택

③ 회사 : 일괄제공 PDF 파일 내려받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26.1.10.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6.1.15.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완료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 일괄제공 현황 → PDF 내려받기

(1) 연말정산 일괄제공 화면에서 (회사용)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일괄제공현황
※ 근로자 확인(동의) : 2024.12.01. ~ 2025.01.15. , 내려받기 : 2025.01.17. ~ 2025.03.10.

등록한 근로자 1 명 작성하기	동의한 근로자 1 명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0 명	동의 후 취소한 근로자 0 명 명단 조회(관리)하기
-------------------------------	-----------------------	---------------------------	---

PDF 내려받기

(2) PDF내려받기 화면에서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하기 선택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는 01.20.~03.11.까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정보

귀속년도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상호(법인명)	테스트사업자(일반과세자1)
------	-------	---------	--------------	---------	----------------

조회하기

(3) 생성된 PDF파일 선택하여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는 01.20.~03.11.까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정보

귀속년도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상호(법인명)	테스트사업자(일반과세자1)
------	-------	---------	--------------	---------	----------------

조회하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파일 목록

파일 이름	파일 크기
0 개, 0 byte	

파일 내려받기

근로자 관리 화면으로 이동

부록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부록

5.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용어	설 명	관련법령
1	주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령 §2
2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소령 §2
3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소법 §1의2
4	공제대상가족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말함	소령 §106
5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소령 §112 조특령 §81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가족수별로 정한 표	소법 §134① 소령 §194
7	근로소득 경정청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둘 다 포함)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기법 §45의2④
8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퇴직시는 지급일 다음달 말일)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함	소법 §143 소칙 별지24(1)
9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상세내역(총급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비과세소득,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 등)을 비치·기록한 서류로 연말정산 시 기초 자료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소령 §196 소칙 별지25(1)
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함 현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동일 서식임	소법 §164 소령 §213 소칙 별지24(1)

구분	용어	설 명	관련법령
11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함	소령 §198 소칙 별지37
12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나이요건을 충족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음(소득제한만 있음)	소법 §50
13	납세조합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 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	소법 §149 소령 §204
14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소법 §53
15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법 §1의2
16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소령 §112 조특령 §81
17	수입시기 (귀속시기)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 세법에서는 거래 등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나 요건이 성립하는 때에 수입금액 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의 표현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시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시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소령 §49

구분	용어	설 명	관련법령
18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경비상당액으로 보상 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함. 이러한 실제 소요경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음	소법 §12 소령 §12
19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말함	소법 §134 소법 §135
20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소법 §137 소법 §137의2 소령 §196
21	연말정산시기 (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법 §137
22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함	소령 §17
23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기간 제한 없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령 §20
24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함	소법 §4
25	주택 기준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함	소법 §52 조특법 §87
26	총급여액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의료비 세액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이 됨	소법 §20

구분	용어	설 명	관련법령
27	인적공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말함	소법 §50, 51
28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함 - 70세 이상인 사람(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①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배우자가 있는 여성(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원)	소법 §51
29	특별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이월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법 §52
30	특별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장애인)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	소법 §59의4
31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 연 13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법 §59의4⑨
32	기타 장애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소령 §107
33	난임시술비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	소령 §118의5⑤
34	출산지원금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2회 이내) 급여	소법 §12
35	혼인세액공제	거주자가 '26.12.31.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조특법 §92

부록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국세청
	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사례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 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	활동지원기관	국세청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의료비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국세청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분)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월세액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국세청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국세청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연말정산 비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1. 연말정산 대상자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 × 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4. 종합소득 공제금액 (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6~45%	6~45%	6~45%
7.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소법 §122)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	
	주택자금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주택마련저축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	○	
	혼인,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납세조합	○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제1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사항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3부 연말정산 종합소득
및 서식 작성방법

제4부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5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부
록

법령

☑ 소법	_____>>>_____	소득세법
☑ 소령	_____>>>_____	소득세법 시행령
☑ 소칙	_____>>>_____	소득세법 시행규칙
☑ 조특법	_____>>>_____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령	_____>>>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책의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발행일자 2025년 12월
발행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 원천세과장 정현미

행정사무관 한민희	행정사무관 홍성훈
행정사무관 박상준	전산사무관 임지아
국세조사관 오현정	국세조사관 최 민
국세조사관 유자연	국세조사관 이지연
국세조사관 백신기	국세조사관 곽형신
국세조사관 조준영	전산조사관 안혜은
전산조사관 이창인	전산조사관 김지선
전산조사관 이소원	전산조사관 구세윤
전산조사관 김하연	전산조사관 유민경
전산조사관 안영훈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